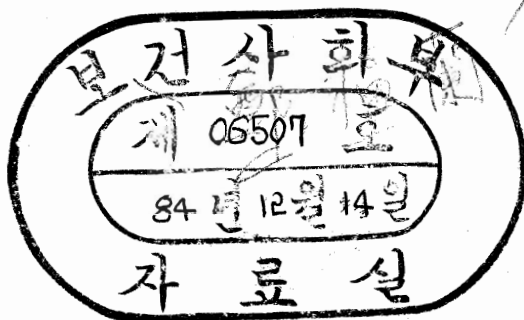


要保護女性の福祉向上을為한研究

— 研究資料 —

이 資料는 社會保障 審議委員會
研究委員 및 參事의 個別的인
研究結果이며 保健社會部의 公式
的 見解가 아님을 밝히 둡니다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

머 리 말

要保護女性問題는 女性만의 問題가 아니라 人間의 問題이며 國民의 問題라고 하겠다.

女性이 「母性」이라는 特性은 人間의 가장 優先的인 保護對象임을 強調하는 條件인 同時에 모든 社會問題를 豫防할 수 있는 保護對象의 根本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要保護女性의 問題는 傳統的 家庭의 保護속에서 解決하는 것으로 認識되어 왔다.

그러나 家族의 保護機能을 점차 喪失해 가는 現代家庭이 發生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社會問題가 多樣하게 家庭밖으로 露出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이에 따라 現代社會는 問題解決의 責任을 國家에 移轉하고 보다 積極的인 保護施策을 要求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의 近代化 過程은 産業化, 都市化, 核家族化를 가져왔으며 分業化, 專門化를 促進하였다. 이러한 移行過程은 人間다운 生活의 要求를 傳統的 家族內에서 充足했던 女性들로 하여금 家族機能이 다하지 못하고 있는 部分에 對한 代理機能의 福祉서비스를 要請케 하고 있다.

이러한 要請에 副應한 第 4 次 經濟開發計劃은 着實한 成長과 社會開發로써 國家의 恒久的安全을 保障하고 國民生活의 量的 質的 向上을 期할것을 計劃基調로 하고 成長, 能率, 衡平의 理念下에

自立經濟，社會開發，技術革新과 能率向上을 基本目標로 삼고 있다.

특히 社會開發의 基本目標으로써 經濟發展 段階에 適合한 社會開發의 追求와 本格的인 社會厚生 福祉政策을 向한 制度의 改善이 設定되고 있음에 對하여 要保護女性福祉向上을 爲한 國家의 努力에 보다 強한 國家意志가 發露될 것을 期待하면서 女性人力開發面，社會安定面，國家安保面에 着眼을 둔 要保護女性の 福祉向上 方案의 接近策을 試圖해 보았다.

本資料는 現代社會問題中에서 要保護女性問題 및 그 課題를 發見하고 우리나라 要保護女性の 福祉事業發展動向과 沮害要因을 概觀함으로써 要保護女性 概念規定에 따른 對象選定과 그 部門別實態 및 問題點을 分析하고 各國制度를 比較檢討하여 要保護女性福祉向上을 위한 政策樹立에 參考資料가 되도록 努力하였다.

그러나 蒐集된 資料나 얻어진 見解들을 整理한 關係로 不足함이 많음으로 계속하여 關係여러분의 叱正과 鞭撻이 있기를 바랍니다.

1976年12月

社會保障審議委員會

鄭 福 蘭

目 次

第一章 現代社会의 要保護女性問題	9
第一節 社会變化에 따른 要保護女性問題의 提起	9
第二節 現代社会의 要保護女性問題實態 및 基本課題	12
1) 社会問題와 要保護女性問題	12
2) 要保護女性問題의 階層別 分析	14
3) 現代社会 要保護女性問題 基本的課題	20
第二章 우리나라 要保護女性の 福祉事業概觀	25
第一節 要保護女性 福祉事業의 發展動向	25
第二節 要保護女性 福祉事業發展의 沮害要因	28
第三章 要保護女性福祉事業의 対象進定 및 部門別 實態에 따른 問題點 分析	33
第一節 要保護女性 範圍設定	33
第二節 要保護女性 福祉事業의 対象進定問題	35
第三節 要保護女性の 部門別實態 및 그 問題點分析	37
1) 淪落女性實態 및 問題點	37
2) 缺損家庭의 實態 및 問題點	46
가) 母子家庭	46
나) 未婚母	62
3) 低所得勤勞女性の 實態 및 問題點	77

가) 一般勤勞女性	77
나) 勤勞靑少女	95
4) 社會問題 輩出可能集團要保護女性實態 및 問題點	101
가) 工業團地勤勞女性	101
나) 버스 안내원	113
다) 遊興業所就業女性	117
5) 零細自營業家庭 要保護女性實態 및 問題點	120
가) 零細農村女性 및 都市의 零細商人	120
第四章 最近諸外國의 要保護女性福祉事業의 動向	121
第一節 概 說	127
第二節 各國 社會保障制度의 要保護女性分野	127
1) 英 國	127
2) 프랑스	135
3) 西 獨	137
4) 스칸디나비아 諸國	139
5) 스위스	144
6) 美 國	146
7) 이스라엘	152
8) 日 本	156
第五章 우리나라 要保護女性의 福祉向上政策樹立을 爲한 接近方案	165
第一節 要保護女性 福祉向上 政策方向	165
第二節 要保護女性 福祉向上 施策	166

表 目 次

〈表 1〉	在学生 性別教育程度	16
〈表 2〉	性別 中退者	17
〈表 3〉	特定地域内 淪落女性動態	39
〈表 4〉	職業補導施設現況	44
〈表 5〉	家口類型別 家口形態	48
〈表 6〉	脆弱家口職業構造	49
〈表 7〉	母子保護施設 收容者実績	53
〈表 8〉	一般家口數에 對한 母子家口比率	50
〈表 9〉	—① 母子院에 收容된 母子家口實態	55
	—② 母子院에 收容된 母子家口實態	55
	—③ 母子院에 收容된 母子家口實態	56
〈表 10〉	棄兒取扱狀況	65
〈表 11〉	—① 偏母의 分布 (主要國)	68
	—② 新生兒 1,000 名에 對한 私生兒分布	69
	—③ 經濟活動力있는 家庭形態別 扶養兒童있는 母의 比率	70
	—④ 正常 (兩父母) 家庭의 收入과 比較한 各形態別	71

〈表 12〉	女子經濟活動人口	84
〈表 13〉	70-75 女子勤勞者數	85
〈表 14〉	産業別 (女子) 就業者	86
〈表 15〉	從事上의 地位別 就業者	87
〈表 16〉	年令階層別 就業者 (女子)	88
〈表 17〉	産業別 規模別 女子勤勞者數	89
〈表 18〉	技能程度別女子 勤勞者	91
〈表 19〉	職種別 女性勤勞者賃金	93
〈表 20〉	産業別 女性勤勞者賃金	93
〈表 21〉	年令階層別 賃金階層別 女子勤勞者數	94
〈表 22〉	—① 勤勞青少年現在生活에서의 問題點	98
	—② 勤勞青少年現在所願	99
	—③ 勤勞青少年現在企業主觀	99
〈表 23〉	工団地域別 實態現況	109
〈表 24〉	法的保護認知程度	105
〈表 25〉	버스案内員 賃金現況	113
〈表 26〉	운수業體 從事者賃金分布 (女子)	114
〈表 27〉	職業別 就業者	118
〈表 28〉	諸外國의 社會保障制度의 類型	125
〈表 29〉	國民保險, 勞災保險 및 國民保健	131
〈表 30〉	社會保障 給付週額	133
〈表 31〉	階級別 給付狀況	134

〈表 32〉	年金保險의 受給者와 給付費	143
〈表 33〉	OASDHI 受給者 1人当 平均支給月額	147
〈表 34〉	SSI 受給者 및 支出狀況	150
〈表 35〉	公的扶助 受給者数 및 1人当 平均 給付 月額	150
〈表 36〉	最低生活保障水準의 具体的 事例	163

1000

2010年12月10日 星期五

1870

第一章 現代社會의 要保護女性問題

第一節 社會變化에 따른 要保護女性問題의 提起

現代産業社會의 經濟成長이 가져온 社會的 影響은 社會의 財貨를 大量化함으로써 豐饒한 社會 (Affluent Society)를 實現시켜 資本主義의 內部的인 심각한 問題인 貧困問題를 基本的으로 解決해 가는 反面 經濟成長과 他社會領域의 變化間에 일어나는 時間遲滯 (Time-lag)에 의한 不均衡 不調和로 因해 諸問題가 發生한다.¹⁾

이것은 많은 社會問題와 病理現象을 附隨的으로 만들고 있고, 急激한 社會的 經濟的 變化는 人間에게 새로운 適應을 要求하며 이 要求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므로 社會的問題가 發生하게 된다.

女性은 通常 이러한 社會問題의 影響을 男性보다 더 많이 받으며 특히 發展過程의 初期段階에서 더욱 그러 한데 우리 社會의 急激한 變化로 因한 여러 가지 社會問題 適應의 問題가 過渡期狀態에 놓여 있어 이러한 후유증과 變化가 女性에게 가장 深刻하게 그리고 急激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社會變化에 따른 女性問題의 社會化가 露頭되고 現代國家는 福祉國家 (Welfare State)로써 名分을 나하여 露呈된 社會問題를 制度的으로 解決하려고 努力한다. 따라서 이러한 女性問題의 制度的 解決万途를 모든 國家는 福祉事業 施策으로 接近하여 왔으

註 1) 高永復 現代社會學 P287

며 특히 社会的인 保護要請이 必然的으로 随伴되 있다.

實로 放棄되거나 그대로 둘 수 없는 女性問題는 또한 局面을 달리한 深刻한 社会問題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으로 豫防的制度로써 그들 女性에 對한 即 要保護女性에 對한 社会福祉事業이 그 어느때 보다 國家的事業으로 要請되고 그에 따라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對策이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고 보겠다.

그런데 이러한 對策을 講究하려면 먼저 그 對象인 要保護女性이 지닌 보다 근원적인 現代女性問題의 原因 내지는 發生 生態의 內容을 考察할 必要가 있다.

첫째 새로운 西歐文化 및 思想의 影響과 大家族 (Extended Family)에서 核家族 (Nuclear Family)에로의 變化 現象等은 女性의 地位向上과 勞働에의 進出을 가져와 傳統的인 三從之道의 原則을 順応, 家族속에서 女性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던 女性들에게 小家族生活을 主婦中心으로 하여 家庭管理者, 子女의 教育者, 職業女性等 家庭 및 社会에서 새로운 地位와 役割을 賦与하기 始作했다.

◎ 美國의 18人의 家族研究者에 의해 指摘된 近代家族의 심한 變化는

- 1) 離婚의 增加
- 2) 産兒制限의 普及과 小家族化
- 3) 夫 및 父의 權威의 減少
- 4) 婚外 性交의 增加
- 5) 맞벌이 夫婦의 增加

6) 家族員의 個人主義 自由의 增大

7) 家族의 保護機能의 國家에의 移轉.

8) 結婚 및 家族內의 宗教的 行爲의 減退 등으로써 이는 自然的, 社會的 條件이라는 各國間에 差違는 있으나 대동소이한 경향을 말해주고 있다.²⁾

家庭에서 父母 및 夫와 對等한 發言權, 決定權 그리고 職場進出 등의 變化가 이와 關係되는 諸環境과 不適應할때 家庭不和 나아가 離婚問題, 職場에서의 差別待遇, 教育機會不均等 技術不足으로 인한 低賃金의 問題, 夫가 生計能力 喪失때 缺損家庭問題 등이 發生한다.

William Goode 은 核家族主義는 女性으로 하여금 男女平等의 原理 結婚의 自由, 個人의 權利, 愛情의 權利, 離婚의 自由 등을 要求하게 함으로써 男尊女卑, 父母定婚, 家族과 親戚에 對한 義務 등을 強調하는 傳統에 挑戰하게 되며 傳統的規範을 파괴하는 作用을 한다³⁾ 고 主張하고 있다.

둘째 우리 社會의 急激한 變化에서 오는 價値의 混亂, 方向感覺의 喪失, 倫理的 判斷基準의 空白, 慾求의 無制限 上昇과 그것을 充足시키기爲한 無制限한 競争心,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犯罪現象 等 Anomie 現象을 追放하고 社會矛盾에 對한 無關心, 無責任, 無氣力의 三無現象에서 生거지는 實存의인

註 2) 家庭と 社會, 小山隆 P 377.

3) William J. Goode, The Famil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 J. 1964. Pp 104 ~ 105.

挫折 (Existential Frustration) 을 뜯어 고쳐야 할 課題를 女性에게 提示하고 있다. 그것은 民族의 人間像을 決定하는 基本이 어머니로서의 女性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女性의 人間的이고 內面的인 成長에 더욱 價值를 두고 家庭과 社會에 있어서 女性의 位置와 役割을 참되게 터득하도록 女性教育方向을 樹立해야 할 女性教育問題 내지 바람직한 女性像確立, 女性의 價值觀確立 問題가 있다.

세계 都市化 過程에서의 人口集中과 三次産業의 增加는 女性問題를 여러面에서 發生시킨다.

都市에 集中된 20 歲 前後의 未婚女性들의 다방, 음식점, 요정, 바, 양재점, 미용원, 이발소 목욕탕 (터키탕), 호텔, 버스, 通信 等 소위 三次産業에 従事하는 女性의 增加趨勢는 社會的인 問題集團으로 登場하고 있어 淪落女性問題와 함께 保護以上の 措置를 要求하고 있다.

세계 女性이 가진 母性이라는 肉體的 特性은 出産, 育兒, 家事에서 또 社會參與나 職場進出에서 特別한 母性保護措置를 必要로 하고 있다.

第二節 現代社會의 要保護女性問題實態 및 基本課題

1. 社會問題와 要保護女性問題

要保護女性問題研究는 現實의 女性生活條件과 社會的諸條件의 客觀的研究를 通해 女性自身の 問題意識 權利意識을 높이고 意識化

自覺化시켜 女性地位向上의 課題를 主体的으로 認識토록 하는 同時에 社會科學的 客觀的 立場에서 女性生活 背後에 있는 社會問題와 社會構造의 分析을 해야할 必要가 있다.

女性問題는 社會問題의 一分野인 同時에 社會問題의 다른 諸分野와는 다른 特殊性이 있고 社會問題全分野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으면서 社會問題全体와 併行하는 位置에 있다.

社會問題全体의 構造에 있어서 女性問題의 位置를 보면 4) 모든 階級과 階層에 있는 女性에 對한 差別과 抑壓을 들 수 있는데 具體的 抑壓의 形態는 女性이 屬하고 있는 階級階層에 있어서 生活周期의 段階에 따라 다르다. 女性의 日常生活中的 苦難도 一般的으로 社會問題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

高度經濟成長政策의 發展은 勞動問題, 農業의 沒落과 農民의 兼業化 日雇勞動者 問題等이 深刻하게 되고 그 一環으로 勤勞女性에 對한 差別의 強化, 自營業主婦와 農家主婦의 勞動強化의 問題가 深刻하게 된다.

또 社會經濟構造의 變化에 따른 生活構造의 變化는 都市問題, 農村問題, 住宅問題, 消費者問題, 老後問題, 保育, 教育問題, 等이 深刻하게 되고 이런것이 集中되어 家庭問題를 노출시켜 主婦問題, 母親問題를 새로운 형태로 發生시키고 있다.

女性自身の 問題로서 勤勞女性問題, 自營業女性問題, 農村女性問題, 主婦問題, 母親問題等 主要한 問題가 있다. 이러한 問題는 女性

註 4) 現代婦人問題講座 I, 婦人政策 婦人運動 田中壽美子 P 10-12

自身이 主体的으로 解決할 課題이다.

女性の 生活과 關係가 깊고 女性の 關心이 強한 社会問題로서 家庭問題, 家計問題, 消費者問題, 物価問題, 保育, 教育問題, 老後問題, 住宅問題, 公害問題 등이 있다.

女性の 生活과 關係가 깊은 問題는 勿論 男性의 生活과도 關係가 있고 男性과 共通의 問題로써 男女가 協力하여 解決할 課題이다.

2. 要保護女性問題의 階層別 分析

社会問題와 關聯하여 女性の 階層을 勤勞女性, 自營業主婦, 農村女性の 3가지 階層으로 分化하고 있으나 女性問題의 多樣化 複雜化 함에 따라 就業狀態別 또는 生活周期의 段階別로 階層을 分化하고자 한다. 5)

가. 就業狀態別 分析

女性の 階層을 就業狀態別로 分析할 때는 男性과 달리 家事에 從事하고 있는 主婦에 問題가 있다. 主婦가 直接生産關係에 參與하지 않아도 夫를 통해 間接적으로 生産關係, 階級關係에 들어가 있다. 같은 主婦라도 經營者側 主婦와 被傭者側의 主婦와는 生活의 實感도 意識과 要求도 크게 다르다.

就業狀態別 女性の 階層構成의 變化를 보면 自營業主婦와 家族從

註 5) 田中壽美子, 婦人政策, 婦人運動, pp 13 ~ 38.

事者が 減少하고 雇傭勤勞者が 増加되는 傾向이 있다.

彼傭者階級은 下層 BG層과 單純勞働者層이 増加됨에 따라 差別과 抑壓을 더욱 強하게 받고 있다.

田中寿美子氏は 現代日本社会에서 家事에 従事하는 主婦가 増加하는 原因을 説明하기를 첫째 夫의 收入으로 生活家計를 維持하는 階層이 増加하고, 둘째 増加하는 女性勤勞者에 對한 企業의 合理化 (結婚退職과 出産退職의 強制)와 生活構造의 變化 (核家族化, 通勤難의 深刻化 等)에 있어서 結婚과 職業의 兩立이 困難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下層勤勞層의 主婦는 夫의 收入만으로는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限度」의 生活維持를 어려워하고 있으며 上層勤勞層과 BG層의 主婦도 家計管理가 힘들어 家事勞動의 輕減으로 생기는 時間에너지의 有効한 活用方法이 없어 不滿이 심하다고 하고 있다.

4. 生活周期的 段階別 分析 6)

女性の 生活은 結婚, 家事, 出産, 育兒等 私生活, 家庭生活의 諸條件에 있어서 큰 影響을 받으므로 就業狀態別 階層分化 뿐만 아니라 生活周期的 段階的으로 오는 階層分化를 分析할 必要가 있다.

女性の 生活周期와 生活構造는 寿命의 延長, 少産化, 核家族化, 家事勞動의 輕減等 社会의 變化에 따른 家庭生活諸條件의 變化에 따

註 6) 一番ヶ瀬康子 「社会統計にみる 女の一生」 「現代の 婦人問題」 昭和 40年 P 1 ~ 22.

表 1

在学生 性別 教育程度

(單位：1,000人)

	国 民	中 等	高 等	初 大	大学以上
全 国 (100.0)	5,730	1,389	616	39	172
女 子	2,740	556	237	15	42
%	47.8	40.0	38.4	41.6	24.4

資料：經濟企劃院

라 變貌한다.

生活周期的 階層構成에 따른 우리나라 女性問題를 보면

① 學生 (教育期 未婚女性)

表 1 에 依하면 女子의 高校, 大學 進學者가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男女의 教育機會均等으로 因한 것으로 생각되며 中等教育過程의 適性에 맞는 教育方針과 高等教育에 있어서 女子短期大學 進學率과 家庭學系, 文學系 進學率이 높은것은 男女差別에 따른 理由인것 같다.

卒業後의 雇傭과 職業生活에 있어 機會均等이 되어 있지않아 女學生中에는 卒業後 差別, 抑壓에 對한 挫折感, 疎外感이 발생하고 있다.

② 未婚女性勤勞者

學校를 卒業한後 就業하는 女性이 增加되고 있으나 學歷이 높을수록 男女差別이 심한 傾向을 보이며 (表 2) 國民學校 58.3%

表 2

性 別 中 退 者

(單位：1,000人)

	国 民	中 学	高 等	初大,專門	大学生以上
全 国 (100.0)	336	233	113	31	101
女 子	196	78	25	5	12
(%)	58.3	33.4	22.1	16.1	11.8

資料：經濟企劃院

中学 33.4%의 높은 中退率は 基礎過程을 履修하지 못한 女性人力 就業에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企業側에서는 女性에게 責任感이 없고 持久力이 없음으로 因하여 女性勞動力을 低賃金의 補助的 勞動力으로 보며 未婚女性勤勞者 勞動力을 低賃金의 消耗品으로 歡迎한다. 또한 結婚退職과 出産 退職을 強制 또는 獎勵하는 傾向이 強하고 採用, 昇進, 昇給, 企業 內 教育訓練 등에서 男女差別을 하고 있다.

最近에는 熟練勞働者로서 職場에 定着할 것을 期待하나 女性勤勞者側에서는 「職業을 結婚까지의 中間발판, 結婚을 永久한 就職」 이라고 生覺하는 意識이 높아 專門職業人이 되고자 하는 職業意識이 缺如되어 있어 自己變革이 要請된다.

③ 新婚期の 妻 (맞벌이 女性, 自營業主, 主婦)

結婚해서 出産까지 新婚期の 妻는 退職해서 家事에 專念

하는 1年内外에 出産하는 率이 많고 最近에는 家事勞動의 輕減, 家族計劃의 普及, 夫의 低賃金과 住宅難等 諸問題 때문에 出産을 늦추면서 맞벌이 하는 女性이 增加하고 있고 專門的 職業에 從事하는 女性은 結婚後에도 職業을 繼續하는 意慾이 強하다.

熟練된 女性勤勞者의 確保가 困難한 企業中에서는 結婚後에도 職業을 가져 줄것을 期待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結婚한 女性勤勞者는 家事勞動과 家庭管理의 責任, 職場의 責任 二重責任을 맡고 있다.

④ 育兒期の 어머니

育兒期는 家族計劃의 普及으로 돌내기運動에 따라 期間이 短縮되고 있다. 育兒期の 女性은 家事, 育兒의 負擔이 重하기 때문에 職場에서는 産前産後休暇의 權利 즉 母性으로서의 權利를 保障하며 家庭에서는 祖母의 協力을 받아 地域이나 職場에서 保育에 對한 諸條件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맞벌이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런 段階에 退職하여 家事와 育兒에 專念하는 主婦가 많다. 夫의 收入으로 家計維持가 困難한 階層의 主婦는 子の幼兒期에 들어가면서 內職 Part time 勞動에 從事하여 家計를 補助하는 女性이 增加하나 이러한 形態의 就勞는 一般的으로 勞動條件이 나쁘고 低賃金이다. 이런 女性에게는 家事 育兒및 勞動의 負擔으로 過勞하게 되어 家庭生活이 명랑하지 못하고 家計가 어려우나 또 就勞할 수 없는 主婦의 立場은 家計를 꾸려가는 반면으로 窮乏感과 疎外感으로 가득차 있다.

夫의 所得이 比較的 많아 家計補助를 爲한 就勞의 必要가 없는 主婦層은 子의 成長으로 生기는 餘暇時間을 保育, 趣味, 文化活動을 하는 傾向이 있어 두가지 類形이 子女의 成長과 함께 進行한다.

⑤ 教育期の 어머니

子女가 國民學生일때 부터는 再就職한 맞벌이女性和 家庭에서 教育에 過剩되게 專念하는 女性이 있다. 前者는 特別한 資格과 技能의 問題로 거의가 勤勞條件이 나쁘고 低賃金이지만 子女의 教育費때문에 職業을 가져 子女를 放任狀態에 두는데 對해 고심하는 反面 後者는 子女를 教育하는데 自身을 犧牲하면서도 生의 보람을 느끼며 子女에 對해 過剩期待를 하고 家事勞動의 輕減으로 增加한 餘暇時間과 남은 energy를 子女에 集中하여 保護過剩, 教育過剩으로 子女의 自主的 發達을 막고 어머니自身期待感不滿에서 오는 고심을 하는 矛盾이 있다.

⑥ 子女가 獨立한 後의 어머니와 老後期の 女性

子女가 獨立한 後의 어머니는 老後의 不安을 切實하게 느끼고 家事負擔의 輕感과 餘暇時間의 增加等 空虛感으로 번민함이 많아진다. 夫가 定年 退職하거나 夫가 死亡한 女性은 生活의 不安과 精神的 空虛感이 더욱 深刻하게 된다. 그래서 社會活動과 文化活動에 積極的으로 參加하고 家事勞動과 再就職에 熱心인 中年 老年女性의 增加를 볼 수 있다.

3. 現代社会 要保證女性問題 基本的 課題

지금까지 女性の 階層構成을 分析하고 各階層別 女性問題實態를 明確히 하여보았다. 모든 階層女性에게 共通하는 基本的課題를 밝힘에 앞서 日本에서 諸氏が 밝힌 解答을 보면 7)

가. 現代社会의 모든 階層女性에 共通하는 基本的 課題가 무엇이나? 하는 質問에 對해 松下圭一氏は 「婦人論의 盲点과 焦点」을 찾아 「婦人問題에 對해서 새로운 理論的 方向을 찾아낼 必要가 있다」고 主張하고 「婦人問題의 今日的 焦点」으로써 첫째 「女性の 經濟的劣位」 또 거기에 對한 對策으로써 最低賃金制度를 들고 들쭉는 「今日에 볼 수 있는 女性の 職場進出資美論」의 批判과 婦人の 地域活動의 評價를 들고있다. 이러한 見解는 經濟의 二重構造下에서 女性の 最低賃金制度를 다른 면으로는 中流以上 主婦들의 地域活動을 提案하는 것으로 안다.

松下氏は 「共像論의 今日的 問題点」에 對해서 一家를 扶養하는 夫의 收入이 많은 主婦가 어떤 類形의 職業을 選擇하던 自由이지만 母子家庭과 貧困家庭의 主婦가 職業을 갖는 것은 “必要”의 問題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8)

또 一番ヶ瀬康子氏は 現代日本の 婦人問題의 Key Point는 男女平等이 法的으로 確立되어 있으나 婦人勞動은 不安定한 低賃金下層

註 7) 婦人政策, 婦人勞動 pp 22 ~ 24

8) 戰後民主主義의 展望 松下一圭 昭和 40年刊 P 158 ~ 192

勞働에 있다는 것을 關聯하여 社会經濟的 男女間에 不平等이 있고
今日の 生活苦, 生活不安을 더욱 強하게 느끼고 있다는 点이다.

말하자면 今日の 社会問題이며 勞働問題의 底辺에 있는 婦人勞働問
題 背後에는 生活問題가 그 基底를 이루고 있다⁹⁾고 主張하고

西口俊子氏は

今日の 婦人問題의 基本的 課題는 「婦人과 職業」이다. 婦人
과 婦人解放問題의 中心的 課題는 戀愛問題, 愛情問題, 媿家問題도
아니고 婦人과 職業問題이다. 戰後 日本에 勞働하는 婦人の 數가
増大한 것은 客觀的 事實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¹⁰⁾ 以上 三氏
는 모두 進歩的 婦人論者지만 主張하는 바는 相違하다.

松下氏は 「下層主婦의 必要에 依한 勞働과 中層以上主婦의 地域
民主主義活動을 높이 評價하고」 一番ヶ瀬氏は 「婦人勞働問題背後에
있는 生活問題를 強調하고」 西口氏は 「勤勞女性의 増大는 婦人勞
働問題가 中心的 課題라고 主張」하고 있다.

나. 昭和 30年에 日本서의 家事勞働과 主婦의 役割의 評價에
대한 論爭을 보면

石垣綾子氏の 「主婦第二職業論：婦人公論 昭和 30年 2月号」

賛否兩論

坂西志保, 福田恒存, 大惣信行의 諸氏は 「女子는 結婚을 第一로
해야 한다」 「幸福은 愛情가운데 있다」 「主婦는 人間 그것을

註 9) 現代の 婦人問題 P 22

10) 現代日本の 社会問題 第二卷 昭和 41年刊 P 223

生産하고 있다』고 主張함으로써 主婦의 役割을 讚美하였고

梅悖忠夫氏は 「妻無用論：婦人公論 昭和30年6月号」 磯野富士子氏は 「主婦의 家事労働의 再評價：朝日저널 昭和31年4月10日」等 主張에 對한 活潑한 論爭이 展開되었으며 이러한 過程을 지나 主婦讚美論이 強하게 되었다. 現實의 日本主婦의 實態를 보면 主婦의 疎外化에 苦惱가 깊고 主婦職을 脱出하여 再就職하는 婦人労働者가 增加하고 있다고 한다. 主婦의 疎外化의 苦惱는 消費生活에 있어서의 疎外, 慾望水準의 上昇과 賃金水準의 上昇에 따른 生活의 窮乏感上昇으로 因한 疎外 및 職業生活에 있어서의 疎外를 들 수 있겠다.

다. 山手茂氏は

職業生活에 있어서 疎外에 對해 日本女性の 傾向을 보여주고 있는데

① 現代女性은 消費者, 被扶養者로서 生活의 滿足을 갖고져 한다.

② 學校教育을 끝내고 就職하는것이 一般化되어 있고 점점結婚後에도 職業을 求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③ 夫의 收入만으로는 滿足한 消費生活을 營爲할 수 없어 職業을 갖는경우도 있고 女性自身の 經濟的自立과 自身の 能力發揮로 人生을 充實히 하고자 職業을 求하는 數가 增加하고 있다.

④ 男女의 實質的平等化는 職業生活에서 平等化가 가장 重要한 課題이다.

現代資本主義社會의 勤勞者의 疎外는 基本的으로 男女勤勞者의 共通的 現象이나 女性의 採用, 初任給, 企業內訓練, 昇進, 昇給, 退職에 심한 差別을 하고 疎外되는 경우는 더욱 심하다.

女性을 男性과 同一한 職業生活에서의 活躍을 期待하려면 男女差別廢止, 男女機會均等を 實現하고 母性保護(産前産後休暇, 育兒休職의 保障, 地域 및 職場의 保育施設의 完備)를 完全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⑤ 企業의 合理化로 因해 母性保護는 마이너스를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實을 고려해 볼때 現代社會의 變革을 하지 않으면 女性의 職業生活에서의 疎外의 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⑥ 職業生活에서 實質的 男女의 機會均等과 母性保護를 實現하는 同時에 家庭生活에서 實質的 夫婦의 對等化와 家事勞動의 民主的 再配分, 家事勞動의 社會化를 實現할 必要가 있다.

⑦ 家庭責任과 家事勞動의 負擔을 지고 맞벌이 하는 妻는 職業勞動의 負擔과 家事勞動의 負擔과의 二重負擔으로 過勞하게 되며 職業勞動에 十分能力을 發揮할 수 없는 狀態에 있다.

이러한 問題는 女性이 主体的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 努力하여 解決할 問題이다. 11)

以上 概觀한 現代社會의 女性問題의 實態에 따른 女性地位向上의 課題를 要約하였는데 女性地位向上을 爲한 基本的 課題는

註 11) 現代婦人問題講坐 1 山手茂 P 36.

첫째, 女性의 勤勞하는 權利를 保障하는데 있으며 職業勞動에 있어서 實質的 男女平等을 實現하는데 있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就勞 意慾을 가진 모든 女性에 對해 職業을 保障하는데 있고 採用 昇進, 昇給, 敎育訓練, 退職等에 있어서 男女差別을 廢止하고 實質的 男女同一勞動, 同一賃金과 最低賃金을 保障하고 母性保護를 徹底히 하여 임신구토, 休暇, 産前産後休暇, 育兒休職等 모든 女性勤勞者를 保護하는 것이 必要하다.

둘째 女性의 「健康하고 文化的 生活」을 保障하고 家庭生活에 있어서 實質的 男女平等化를 實現하는데 있다. 그 實現의 前提로서 女性의 勤勞하는 權利를 保障하지 않으면 안된다. 家庭生活에 있어서 實質的 男女平等化를 實現하는 것은 職業生活에 있어서 實質的으로 男女平等化를 實現하는 條件이 된다.

具體적으로 家事, 育兒의 社會化的 徹底(保育施設의 完備), 家庭에 남아있는 家事勞動의 民主的分擔, 等이 必要하다.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의 保障을 爲해서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徹底, 住宅問題, 消費者問題, 都市問題, 農村問題, 勞動問題等 모든 社會問題를 根本적으로 解決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렇게 하기 爲해서는 女性問題의 解決을 社會問題全體的 解決, 말하자면 社會變革과 關聯된 理論과 運動으로 發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以上の 基本的 課題를 達成하는데 있어서 女性의 主体性을 어떻게 確立하느냐, 廣汎한 階級, 階層의 女性의 保護要求를 어떻게 理論化, 組織化하며 女性의 主体的 組織과 運動을 어떻게 發展시키느냐가 當面問題로 必要하다.

第二章 우리나라에 保護女性的 福祉事業概觀

第一節 要保護女性福祉事業의 發展動向

祖國光復以後 男尊女卑의 思想과 倭政下에서 剝奪당하였던 女權은 憲法의 保障으로 男女가 同等한 地位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等 各部門에 있어서 顯著한 進出을 보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女性에 對한 國家의 保護對策이 重要한 課題가 되었다. 그러나 女性福祉事業은 歷史의 變遷과 함께 時代의 背景에 따른 時急한 課題에 置重함으로써 全般의 이고 統合의인 保護對策을 講究하지 못한 傾向을 볼 수 있다.

1. 解放直後의 女性保護行政 (1945 ~ 1950)

8.15 光復以後 女性에게 주어진 女權伸張과 地位向上을 爲한 課題는 女性들의 組織의 이고 體系있는 指導啓蒙을 爲해 1946年9月 保健厚生部內에 婦女局을 設置하고¹²⁾ 「婦女的 勞動條件改善 婦女的 職場擴大, 工業, 農業, 教育, 藝術職業 및 家庭에 關한 婦女的 福祉, 妊婦의 保護, 婦人의 參政權, 禿笑婦의 取締과 그 制度의 廢止, 不良婦女와 그 矯正方法, 婦女者의 旅行에 對한 一般의 保護」等 婦女保護事業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게 되었으며 그 主要事業은

註 12) 美軍政法令 第107号 婦人局設置令 第二條

가. 社會改善의 新推進力 養成을 爲한 啓蒙事業.

文盲退治, 成人教育, 合理의 生活, 어머니 學校, 婦女指導者講習會, 職場女性講習會 等.

나. 公娼廢止 (1947.10. 公娼制度廢止法令 第7號)

다. 婦女保護事業

婦女事業館增設, 妊産婦保護事業, 母子保護事業,

라. 勤勞女性에 대한 正當한 社會的認識普及 및 差別待遇철폐를 爲한 法的地位保障.

마. 國民生活改善實踐運動 緊急展開를 爲한事業 衣食住生活簡素化, 國產愛用, 虛禮廢止等

2. 6.25 以後의 女性保護行政 (1950 ~ 1960)

動亂으로 因한 生活苦와 性道德의 頹廢等 混亂期에 處해 戰災 未亡人과 그 扶養者를 爲한 救護事業에 重點을 두고 淪落女性 善導事業, 一般女性指導啓蒙과 健全家庭育成을 爲한 新生活運動에 힘을 기울였다.

3. 5.16 以後의 女性保護行政 (1961 ~ 1970)

祖國의 새 歷史創造를 爲한 國民的決意에 따라 女性行政도 過去의 應急救護로 부터 脫皮 積極的 福祉國家指向의인 姿勢로 再編成하여 事後治療의 施設改善保護에서 豫防事業을 兼한 自立更生을

凶謀코저 하는 發展을 가져왔다.

가. 淪落女性善導를 爲한 淪落行爲等 防止法制定公布

나. 女性의 精神的 姿勢確立을 爲한 精神啓發에 置重 新生活運動
第二經濟運動 全國女性大會開催.

다. 女性指導者社會教育

婦女相談員配置, 女性指導者講習會 및 指導者訓練

라. 職業輔導所設置

마. 經濟開發計劃에 따른 女性勤勞者増大로 因한 諸般問題發生과
그 對策

4. 3, 4 次 經濟開發과 最近 (1971 ~ 1980)

兩次 經濟開發計劃의 終了와 함께 工業化, 都市化, 核家族化로
變動된 社會의 背景은 傳統的인 家族制度가 지닌 價值, 構造, 機能
關係等の 側面에 變化를 가져왔다.

이에따라 健全家庭의 安全과 幸福을 이룩하고 最低限度의 健康하
고 文化的인 生活維持를 爲해 家庭의 根本的인 問題를 解決하여
社會의 諸問題를 豫防코저 家庭福祉事業에 置重하고 있다. 主要事
業을 보면¹³⁾ 各處에 女性會館을 設立하여 一般女性의 여가선용,
相談事業, 家庭義禮準則의 啓蒙普及, 衣食住, 生活改善, 消費者保護運動,

註 13) 우리나라의 社會保障, 保社部 社會保障審議委 P 201.

에식장, 食堂, 宿泊等 便宜를 提供하여 女性들의 社会, 文化 및 福祉活動에 積極參與하고 있다.

婦女課에서는 母子家庭, 淪落女性保護等 취약계층대상의 保護業務와 健全家庭의 育成을 爲한 家庭福祉事業으로 兩分하여 母子福祉事業은 主로 公的扶助의 方向으로 유도하고 家庭福祉事業에 置重할 方針이다.¹⁴⁾

第二節 要保護女性 福祉事業發展의 沮害要因

社会構造變化에 따른 女性問題의 重要性和 緊急性에 比하여 福祉事業要求에 對한 福祉活動의 狀態는 미미한것이 오늘날의 現實이다.

女性福祉事業發展의 沮害要因은 무엇인가? 이에 對해 南世鎮教授가 指摘한點을¹⁵⁾ 中心으로 살펴보면

1. 올바른 理解의 不足

女性問題를 女性들만의 問題로 限定해서 生覺하고 있는 傾向이 많다.

女性問題가 社会全体에 미치는 影響이나 社会全般에 걸친 多角的 考慮없이 女性問題가 解決될 수 없다는 事實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다.

註 14) 우리나라의 社会保障—保社部—社保審 P 207

15) 南世鎮, 國家發展과 婦女福祉問題效果의 方向 模索세미나.

이러한 理解不足은 指導者級이나 一般國民이나 女性福祉事業 從事者나 共히 犯하고 있는 잘못이라 생각된다.

社會事業하면 孤兒院事業을 生覺하듯 「婦女福祉事業」하면 母子院 또는 淪落女性保護所로 限定을 시켜서 生覺하는 것이다. 一般人들은 나는 關係없는일로, 事業從事者는 나만의 일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要求나 必要에 對한 対応事業을 하지도 할수도 없었으며 必要한 人士들의 參與의 機會나 後援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2. 社會的關心에서 疎外

女性福祉事業에 對한 關心의 缺如라는 狀態를 招來함은 基本的 理由가 된다.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는 社會的關心의 標的이 될때 與論과의 밀접한 關係를 갖기 始作하는 것이며 따라서 活潑한 活動이 期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特殊條件을 考慮한다면 政府의 關心度 比重에 따라 事業에 주는 影響의 差異는 매우 큰 것이다.

現實적으로 볼때 社會福祉全般에 關한 事項이 事實上 關心의 焦點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形便이긴 하지만 만드시 豫算面에서의 措置가 必要不可缺한 것만은 아닐진데 女性福祉事業은 財政的 投資만으로 解決할 수 있는 事業은 아님을 認識하게 될때 오히려 關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經濟分野 建設에의 優先的投資가 政府로서는 당분간 어쩔수 없이

施行해야 할 現實을 감안한다면 政府의 直接的인 投資가 아니라 一般 民間人들의 投資를 爲한 政府의 분위기造成을 爲한 活動 卽 政府가 먼저 關心을 깊이 가짐으로써 民間의 關心과 積極的參與를 불러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게 할수는 있을 것이다.

3. 지나친 政府 또는 外援에의 依存

政府나 外國援助機關에 對한 物質的 非物質的 依存度가 지나치게 높다. 政府政策上的 變化 이로인한 豫算上的 支援中斷 또는 새로운 Program 促進과 더불어 既存事業에의 영향等의 事實이 銳利하게 反影되고 있어 꾸준한 關心과 努力속에서 發展되지 않고 있다.

政府 또는 外援機關의 援助依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民間團體가 活動의 中心이 되고 政府나 外援機關은 이를 補助하는 程度에서 머물러야 바람직한 女性福祉事業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4. 進取性和 融通性的 缺如

時代的 要請이나 새로운 問題에 對한 對應策은 없고 傳統的으로 내려오는 事業을 變化없이 해 나감으로써 社會的 關心에서 疎外되고 自體의 發展도 미미하게 되어지고 있다.

5. 專門性的 缺如

從事者들(특히 婦女相談員)의 專門性이 缺如될 때 도움을 받

아 健全한 生活을 營爲하는 事例가 적어질 것이고 事業은 不振해진다.

Brown 은 社會事業의 專門性을 說明하기를 「高度의 個人的 責任感을 수반하는 知的 諸活動을 本質로 하며 職業 그 自体의 性質이 學問으로 이룩된 것이고 새로운 學問의 供給을 받기 爲해 항상 實驗과 研究를 한다. 그리고 實際的 達成을 爲해 適用된다¹⁶⁾」고 하였고 Boehm 은 專門職業의 地位 (Professional Status) 의 標準을 「公供利益 (Public interest) 에 對한 応答, 卽 國民의 幸福의 發展에 貢獻하는 諸活動과 活動의 水準과 行爲를 爲해서는 大衆에게 責任을 질 수 있는 專門職」¹⁷⁾ 임을 첫째로 들고있다.

6. 科學性和 合理性의 缺如

問題나 事業自体를 科學的으로 分析해서 이에 基礎한 治療策이 나오고 또한 長期計劃이 이루어져야 한다. 豫算의 誘致나 財政的 投資의 斡旋도 科學的인 檢討위에 세워진 合理的인 計劃이 있음으로서 可能한 것이며 事業의 效率性의 測定도 이와같은 基礎위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從來의 事業에 對한 分析和 評價가 과감하

註 16) Esther L. Brown, Social Work as A Profession, 1935. P 14.

17) Werner W. Boehm, Objectives for The Social Work Curriculum of The futur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New York, 1959. Chapter IV

게 있음으로 보다 發展된 形態의 福祉事業을 展開해 나갈 機會를
만들게 되며 問題의 発見과 効果的인 勞力을 찾아내는 面에 活發
性을 賦與하게 될 것이고 보다 現實的이고 效率的인 女性福祉活動
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第三章 要保護女性福祉事業의 對象選定

및 部門別實態에 따른 問題點分析

第一節 要保護女性範圍設定

一般的으로 要保護女性이라고 하면 淪落女性, 貧困한 母子世帶의 未亡人을 規定하는 傾向이 많다. 그러나 工業化, 都市化로 急激히 變化하는 現代社會에서의 女性에 關聯된 當面問題는 더욱 多樣하여 要保護女性의 概念設定面에서도 보다 廣範圍하게 各側面에서 考察되어야 할 것이다.

河相洛教授는 要保護女性의 概念을¹⁸⁾ 「넓은 意味에 있어 身體的, 精神的, 社會的 및 經濟的으로 어떠한 種類的 保護를 必要로 하는 狀態에 있는 女性을 말한다」고 하고 이들을 各側面에서 考察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要保護女性의 範圍를 具體的으로 上記한 네가지 側面에서 区分해 보면

1. 身體的 側面

身體的으로 그 어떤 障害를 가지고 正常的社會生活에 困難을 받고 있는者로써

註 18) 河相洛, 婦女福祉問題 세미나 報告書 婦女保護事業全國聯合會 1973.

가. 盲者, 弱視者

나. 聾者 難聽者.

다. 肢體不自由者

라. 病弱者 (身體 虛弱者包含)

마. 言語障害者等을 들 수 있으며

2. 精神的 側面

精神的으로 그 어떤 障害을 가지고 正常的 社會生活에 困難을 받고 있는者로써 (1) 精神薄弱者 (2) 情緒障害者 (3) 狂人 (4) 身體障害, 精神病, 精神病質, 慢性疾患等 合併障害者等을 들 수 있겠다.

3. 社會的 側面

社會的 家庭的으로, 不公平한 立場에 있거나 差別待遇 또는 虐待等을 받고 있는 者로써 (1) 버스안내원 (여차장) (2) 遊興業所에 就業하고 있는 淪落可能女性 (3) 家庭집 食母 (家庭婦) (4) 犯法者로써 矯正事業對象女性等을 들 수 있겠다.

4. 經濟的 側面

經濟的으로 貧困한 狀態에서 生存에 威脅을 받고 있는 女性으로써 (1) 母子世帯 未亡人 (2) 未婚母 (3) 淪落女性

(4) 低所得勤勞女性 및 勤勞靑少女 (5) 過重勞動하고 있는 零細農村女性 및 都市零細商人(行商女人) 등을 들수 있겠다.

第二節 要保護女性福祉事業의 對象選定問題

現在 우리나라에서 保護받고 있는 要保護女性은 극히 一部에 限定되어 있고 保護對策도 消極的이며 주로 施設保護에 置重되어 있으며 母子家庭, 淪落女性, 未婚母, 低所得勤勞女性 順位로 保護事業活動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産業社會 構造의 多元化 및 女性地位向上等은 女性の 社會進出의 增加를 促進하고 있고 社會問題로써의 女性問題가 多岐多様하게 發生되고 있다.

이에 새로이 急増하고 있는 保護對象에 對한 對策의 講究가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點을 堪案하여 一部事業에만 置重됨이 없이 現우리 國家社會에 있어서 制度的으로나 費用負擔面에 있어서나 技術的인 面으로나 또는 人力面에 있어서 施行possible한 保護對策이 要望되는 對象을 選定하고자 한다.

1. 國民保健 및 社會道德規範維持를 爲한 女性の 人間化 對策
淪落女性善導

2. 缺損家庭의 精神的 經濟的保護對策

가. 要救護 未亡人家庭 (母子家庭)

나. 未婚母

3. 低所得勤勞女性의 福祉政策確立

가. 一般勤勞女性

나. 年少勤勞女性 (勤勞靑少女)

4. 社会問題輩出可能 集團要保護女性福祉对策

가. 工業団地勤勞女性

나. 버쓰 안내원

다. 遊興藥所 就業女性

5. 零細自営業家庭对策

가. 零細農村女性 및 都市의 零細商人 (行商)

第三節 要保護女性の 部門別実態 및 그 問題点 分析

1) 淪落女性 実態 및 問題点

가) 淪落女性 概要

① 淪落女性の 数は 1974 年 現在 特定地域안에 1 萬 7,019 名으로 73 年 1 萬 6,601 名에 比하면 418 名이 増加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特定地域以外の 陰性地域의 數를 合하면 상당한 數가 될것으로 推算된다. (表 3)

② 既히 実施되었던 몇개의 標本調査에 依한 統計를 中心으로 実態를 把握해 보면

㉠ 1962 年 市立南部病院에서 淪落女性 686 名 対象 調査

〈年令〉 19 才 ~ 22 才 58.5 %

〈學歷〉 無教育 47.5 %, 小中退卒業 35.5 %, 中中退卒業 13.2 %

〈動機〉 生活苦 42.2 %, 誘惑 14.5 %, 失戀後墮落, 美軍部隊勤務, 孤獨多數

㉡ 1975 年 서울市 9 個地域 600 名 対象 調査^{註 19)}

〈年令〉 17 才 ~ 28 才 81.9 %

〈學歷〉 國卒 38.1 %, 中卒 31.6 %, 高卒 18.3 %, 大卒 3 名, 不就學 68 名

註 19) 保社部 淪落女性 善導對策委員會 會議資料 1976.6.22.

〈動機〉生活方途 39.8%, 自進 24.8%, 誘惑 12.6%
一般的으로 年令과 學歷이 上昇하고 있으며 動機는 貧困에서 뿐
아니라 自進해서 淪落行爲를 했다는 數가 注目된다.

서울市 婦女課 実績報告書^{註 20)}는 淪落女性 大多數가 家出後 1
年以内に 淪落行爲를 한것으로 報告되고 있는데 家出理由를 恩혜원
資料^{註 21)}에서 家庭不和 30%, 貧困 20%, 家庭破綻 15%, 男子
關係 10%, 大都市 동경 7%로 問題家庭과 貧困이 主理由가 되며
또한 淪落前 性經驗者가 72%以上이며 그중 72%가 家庭婦, 料食業從
業員, 工場職工, 茶房레지로 일하는 過程에 淪落된것으로 볼때 淪落
의 集團化가 注目된다.

淪落媒介體로는 抱主, 職業紹介所等이 여전히나 自進한 數의 增加
또한 그 變化다.

③ 淪落女性 自立更生 沮害要因

㉑ 抱主에 束縛된 売買對象의 商品化

㉒ 意識面에서 自我를 発見하고 人間다운 生活을 營為코저
하는 意慾이 적으며 価値있는 삶에 對한 基準이 設定되어 있지
않으며 罪意識이 없다.

㉓ 社会的 冷待로 自暴自棄 및 諦念

註 20) 서울市 婦女課 実績報告書 1973.

21) 서울市, 恩혜원 統計資料 1970 - 1973.

表 3 特定地域内 淪落女性 動態

Status of Prostitutes in Red-light Areas

	증 가			감 소			기 년 말		
	합 계	신 구	전 입	기 타	합 계	귀향조치	수용시설입소	직업보도소입소	기 타
	Total	New	Transfer- red in	Others	Total	Sent Home	Admitted in Asylum	Vocational Guidance Inst .	Others
1973	8,197	498	7,281	418	7,055	1,774	42	242	628
								110	4,259
								Empl- oyed	Married
1974	8,681	1,281	7,032	368	8,263	3,089	376	377	624
								190	3,607
								Mid-year & year-end	Others
								16,601	17,019

資料：保健社会統計年報 1975. 保健社会部

㉑ 藥物中毒 (환각제使用) 疾病

㉒ 經濟적으로 自立할 수 있는 資金을 蓄積할 收入이 不足하거나 浪費的인 生活態度와 빚이 많다.

㉓ 「갈곳이 없다」는 対象者가 서울시調查에서 68.7 %가 된다.

나) 우리나라 淪落女性善導事業의 變遷史

① 公娼制 廢止令 制定

公娼制 廢止는 解放과 同時에 人間道德上, 民族保健上, 人權同等을 保障하는 憲法의 基本性格上 要請된 日政以來의 惡習을 排除한 重要 革新이었다.

註 22) 1916年 3月 警務總監部令 第4号 「遊廓乘 娼妓取締規則」에 依해 實施되오던 公娼制를 1946年 美軍政廳 「人身売買禁止法令」 第70号 公布에 이어 1947年 11月 14日 過度政府法令 第7号 「公娼制度等 廢止令」을 宣言, 1948年 2月 14日 同令의 効力を 發生하였으며 1950年 「人身売買 및 他人의 売春行為에 依한 搾取의 禁止」에 關한 國際協約이 締結되었을때 우리나라도 加入하여 國際的善導策을 講究하였다.

公娼廢止에 따른 保健 및 厚生行政方針은 厚生費負擔을 爲한 各道 公娼廢止對策委員會를 組織하고 保健 (性病診療) 및 厚生 (教化指導, 職業輔導) 方針으로 救護하였다. 註 23)

註 22) 解放二十年史, 希望出版社, 1965. p.198.

23) 美軍政廳, 保健厚生部婦女局 새살림 1948.3.4月号 pp.24-25.

② 姉妹院 收容保護更生事業으로 善導

6.25 動亂으로 生活苦와 性道德의 頹廢로 淪落女性 (妓生, 酌婦, 女給, 댄서, 慰安婦, 下女, 美軍同居) 이 더욱 蔓延하여 私娼窟 繁盛, 社会惡癩疾化等 戰爭이 가져온 悲慘한 現象가운데에도 淪落女性들의 存在는 實로 道義로 보나 民族將來를 生覺하나 커다란 社会的 問題였다. 註 24)

이들을 敎導하고 未然에 防止하기 爲하여 서울, 釜山姉妹院收容保護 및 精神的敎化, 洋服, 美容, 編物, 裁縫, 打字等 職業輔導를 하였으며 民間姉妹院의 指導育成에 注力하였다. 註 25)

③ 淪落行爲等 防止法 制定

動亂을 前後한 混亂期에 盛行한 社会惡 根絶을 爲해 5.16 以後 政府는 長期計劃을 樹立, 1961年11月9日 法律 第771号 「淪落行爲等 防止法」을 制定하고 抱主에 對한 團束策과 特定地域 集團善導策을 講究하고 1962年4月 淪落女性 善導를 爲한 施行計劃을 세워 全國에 善導地域 146個所를 設定하고 長期計劃의 效果를 노렸으나 큰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現實이다.

㉑ 우리나라 淪落女性防止와 關聯된 法規

A. 勤勞基準法 1953. 5.10. 法律第280号

§ 51 (年少者 使用禁止) 「女子와 18세미만의 者는

道德上 保健上 有害 危險한 事業에 使用禁止)

註 24) 大韓年鑑 1957, p.290.

25) 大韓年鑑, 1958, p.291.

B. 伝染病豫防法 1954.2.2. 法律第308号 改正 1963.2.9.
法律第1274号

§ 8 II (健康診断)

C. 淪落行為等 防止法 1961.11.9. 法律第771号

D. " 施行令 1969.11.10. 大統領令
第4233号에 의한 職業輔導施設의 基準令 1969.11.10.
大統領令 第4234号

E. 淪落女性善導対策委員會規定 1969.11.28. 大統領令
第4342号

F. 職業安定法 § 29 II

G. 公衆沐浴湯業法 1961.12.6 法律第808号

§ 4 (營業許可)

§ 6 (不潔, 風紀紊亂行為等の 禁止)

H. 兒童福利法 1961.12.30. 法律第912号

§ 15 (禁止行為)

IV: 14才未滿의 兒童에게 酒店 其他 接客營業에 從事
시키는 行為

V: 兒童에게 淫行을 시키는 行為

VI: 淫行을 媒介시키는 行為

I. 性病 檢診規程 1969.2.22. 保社部令 第242号

④ 特定地域設置

A. 意義

特定地域이란 売春行為 一切을 許容한 地域을 말하는

것으로써 團束만으로는 所期의 成果를 期할 수 없어 風俗維持와 保健衛生維持의 範圍內에서 團束을 強化하여 自立케 하고 數의 減少를 期함과 同時 外國軍人 駐屯地域의 特殊事情을 解決하는데 있다.

B. 目的

- a. 売淫地帶와 一般住宅街 隔離로 國民風俗과 教育에 미치는 惡影響을 最少限으로 抑制
- b. 自治的 運營으로 抱主搾取에서 保護
- c. 安定된 生活의 保障과 收入增加로 自主更生의 經濟的 土台 마련 (技術敎導施設, 職業輔導)
- d. 性病管理確立
- e. 正確한 實態把握 및 原因分析으로 善導業務 科學化
- f. 淪落女의 協助로 各種犯人의 早期檢挙에 寄与

C. 運營

淪落行爲兼 防止法 制定實施: 善導委員會設置, 定着地域 設定, 收容保護所設置, 職業輔導所設置, 婦女相談所運營, 性病管理, 債務 無効法の根拠 마련等 更生의 良 機會 賦与하고 있다. 註 26)

④ 職業輔導 및 相談事業을 통한 善導活動 (表 4)

註 26) 金英子 保健社會部 婦女局 새살림 第 21 号 1962. pp. 22-25

表 4.

職業輔導施設現況

	施 設 数	収 容 人 員
計	29 개	2,614 名
国 立	1	357
市 道 立	6	917
市 郡 立	6	450
社 会 福 祉 法 人	16	890

資料：保健社会部 婦女課，1976.

다) 現代社会 売春의 特徵

① 都市化에 따른 人口集中, 奢侈消費性 허영의 高潮

三次産業 女性従業員の 増加 및 家出女性数の 増加等 社会背景은 貧困理由만이 아닌 스스로가 職業으로 選択하는 傾向이 있고 淪落行為의 方法도 多樣化되고 있다. 特히 高等教育履修者도 價值觀의 喪失로 勤勞女性の 給与와 收入差異를 역설하며 自進하여 淪落行為를 하는 傾向이 있어 注目된다.

② 日本에서는 最近 売春의 實態를^{註 27)}

最近에 있어 日本의 売春의 實態는 巧妙化, 潛在化가 顯著한 傾向이며, 売春收益을 活動資金等으로 하기 爲해서 暴力団 밑에 女性을

註 27) 婦人法会 핸드북, 山口真, 柴山幹子編集

두고 組織的으로 택시로 받아 假裝해서 売春業을 専業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売春의 動機는 以前에는 經濟的으로 困難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家庭의 貧困과 關係없이 近年에는 「性の解放의 무드중」 「性を 안조이 하기 爲한 당연한 權利」, 「人間의 解放은 性の解放에서」의 價值觀을 樂으로 삼고, 하는 者가 많다고 한다.

地域的으로 売春에 對한 許容量이 다르다.

売春婦의 高學歷化, 大學卒業者도 적지 않다. 그 理由는 根本的으로 現在 日本社會가 男性優位の 社會이고 女子가 經濟的 自立이 困難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두말할 必要없다.

라) 問題點

① 制度面 : 需要와 供給法測에 依한 男性嚴罰主義와 抱主와 팬프等 媒介體에 對한 束縛이 強化되어야 한다.

② 社會面 : ㉠ 倫理 및 道德의 頹廢, 價值觀 喪失

㉡ 犯法性 및 反社會性은 社會惡造成과 犯罪 유발의 온상이 된다.

㉢ 마약중독으로 精神的, 肉體的인 폐인발생 및 性病, 非衛生環境으로 고통을 받아 人間타락 조장

㉣ 淪落女性 住宅街의 侵入 (고급주택가, 맨손아파트 등) 새로운 類型

㉤ 社會의 冷待, 배척, 무관심, 비난 人間差別로 더욱 歪曲된 人生배출

㉞ 임신과 私生兒出産에 따른 社会諸問題

㉟ 淪落女性 善導를 위한 社会的 認識高潮

③ 豫防对策面

㉑ 多樣化한 淪落女性의 動機 및 社会背景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에 対処하는 것으로는 소극적이다.

㉒ 淪落可能女性을 收容하고 있는 集團(料食業所女従業員, 低賃金女工集結地, 都市零細地域居住女性)에 對한 豫防对策이 未洽하다.

㉓ 自立更生을 위한 정신의지, 職業輔導技術習得, 生活經濟力, 健康面(時代職種開發)

㉔ 豫防对策을 위한 家出女性 善導事業(相談事業)移動性에 따라 移動, 相談 및 教育

2) 欠損家庭의 實態 및 問題點

가) 母子家庭

① 母子家庭의 概要

㉑ 1975年 現在 未亡人 總數 60萬6955名中 軍警 未亡人 이 約 4萬3千名이고 要救護對象 未亡人은 6萬4766名으로 全 未亡人에 對한 10.7%이다.

未亡人의 扶養家族은 老父母 2萬1981名을 除한 子女數가 192萬3302名으로 1人當 3.2名の 子女扶養責任이 있다.

無子女 獨身者 4%인 2萬2910名을 除한 平均은 다소 높아진다.

未亡人과 扶養家族으로 構成되는 人口는 總 255 萬 2238 名으로 全人口의 7.2 %를 차지하는 큰 對象이다.

1955~1975 年間 年平均 1.6 % 增加率을 보인 未亡人數는 人口增加率에 比較하면 安定勞를 維持할것으로 展望된다.

④ 婦女保護事業 서울시聯合會가 要保護母子家庭 500 世帶를 對象으로 調査한 바에 依하면²⁸⁾

ㄱ. 世帶主人 母의 年齡은 30 代前般에서 40 代 후반에 76.0 % 가장 많고 子女는 13 才에서 20 才가 많아 就學 適齡期 兒童이 大部分이다.

ㄴ. 母子家庭의 39.6 %가 農漁村으로부터 無作定 上京하는 (서울 轉入者가 增大되고 있어 向都離村의 現象이 뚜렷하다.

ㄷ. 母子家庭母의 教育水準은 不就學, 國文解得, 國卒의 順位이며 子女教育에 對한 關心度 높고 教育責任感 갖고 있으나 環境 不備 및 教育資力 乏乏 能力 不足으로 바람직한 子女養育의 高층이 크다.

ㄹ. 家口主人 母의 學歷水準이 미 숙하고 職業能力을 갖추지 못해 貧困한 低所得 및 生保對象者의 많은 比率을 찾아 하고 있다. (表 5)

註 28) 母子家庭의 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1971.12. 婦女保護事業
서울特別市聯合會

<表 5>

家口類型別 家口形態

家口形態別 • 家口類型	低 所 得 家 口	生 保 家 口
調 査 家 口 數 (50.30家口)	1,162 (23 %)	108 (2.14%)
家 口 當 人 員 數	4.47	3.60
家 口 當 就 業 人 員 數	1.32	1.09
一 般 家 口	920 (79.02%)	47 (43.52%)
母 子 家 口	107 (9.30)	21 (19.44)
父 子 家 口	23 (2.07)	4 (3.70)
老 人 家 口	34 (3.01)	5 (13.91)
獨 身 家 口	71 (6.11)	20 (18.52)
兒 童 家 口	6 (0.51)	1 (0.92)

保健社会部 国民生活実態調査報告書，第一輯，1974.11

ㄱ. 母子家庭母의 就業狀態는 零細農業，離商人이 主인 零細販賣，서비스業 順位로 構成되어 있고 大部分이 現職에 不滿足하고 있으며 家口員 不就業事由로써 職業能力無，教育水準低位，資金全無，健康上 理由를 들 수 있다. (表 6)

ㄴ. 生活類型別現況은 極貧 (月 15,500 以下)，生計困難 (月 15,500 ~ 35,000)，生計維持 (月 35,000 ~ 56,000)，生活安定 (月 56,000 원以上) 順位이며 2 萬圓 未滿家計收入家口 72.2%가 거의 대다수이다.

ㄷ. 欠損된 原因은 남편의 病死가 많고 다음이 離婚等이며

10.4 % 以上の 母가 再婚經歷을 가졌고 30.4 %가 再婚에 對한 希望을 나타냈다.

<表 6 >

脆弱家口職業構造

	低所得家口	生保家口
單純勞働者	54 %	38 %
販売従事者(路店商, 行商, 販売員)	11 %	12 %
農 業	10 %	4.6 %
서비스業(理美容業, 清掃夫)	5.0 %	6.5 %
專門的技術職	3 %	-
事務職	2 %	1 %
交通채신업	1.3 %	-
無 職	11 %	29.6 %

○. 扶養子女數別 現況은 3人, 4人, 2人의 順位로 扶養比率이 높고 子女教育 및 結婚等에 대비한 積金家口가 32.8 %이며 32.4 %가 負債를 지고 있다.

ㄱ. 住宅環境은 無住宅 家口가 많고 移住經歷이 잦다.

ㄴ. 母子保護施設(母子院)에 對한 이들 對象世帯들의 理解程度는 不足했다.

② 母子保護施設

㉓ 우리나라 母子保護事業은 6.25 動亂으로 發生된 戰爭未亡人이 世帶主人 零細家口에 對한 救貧事業 또는 保護事業을 目的으로 日政時代に 朝鮮總督府에서 制定實施되었던 朝鮮救護令에 依하여 1955 年부터 運營되어 왔으나 1962 年부터 아래 法에 根拠하여 母子院을 設立 母子를 同時收容保護함으로써 母子家庭의 人間다운 生活을 爲한 뒷받침을 하여 왔다.

- 兒童福利法 第 3 條 I 項 (1961.12.3 制定, 62.1.1 施行)

「兒童福利施設이라 함은 兒童相談所, ……母子保護施設…」

- 兒童福利法施行令 第 2 條 VIII 項

「母子保護施設」

- 兒童福利施設 設置基準令 第 40 條~第 43 條

「母子保護施設 設置基準, 職員, 生活指導」

- 生活保護法 第 3 條 II 項

「18 才以下 兒童保護에 必要時 母도保護」

- ㉔ 兒童福利法 및 生活保護法에 依한 母子保

<表 8> 一般家口數에 對한 母子家口比率

總 家 口 數	6,691,800		總人口 3,345 萬 9 千人에 家口當人員 5 人으로 算定 推計함
一 般 母 子 家 口 數	606,955	9.0 %	總家口數에 對한 比率
要 保 護 母 子 家 口 數	64,766	10.6 %	一般母子家口數에 對한 比率
母子保護施設收容家口數	823	1.2 %	要保護母子家口數에 對한 比率

資料：韓國統計年鑑 1974, 保健社會統計年報 1974.

護 施設의 成果를 보면 1962年以後 1974年까지의 保社部가 集計한 統計에 依하면 21,352名을 保護하여 社會에 定住安着시켜 婦女子의 淪落과 子女의 孤兒나 浮浪兒로 社會問題를 惹起치 않도록 事前에 防止하였으나 (表 7) 全國 總家口數 6,691,800의 9.0%인 母子家口 606,955 가운데서 10.6%인 64,766이 要保護母子家口數이며 要保護母子家口數의 1.2%만이 收容保護를 받고 있음은 (表 8) 政府의 母子家口 收容保護施策에서 職業輔導事業으로 轉換토록 政策的으로 시도한데 理由가 있겠으나 보다 效率的인 保護對策이 講究되어야 겠다.

<表7>

母子保護施設収容者実績
Activities of Maternal and Child Welfare Institutions

	기관 수 No. of Insti- tution	계 Total	입 소 자 수 Admissions				계 Total	퇴 소 자 수 Discharges				기 년 말 현 재 재 소 자 No. of Inmates as of Quater & year-end					
			부의전사 Husband Dead in War	부의사망 Husband Dead	부의행방 불명 Husband Missing	기 타 Others		생계독립 Self- support	전 소 Trans- ferred Out	사 망 Death	기 타 Others	계 Total	모 Mother	부양 자녀 Children Dependant		노령 부양자 Aged Dependant	
														남 M.	여 F.	남 M.	여 F.
1965	37	1,794	86	762	25	921	2,346	954	77	-	1,315	4,087	1,074	1,535	1,450	-	28
1966	26	1,547	108	645	36	758	1,743	860	68	5	810	3,891	1,086	1,384	1,390	-	31
1967	33	906	99	595	46	166	1,528	832	361	3	332	3,269	703	1,280	1,253	-	33
1968	34	1,008	176	493	102	237	1,104	735	94	-	275	3,173	692	1,282	1,159	1	39
1969	32	1,180	75	1,039	39	27	1,116	1,065	21	4	26	3,237	694	1,275	1,236	1	31
1970	34	1,193	81	1,031	19	62	1,076	906	25	2	143	3,354	713	1,317	1,282	1	41
1971	34	1,294	62	835	64	333	1,222	1,122	-	1	99	3,426	731	1,288	1,367	2	38
1972	35	1,276	170	639	213	254	1,111	740	10	27	334	3,591	775	1,358	1,407	2	49
1973	36	1,283	30	532	27	694	1,157	716	-	9	432	3,717	812	1,407	1,437	1	60
1974	35	428	6	319	1	102	34	268	14	2	60	3,801	823	1,423	1,484	2	69
1975	34	1,093	3	240	1	3	1,098	226	-	-	11	3,782	834	1,439	1,447	2	60

資料；保健社会部 統計 年報. 1976

㉔ 母子院에 收容된 母子家口 実態

1. 母子院에 收容되는 要保護母子世帯는 13才未滿의 子女 3人以上을 原則으로 하며 3年後에는 退所하여 社会에 復歸토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自活할 수 있는 經濟的 蓄積을 爲한 活動을 展開할 수 있는 31~40才까지의 30代가 65.7%를 點하고 있으며 (표 9-①) 家族數는 4食口가 40%, 5食口가 35%로 扶養家族이 많은 狀態이다. (表 9-②)

政府에서 支給하는 糧穀으로는 主食이 不足하다는 世帯가 58.5%이다. (表 9-③)

<表 9 - ①>

母子世帯主年令	20 ~ 25	26 ~ 30	31 ~ 35	36 ~ 40	41才以上	合 計
數	2	59	250	243	196	750
%	0.2	8	33.3	32.4	26.1	100

資料：婦女保護事業聯合會，母子家庭實態調查，1971.

<表 9 - ②>

區 分	3 食口	4 食口	5 食口	6 食口	합 계
數	82	298	265	105	750
%	11	40	35	14	100

<表 9 - ③>

区 分	不足하다	겨우充當한다	充分하다	合 計
数	438	305	7	750
%	58.5	40.5	1	100

ㄴ. 職場을 갖고 子女教育을 지키겠다는 希望으로 無作定都市에 移入해온 世帯가 많다.

ㄷ. 母子世帯主는 住宅積金 49.2%, 教育積金 44.5%等 收入에 比해 積金加入數가 많다.

ㄹ. 母子世帯主의 32.4%가 勞動, 27.2%가 販賣職에 從事하고 있으며 이들은 37.6%가 도매상, 16.5%가 양재, 19.9%가 음식점업을 希望하고 있다.

ㅁ. 母子世帯 30.8%가 負債를 지고 있고 거의가 償還能力이 희박하다.

ㅂ. 母子世帯主 64.2%가 子女教育問題, 25.5%가 生計維持를 爲한 精神的 不安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의 大部分이 退所後를 不安하게 生覺하며 生業資金貸与와 公營住宅入住를 願하고 있다.

ㅅ. 母子世帯主 10.6%가 1~3회의 再婚經歷을 가지고 있으며 再嫁可能者가 9.6% 守節者가 75.6%가 된다.

ㅇ. 其間 入所者 實態를 보면 夫의 戰死나 死亡보다 夫의 行方不明과 其他가 43.3% 比率를 차지하였고 退所者 가운데 生

計 獨立者가 46.4 %였다.

ㅈ. 母는 平均 約 3 名(老年扶養者포함)씩 扶養하였고
1962 ~ 71 年間 10 年間に 學資金 不足으로 就學못한 子女가 每
年 平均 68 % 있었다.

나) 問題點

① 制度上: 兒童福利法에 根拠한 母子世帶保護方案으로는 全体
保護對象, 母子家庭의 極히 一部에 지나지 않는 施設收容世帶만을
爲한 對策에 그치고 있으며 事業方針 또한 主로 救護事業에 있어
欠損家庭 및 問題家庭의 經濟的 自立과 生活安定을 爲하고 社會問
題 發生預防을 爲한 綜合的인 解決策을 講究할 수 있는 法制度가
未備하다.

② 施設運營面

㉑ 施設從事者側面: 母子院의 運營經費調達狀況은 自体收入 10
%, 國庫 및 地方費補助 43 %, 外援補助 40 %, 其他收入 7 % 로
써 施設을 運營함에 所要되는 經費를 支払할 自体收入을 確保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經費負擔能力이 없는 民間施設長은 事業에 意
欲을 喪失하고 있으며 物的貧困 및 心的不安의 苦痛을 지니고 있
는 母子世帶를 自立生活을 圖模케 하고 健全家庭으로 育成 輩出하
는 專門的 福祉事業家가 不足한 傾向이다.

㉒ 被收容者의 側面: a) 母子世帶主의 技術輔導時 材料費 不
足으로 實習이 不充分하여 習得한 技術의 活用이 不可能하고 就業
이 斡旋된 者도 低賃金이 不滿이며 그의 대다수가 行商과 勞動에

従事하고 있어 広範圍한 職業에 就業할 수 있는 職種이 開發되고 있지 못하다. b) 母子院에 收容되어 補助를 받으면서도 低所得과 政府支給 양극 및 生計費 不足으로 負債를 지고 있는 世帯가 많다.

③ 子女養育面

母子世帯主인 어머니가 安心하고 就業할 수 있도록 幼兒를 맡길 수 있는 託児所가 不足하고 就業中인 兒童의 教育費 마련이 힘든 실정으로 義務教育혜택도 못받고 있는 家庭이 있다.(1962 - 71 年間 母子施設의 1,330 名 子女가 學資金 不足으로 就學을 못하였다.)

④ 退所後 保護 및 居宅救護面

母子院에서 期間滿了가 되어도 安心하고 退所하여 安定된 生活를 할 수 있는 住宅對策이 不足하고 收容되지 않은 要保護母子家庭의 居宅救護를 통한 自立生活支援方案도 不足하다.

다) 母子福祉法 制定에 對한 公聽會 與論分析

(本分析은 73.3 社団法人 婦女保護事業 全國聯合會가 主動이 되어 母子福祉法 制定의 必要性에 對한 各界與論을 綜合해본 公聽會 內容을 根拠로 하여 作成한 것임)

① 綜合與論

도움을 必要로 하는 母子家庭이 지니고 있는 問題點을 解決할 수 있는 方案으로는 母子中心의 立法措置가 講究되어야 한다는 것이 共通的 與論이다.

[illegible]

10

問 題 點	內 容	主張人士	備 考
4) 保護方法 및 種類	法이라 稱함이 妥當하다.	元善喜	女性貯蓄 中央會長
	母子家庭에 局限하지 않고 欠損家庭을 돕는다는 폭넓은 意味에서 家庭福祉法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姜萬春 李効再 金현산	社會福祉 研究所長 梨大教授 明知大 "
	施設收容保護냐? 居宅保護냐? 明白하게 強調되어야 겠다. 生保對象에서 除外되어있는 母子家庭의 保護方案을 講究함이 必要하다.	姜萬春	
	母子福祉施設이 母子家庭에만 局限시켜 利用되지 말고 家庭福祉施設로 擴大하여 低所得層이나 他問題家庭에서도 惠沢을 받을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定함으로 (託兒所, 가정봉사원제도) 좋지 않을까 母子福祉法案에 母子福祉施設 (母子福祉센터, 母子휴양의집, 託兒施設, 家事奉仕員制度) 과	李効再 李 榮	

問 題 点	内 容	主張人士	備 考
5) 經費負擔	母子院 設置에 對한 規定이 있어야 한다.		
	收容保護(生計保護까지 못 해도 委託拒否禁止規定挿入) 規定必 要하다.		
	公營住宅分讓問題, 売店設置問 題, 団体支援, 家庭奉仕員制度設 置	姜萬春	
	自立할 수 있는 就業의 길 摸索, 就業機能賦与	김현산	
	母子福祉医料施設 및 就業技 術訓練無料로 해줘야 한다.	元善喜	
	IQ 낮아 就業技術訓練 不可 能 勞動力(막일)밖에 할 수 없음	정정량	부엘母子 院 長
	国家나 地方自治団体が 一次 的으로 責任지고 民間資金造成 에 對한 方案必要(国内從援者 모집)	姜萬春	
	地域社会 保護運動(地域社会에 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問 題 点	内 容	主張人士	備 考
6). 専門要員養成 母子福祉事務所 (一線 서비스 機關設置)	母子家庭 돕는 運動) 行政業務와 區別해서 실제 相 談도 하고 母子世帯에 對한 組 織化와 地域社会資源의 動員 母子家庭만을 爲한 託兒所施設 家庭奉仕員制度 母 子 休 養 所 惠沢을 주는 現實性이 있는 法 案制定要望	姜萬春	

③ 与論分析結論

母子家庭을 優先順位로 欠損家庭 및 問題家庭들의 社会問題(悲) 發生予防을 爲한 家庭福祉를 實現할 수 있는 保護施策確立을 爲해 世界各國에서 制定 實施하고 있는 理想的인 方案을 參酌하여 우리 社会体制에 맞는 合理的인 家庭福祉法 制定이 妥請된다.

나) 未婚母

① 未婚母概念

未婚母라 함은 婚前 性行爲로 어머니가 된 女性을 말하며 婚姻한 事實이 없고 私生兒를 거느린 어머니를 말한다 하겠다.

女性의 貞操觀념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

고 있었으나 棄兒 및 私生兒數의 增加에 따라 社會問題가 되고 있으며 이는 都市化 工業化 核家族化가 露呈한 現代社會의 母子家庭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② 棄兒取扱狀況實態

兒童關係 社會問題中 棄兒發生件數를 보면(表 10) 1965 年以來 年平均 6 千名인바 이들 棄兒의 男女別 比를 보면 約 2 : 3 程度로 女兒가 男兒보다 많은 男兒選好 傾向을 보여주고 있으며 年齡別로 보면 1 才未滿이 大部分이다.

이들의 大部分은 兒童福利施設에 入所하였고 海外入養等으로 取扱되고 있다.

앞으로 海外入養 全面中斷을 假定한다면 年間 6000 ~ 7000 名의 棄兒에 對해 國內入養과 施設收容 保護方法으로 解決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政府의 兒童收容施設支援과 國內資源動員問題는 負擔이 增加될것에 對備한 私生兒 出產의 予防이 先決問題라고 볼때 未婚母의 予防對策은 時急하다고 볼 수 있다.

③ 未婚母 發生環境

㉞ 貧困, 家族破壤等 諸原因으로 家出하여 2, 3 次 產業에 從事하게된 未婚女性 및 靑少女의 數가 增加하고 大部分이 結婚適齡期 女工 및 女從業員들로 集團的 生活를 함으로써 父母나 監督者의 보호감독으로 부터 自由롭게 私生活를 영위하기 때문에 性關係 紊亂을 招來하게 되었다.

㉟ 不良靑少年 少女의 性道德紊亂은 婚前 性關係를 肯定的으

立國中國——蔣中正與中國革命（1911-1949）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

蔣中正與中國革命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蔣中正與中國革命——中國革命之蔣中正

<表 10>

기 아 취 급 상 황
Number of Abandoned Children by Age Groups and Action Taken

			취 급 아 동 수 Age group								조 치 상 황 Action Taken														
			총 수			0 세		1~6세미만		6 세 이상 and over		임시보호 Temporary Protection		귀 가 (1) Sent Home		연고자 인도 Sent to Relatives		일반시설전원 Transferred to General Inst.		특수시설전원 Transferred to Special Inst		입양위탁 Foster care		기 타 Others	
			계 Total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남 M.	여 F.
1965			7,866	3,713	4,153	559	1,081	1,585	2,242	1,569	830	60	43	-	-	195	161	3,206	3,750	-	-	200	140	52	59
1966			7,274	3,401	3,873	530	1,013	1,414	2,059	1,457	801	63	57	-	-	208	168	2,976	3,509	-	-	151	119	13	20
1967			6,526	3,032	3,494	501	1,101	1,336	1,818	1,195	575	304	321	-	-	183	137	2,356	2,819	-	-	173	187	16	30
1968			5,976	2,724	3,252	391	903	1,399	1,885	934	464	427	367	-	-	185	111	1,945	2,582	-	-	150	162	17	30
1969			5,743	2,511	3,232	442	1,054	1,258	1,734	811	444	269	432	-	-	197	165	1,816	2,318	-	-	206	283	23	34
1970			5,346	2,268	3,078	652	1,531	811	1,046	805	501	322	479	-	-	226	226	1,333	1,791	-	-	343	529	44	53
1971			5,525	2,292	3,233	655	1,337	1,063	1,534	574	362	376	539	-	-	259	257	1,291	1,960	-	-	322	400	44	77
1972			6,211	2,519	3,692	1,033	2,191	934	1,225	552	276	494	811	-	-	263	322	1,384	2,044	-	-	297	409	81	106
1973			5,941	2,558	3,383	965	1,917	1,032	1,197	561	269	1,077	1,750	-	-	247	220	688	630	-	-	410	604	136	179
1974			5,935	2,609	3,326	811	1,739	1,233	1,272	565	315	486	643	151	153	254	258	855	905	57	62	612	1,020	194	285
1 ~ 3월 Jan.~ Mar.			1,355	617	738	224	444	255	212	138	82	242	280	20	8	43	47	164	184	9	14	97	161	42	41
4 ~ 6월 Apr.~ Jun.			1,535	666	869	188	436	323	352	155	81	244	363	37	36	48	56	190	194	13	15	90	140	44	65
7 ~ 9월 Jul.~ Sep.			1,463	641	822	175	422	336	330	130	70	-	-	37	47	79	92	244	255	24	22	201	319	56	87
10 ~ 12월 Oct.~ Dec.			1,582	685	897	224	437	319	378	142	82	-	-	57	62	84	63	257	272	11	11	224	400	52	89
서울특별시 City of Seoul			1,514	602	912	261	532	332	375	9	5	282	442	25	33	26	32	70	70	2	-	165	284	32	51
부 산 시 Busan City			819	419	400	104	174	151	150	164	76	116	86	7	11	5	6	128	134	18	8	103	106	42	49
경 기 도 Gyeong-gi Do			707	284	423	114	252	133	135	37	36	87	111	-	4	21	34	91	90	1	2	72	155	12	27
강 원 도 Gang-weon Do			432	189	243	46	131	101	91	42	21	-	-	5	4	78	94	42	57	1	10	46	60	17	18
충 청 북 도 Chung cheong Bug Do			152	55	97	14	60	26	30	15	7	1	4	-	1	16	10	30	68	-	-	7	6	1	8
충 청 남 도 Chung cheong Nam Do			289	137	152	13	71	60	41	64	40	-	-	4	8	2	2	95	94	12	8	11	30	13	10
전 라 북 도 Jeonra Bug Do			338	157	181	32	61	81	92	44	28	-	-	16	8	4	5	125	145	5	4	5	15	2	4
전 라 남 도 Jeonra Nam Do			358	156	202	47	109	84	80	25	13	-	-	5	8	20	19	55	53	4	3	53	85	19	34
경 상 북 도 Gyeongsang Bug Do			879	403	476	101	231	192	193	110	52	-	-	58	49	58	34	112	74	7	10	123	241	45	68
경 상 남 도 Gyeongsang Nam Do			432	198	234	74	114	69	83	55	37	-	-	31	27	24	22	104	120	7	17	22	32	10	16
제 주 도 Jeju Do			15	9	6	5	4	4	2	-	-	-	-	-	-	-	-	3	-	-	-	5	6	1	-

주: 1) 항목 신설하였음.

Note: 1) Item Set up in 1974

資料; 保健社会部 統計年報. 1974.

로 받아 들이고 있다.

㉔ 西歐社會의 「 Free Sex 」 風潮 영향

㉕ 不偶한 環境에 處해있는 靑少女의 姙産에 關한 相談(保健·衛生)

및 生活指導相談의 不足現象

④ 未婚女性의 性에 對한 態度

㉔ 一般 靑少年(中學生)의 婚前 性關係에 對한 態度²⁹⁾

어떤 境遇도 可하다. 35.6%이나 結婚對象이면 可하다 26%, 사랑하면 可하다 10.5%, 사랑안해도 可하다 5.3%, 모르겠다 22.6%로써 41.8%가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㉕ 勤勞靑少女의 態度³⁰⁾

婚前性關係에 對해 어떤 경우도 可하다 46.3%, 서로 愛情이 있으면 可 16.3%, 愛情이 없어도 괜찮다 4.3%, 結婚할 사이면 可 23.5%, 無回答 9.6%로 44.1%가 肯定的이다. 性經驗있는 者가 8.8%, 異性交際經驗있다 16%, 하고 있다 10.1%이며 異性交際者의 80.5%가 자취, 기숙사, 하숙, 친척집에 있는 少女이다.

㉔ 可託期 勤勞女性의 異性交際에 對한 態度³¹⁾

交際經驗있다 35%, 年齡別 經驗은 26~27才 64%, 學

註 29) 姜萬春, 福祉研究(8月号) 서울: 韓國福祉研究所 1971, pp. 66-

68 (1971, 仁川男女中學生 370名 對象調査)

30) 鄭潤植, 勤勞靑少年의 意識構造에 關한 研究

31) 女性勤勞者異態調査報告書(製造業, 운수업 對象) 1973, 勞動庁

歴別經驗은 國中退以下와 高中退以上 各 45 % 이상이다. 背信당한 적 있다 17 %, 相談必要性있다 38 %, 必要치 않다 49 %,

上記한 調査에 依하면 一般靑少女 41.8 %, 勤勞靑少女 44.1 %가 肯定的 反應을 보여주고 있고 未婚勤勞女性 35 %의 交際經驗은 自由롭게 異性交際가 이루어 지고 있는 意識面과 現實面을 보여주고 있다.

⑤ 各國 未婚母 實態

未婚女性들의 性關係가 비교적 自由로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과 그의 西獨, 네델란드 等 北西유럽 5個國 資料를 中心으로 英國 偏父母 家庭委員會가 研究한 論文에 의하여 比較해본다면³²⁾

㉞ 未婚母는 各國 偏母數에 對해 스웨덴 40 %, 노르웨이 30 %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表 11 - ①) 노르웨이에서는 未婚母를 爲한 社會保險給付制度가 實施되고 있다.(스칸디나비아 諸國 社會保障參照). 英國에서는 別居狀態의 偏母가 顯著하게 많다.

<表 11 - ①>

Estimated Distribution of Single Mothers by Marital Status

	End of 1960s				
	Norway	Swede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etherlands	1971 Great Britain
Widowed	26 %	15 %	35 %	NA %	24 %
Divorced	34	29	33	NA	20
Separated	9	16	11	NA	41
Unmarried	30	40	21	12-15	15

NA = Not available

註³²⁾)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Year XXVIII No.1, 1975, GENEVA

㉞ 新生児 1,000 名에 對한 私生児 分布는 스웨덴이 1969 年 16.3 %로 가장 높아 1960 年 11.3 %에서 5 % 増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덴마크다음으로 英國의 1969 年 8.4 %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増加되고 있으나 西獨의 減少추세는 주목된다(表11-②)

<表 11 - ②>

Illegitimate Births Per 1,000 Total Live Births

Year	Denmark	Norway	Swede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Netherlands	Great Britain
1955	-	-	9.9	7.9	1.2	1.7
1960	7.8	3.7	11.3	6.3	1.35	5.4
1965	9.5	4.6	13.8	4.7	1.8	7.7
1969	11.3	5.6 (1968)	16.3	5.0	2.2	8.4

㉟ 扶養兒童가진 어머니가 家庭 生計責任을 지고 있는 比率이 덴마크 90 %, 스웨덴 90 % 높은 比率이며, 學生母를 包含하고 있음이 注目된다. (表 11 - ③)

㊱ 正常(두兒童있는 主婦不就業 兩父母의) 家庭의 所得에 對한 100 分比에서 就學前과 初等學校 두兒童가진 常用勤勞者인 未婚母 家庭이 늘웨이 108 %, 스웨덴 107 %로써 月別純所得이 제일 높음을 보여주어 注目된다. (表 11 - ④)

<表 11 - ③>

Proportion of Mothers with Dependent Children in
Each Family Type who are Economically Active

	Denmark ¹ (1968)	Norway (1960)	Sweden ² (1969)	Federal Republic of Germany (1969)	Great Britain (1971)
Married	NA %	7 %	31 % (1965)	34 %	37 %
Widowed	NA	NA	56	40	58
Divorced	66	54	80	71	50
Separated				58	42
Unmarried	90	62	90	88	33

NA = Not available

¹ Includes those mothers who are in school.

² Excludes from "economically active" those mothers
who are in school.

表 11 - ④

Estimated Incomes, by Source and Amount, of Different Types
of One-Parent Families, compared with Income of
"Standard" Two-Parent Family¹

Country	Source of income ²	Types of one-parent families						
		A	B	C	D	E	F	G
Denmark (Amounts in D Kr/month)	Earnings	-	-	-	-	-	1,778	2,667
	Family allowances	430	430	758	380	758	758	188
	Advance maintenance	-	-	-	378	-	-	-
	Social assistance	808	808	738	738	738	-	-
	Housing allowance	178	178	248	248	248	98	43
	Less direct taxes and social in- surance contri- butions	-112	-112	-85	-275	-85	-460	-633
	Net income per month	1,304	1,304	1,659	1,469	1,659	2,174	2,265
Norway (Amounts in N Kr/ month)	Income as percentage of income of two- parent family	58	58	73	65	73	96	(100)
	Earnings	-	-	-	-	-	1,695	1,542
	Family allowance	167	167	333	333	333	333	167
	Advance maintenance	200	200	400	400	-	400	-
	Widow's pension	-	-	-	-	1,130	-	-
	National insurance	712	-	712	-	-	125	-
	Children's pension	-	-	-	-	406	-	-
Sweden (Amounts in S Kr/ month)	Oslo insurance benefit	184	50	234	947	-	-	-
	Social assistance	-	574	-	-	-	-	-
	Less tax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	-	-	-	-156	-353	-681
	Net income per month	1,263	991	1,679	1,680	1,713	2,200	2,028
	Income as percentage of income of two-parent family	62	49	83	83	84	108	(100)
	Earnings	-	-	-	-	-	1,667	2,500
	Family allowances	100	100	200	200	200	200	200
Sweden (Amounts in S Kr/ month)	Advance maintenance	230	230	460	460	114	460	-
	Widow's pension	-	-	-	-	954	-	-
	Children's pension	-	-	-	-	618	-	-
	Social assistance	-	644	575	575	-	-	-
	Housing allowance	139	139	148	148	140	140	75
	Less tax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 tions	-	-	-	-	-	-290	-743
	Net income per month	1,113	1,113	1,383	1,383	2,026	2,177	2,032
Sweden (Amounts in S Kr/ month)	Income as percentage of income of two- parent family	55	55	68	68	100	107	(100)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mounts in DM/month)	Earnings Family allowances Widow's pension Children's pension Social assistance Social assistance: Rent Housing allowance Less tax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 - - - 273 200 - -	- - - 310 200 - -	- - - 451 200 - -	- - - 451 200 - -	- - 330 293 - 100 -	1,000 25 - - - - 53 -200	1,500 - - - - - 44 -350
	Net income per month	473	510	651	651	723	878	1,194
	Income as percentage of income of two-parent family	40	43	55	55	62	74	(100)
Netherlands (Amounts in florins/month)	Earnings Family allowances Widow's pension Social assistance Social assistance: Rent Housing allowance Less taxes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 - - 460 160 - -	- - - 460 160 - -	- - - 520 160 - -	- - - 520 160 - -	- 106 570 - 75 -25	800 106 - - 35 -180	1,200 106 - - 25 -320
	Net income per month	620	620	680	680	730	761	1,011
	Income as percentage of income of two-parent family	61	61	67	67	72	75	(100)
Great Britain* (Amounts per week and per month in pounds sterling)	Earnings Family allowances Family income supplement Widow's pension Supplementary benefit (including rent for families A,B,C,D) Less tax Less national insurance	- - - - 10.50 - -	- - - - 11.30 - -	- 0.90 - - 12.10 - -	- 0.90 - - 12.10 - -	- 0.90 - 11.00 1.85 - -	15.80 0.90 3.20 - - -4.26 -1.89	31.37 0.90 - - - - -
	Net income per week	10.50	11.30	13.00	13.00	13.75	18.83	26.12
	Net income per month	45.50	48.97	56.33	56.33	59.33	81.60	113.19
	Income as percentage of income of two-parent family	40.2	43.3	49.8	49.8	52.6	72.1	(100)

* Cash equivalents of free school meals, welfare milk, rent and rates rebat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above calculations. The long-term addition is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family A's income but is included in the other calculations.
(Data used for table based on official sources.)

Footnotes

¹ The "model" family types selected to illustrate the income support available to single-parent families and for purposes of comparison are:

- A: a young unmarried mother (aged 20) with one child aged 12 months;
- B: an unmarried mother with one child of primary-school age;
- C: an unmarried mother, with two children, one pre-school and one primary-school age;
- D: a divorced or separated mother, with two children (ages as C);
- E: a widowed mother, with two children (ages as C);
- F: an unmarried mother, with two children (ages as C), in full-time employment with earnings two-thirds of those of median gross earnings for adult male industrial workers
- G: "standard" two-parent family, with two children (ages as C); wife not working outside the home and the husband earns the median gross earnings for adult male industrial workers (1970/1971).

For the mothers who are not in outside employment (families A, B, C, D, E) it is assumed that they lack substantial resources of their own and (as also in family F) receive no maintenance from the father.

² The forms of income support shown in the table do not include maternity benefits, education and training grants, value of reduced charges for child care: see separate sections on these measures; also separate footnote for Great Britain (above).

⑥ 未婚母를 爲한 서비스 (Service for unmarried mothers)

㉔ 私生兒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增加하고 있으며 美國에 있어서는 250 萬名이라는 엄청난 數를 보여주고 있다. (即 18 才 未滿 兒童人口中 1,000 名中 39 名이 私生兒이다. ^{33-①)}

이러한 社會的 現象은 未婚母를 爲한 서비스에 더 많은 關心을 기울리게 하며 各國에서는 私生兒에 對한 豫防的이며 保護的인 對策과 事後處理를 講究하고 있다.

未婚母를 爲한 서비스는 妊娠中 이들을 爲한 臨時施設收容 및 相談事業, 未婚夫와의 相談事業, 出產後 出生兒에 對한 相談 및 親權포기등이 中心이 된다. ^{33-②)}

未婚母를 돕기 爲하여 Case Worker 는 処罰的인 態度가 아니라 理解로써 對해주며 그들이 自身의 힘으로 어린이를 養育할 수 없음이 明白해지고 어린이 養育에 따르는 義務와 責任을 감당할 수 없음이 判明될때 이들은 어린이의 福祉를 爲해 親權拋棄에 同意하게 되며 그들 스스로의 장래 計劃에 對해서도 도움받게 된다.

이들은 Case Worker 의 도움을 통해 없었던 自負心을 되찾으며 한 人間으로써 뿐만 아니라 한 女性으로써 自身을 되찾게 된다.

註 33) 金德俊外 4人共著. 新社會事業概論 p. 226.

33-①) Encyclopedia of S.W. op, cit., p. 140.

33-②) Honrietta, L Gordon Casework Services for Children (Boston, Houshton Mifflin Company, 1956) p. 224.

㉔ 保健社会部는 未婚母 保護를 爲하여 産室과 職業輔導施設 이 併設된 未婚母 保護施設을 서울에 1個所 設置運營中에 있고 年次的으로 各市道 單位로 1個所씩 增設하여 未婚母의 生活安定과 自立을 圖謀하고자 하고 있다.³⁴⁾

韓國基督教養子會 未婚母 相談実績 (1970年以來 그 數는 每年 늘어나 1974年 現在 720名 相談)

㉔ 바람직한 서비스

ㄱ. 産前, 産後의 保護 (助産을 爲한 医療保護)

ㄴ. 財政的 援助 (出産保護를 爲한 學校教育, 앞으로의 職業計劃, 法的助言等의 社会的 保護)

ㄷ. 不安과 恐怖等의 感情의 해소 (心理的 相談)

以上の 機能을 할 수 있는 施設 (助産施設 未婚母 group home) 의 設置를 통해 助産, 医療, 教育 및 相談等 서비스를 주어 未婚母나 그 出生兒에 對한 保護를 위한 事業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⑦ 未婚母 對策의 現實的 問題點

㉔ 被保護者 費用負擔面

① 未婚母에 對해서는 現在 婦女保護指導所에 연락만 해 주면 市立病院에서 無料분만을 도와주고 간단한 治療까지 해주고 있으나 異狀분만이나 病이 있어 治療해 주어야 할 경우 費用負擔

註 34) 保健社会部, 保健社会行政의 実績과 展望, 1971, p.259

이 困難하다.

② 基督教養子회는 未婚母와의 相談을 통해 母가 養育할 수 없는 兒童은 入養시키고 분만비는 養子회에서 負擔해 주나 극빈자 證명이 있어야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㉔ 政府支援面

未婚母 保護施設 및 私生兒(棄兒)收容保護施設 運營에 必要予算이 不足하다.

㉕ 私生兒 不良兒, 非行兒 防止

未婚母 乳兒가 嬰兒院에서 자라 保育院에 收容된 兒童과 正常家庭의 孤兒가 함께 收容된 경우 前者가 愛情欠乏으로 인한 不良兒, 非行兒가 될 확률이 높다.

3) 低所得勤勞女性의 實態 및 問題點

가) 一般勤勞女性

① 概 要

長期經濟開發計劃으로 인한 産業發達은 女性勞動力의 需要에 있어서 每年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 3次 産業에서의 女性勤勞者의 增加는 刮目할만하다.

이와같은 女性의 就業增加는 社会的 諸問題를 수반함으로써 社会 病理現象을 予防 내지 治療해야할 課題를 提示하고 있다.

㉖ 女子經濟活動人口(表 12)(表 13)

우리나라 女子 14才以上 人口는 1976年 6月 現在

1,158 万 7 千名이며 이 가운데 經濟活動人口는 593 万 3 千名이다.

女性の 經濟活動 參加率은 51.2 %로 前年에 比하여 12.2 % 增加하였으며 農村이 22.4 %, 非農家 4.9 %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女性就業者數는 585 万 6 千名으로 全体 就學者 1,408 万 4 千名の 41.5 %에 達하고 있다.

㉔ 二, 三次 産業에서의 女性勤勞者の 增加 (表 14)

女性就業者를 産業別로 보면 1974 年 第一次産業 (農林水産業) 従事者 79 万 2 千名으로 26.3 %, 第二次産業 (鉱工業) 従事者 88 万 1 千名으로 29.2 %, 第三次産業 (社会間接資本 및 서어비스業) 従事者 134 万 2 千名으로 44.5 %로써 70 年度에 對比하면 一次産業 30.9 % 減少率을, 二次産業 17.0 %, 三次産業 13.9 %의 增加率을 보였다.

㉕ 従事上 地位別 女性就業者의 狀況 (表 15)

自營業主가 全体의 18.6 % 家族従事者가 51.4 % 雇傭者가 30.0 %로써 70 年度에 對比하면 自營業主 2.4 % 減少率을 보이고 家族従事者 1.1 %, 雇傭者 1.3 % 增加率을 보였다.

㉖ 年齡 階層別 分布狀況 (表 16)

18 才未滿이 65 万 2 千名으로 21.6 % 가장 많고 20 才 ~ 24 才 階層이 51 萬인 16.9 %로서 그 다음이다.

女性 勞働力の 大部分이 25 才 未滿階層에 집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年少女性勤勞者の 問題는 重大한 社会問題로 抬頭

되고 있다.

㉓ 全国 10人 以上 事業体에 從事하는 女性勤勞者の 産業別 分布는 (表 17) 製造業 分野에 가장 많아 82.7% 45万9千609 名을 占有하고 있으며 運輸倉庫 및 通信業 4.9%, 金融保險·不動産 및 用役業 4.0%, 社会 및 個人 서어비스業 3.5%의 順位

㉔ 女性勤勞者の 技能程度는 (表 18) 대체로 낮아 見習工이 24.9%, 半熟練工 24.6%, 熟練工이 23.8%로 많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며 技術者, 技術工은 0.1%, 0.4%밖에 안되어 技能勞動力의 不足現象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女性 技能工 養成이 시급하며 全産業分野에 걸친 職業訓練이 단계적으로 推進되어야 겠다.

㉕ 女性の 勤勞条件

賃金水準面에서 볼때 産業別 賃金水準은 (表 19) 가장 많 이 從事하는 製造業分野가 2万3,171 원으로 가장 낮은水準이고 職種別 賃金水準은 (表 20) 生産職 2万2,171 원, 서어비스職 2万 2,359 원으로 低賃金水準에 있으며 賃金階層別로 본 構成比는 (表 21-①) 2萬원 未滿이 40.2%, 3萬원 未滿이 34.8%로 거의 大部分이 低賃金狀態이다. (75年)

1974年 3月末 現在 月平均 賃金 17,493 원 (特別給与額 包含) 인데 前年에 비해 1,829 원 上昇되었으나 男性 勤勞者の 月平均 賃金 37,742 원의 半도 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賃金水準은 金融保險業에 從事하는 女性으로 40,929 원이며 가장 낮은 賃金水準은 製造業에 從事하는 女性으로 15,816

원이다.

女性勤勞者の 月平均勤勞時間은 214.3時間이며 月平均 勤勞日數는 25.3日로써 過重한 勞動時間에 処해 있다.

㉠ 配偶者 關係

	韓 国	日 本	美 国
未 婚	78 %	46 %	22 %
既 婚	19 %	43 %	63 %
離婚 또는 死別	3 %	11 %	15 %

資料：韓國의 女性人力 p.35, 人力開發研究所 1970.

婦人勞動의 實情, 勞動省婦人少年局, 昭和 46年
Hand book on women workers, p.24.

Women's Bureau Bulletin 294. U.S. Department
of Labor 1969.

㉡ 1976年末 現在 全國의 女性勞動組合員數는 19萬3,962
名으로 全體勤勞女性의 3.6%이고 全體 組合員에 對한 構成比는
30.2%이다.

㉢ 勤勞女性의 實態³⁵⁾

㉣ 勤務年數가 1年未滿 12%, 1年~3年未滿 30%, 3年~
5年未滿 23%, 5年~7年未滿 27%, 7年以上 9%로써 訓練된
女性勤勞力이 一定期間後면 死藏되고 있다.

註 35) 韓國勞動組合總聯盟 1976. 事業報告, p.268

㉑ 住居狀態는 自宅이 46% 親戚 또는 自炊 23%, 기숙사 30%로써 家庭의 保護外에 있는 數가 多數이다.

㉒ 賃金水準을 보면 月 5천원~1만원未滿 2%, 1万~1万5千 6%, 1万5千~2万 12%, 2万~3万 46%, 3万~5万 35%이며 日給制 52%, 都給制 2%, 月給制 46%로써 低賃金 水準이다.

㉓ 勤務時間은 8時間 41%, 9時間 11%, 10時間 48%이며 休暇는 週休가 있다. 78%, 없다 22%

月年次休暇있다 66%, 없다 34%, 生理休暇 36%로써 過重한 勞動을 하고 있다.

㉔ 作業現況은 그런대로 견딜만하다 57%, 너무 고달프다 27%, 통풍안되고 施設이 좋지 않다 16%로써 未來의 母體의 健康에 問題가 있다.

㉕ 勞使觀은 勞組와 會社의 協助가 잘되고 있다 78%, 잘되지 않는다 22%, 會社側의 態度가 民主的이다 36%, 官僚的이다 39%, 돈만안다 25%로 會社에 不滿足하다.

㉖ 勞組觀은 勞組가 惠沢이 많다 28%, 별로없다 16%, 勞組는 꼭 있어야 한다 52%, 없어도 상관없다 4%, 어려운 일이 생겼을때 勞組幹部와 議論한다 67%, 하지 않는다 33%, 勞組新聞읽는다 61%, 읽지않는다 19%, 보지도 못했다 12%로 勞組에 對한 認識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 權利意識도 向上되고 있다고 하겠다.

③ 問題点

㉓ 女性人力の 技能人力化問題

女性労働力の 専門化, 技能人力化는 80年代 輸出目標 達成을 위한 人力要素의 時代的 要請인 同時에 女性勤勞者 自身の 低賃金, 男女隔差, 雇傭不安感을 解消하고 女性勤勞者 地位向上에 直結되는 方案이나 女性에게 適合한 職種이 開發되어있지 않고 男子와 다른 特殊한 技能訓練을 시키고 있지 못해 單純勞務性에 머물러 있는 実態이다.

㉔ 女性勤勞者 意識面

・ 職業訓練을 통한 職場進出意識이 欠如되어 있고 職業에 對한 責任感과 持久力이 없어 職業意識이 稀薄하다.

㉕ 勤勞条件面

ㄱ. 低賃金, 過重한 勤勞時間은 職場에 對한 滿足感이 欠如되고 잦은 勞動移動을 초래하고 있고, 低賃金으로 都給制를 賛成하는 率이 높아 加算賃金を 取得키 爲한 延長勤勞로 健康을 害치고 있다.

ㄴ. 보다 높은 勤勞条件마련을 爲한 勤勞基準法에 準한 監督業務와 勞使協助를 통한 解決을 모색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女子監督官이 不足하다.

㉖ 制度的인 面 (法的保護)

勤勞基準法 保護規定에 對한 自身들의 認識度가 낮아 女子와 年少者 特別保護規定이나 有給生理 休暇制 時間外 또는 夜間

勤勞時에 保障받을 수 있는 加算賃金制의 存否自体를 알지 못하고 있다.

알고 있는 경우도 解雇對象이 됨으로 事實上 實行되지 않고 있는 率이 높다.

㉠ 女性勤勞者 保護에 對한 社會的인 責任問題

女性勤勞者 大部分이 20才 前後의 未婚女性이며 18才未滿이 21.6%나 되고 農村出身이 많아 父母와 떨어져 單獨으로 都市生活을 하고 있음으로 都市의 刺戟에 쌓여있어 淪落可能性이 크게 內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對해 精神的 肉體的으로 健康한 母性을 準備할 수 있는 方案이 未備하다.

企業側에서는 女性勞動力을 單純補助的 勞動力으로 취급하고 結婚 退職, 出産退職을 強制 또는 獎勵하는 傾向이 있어 強制解雇가 번번 하나 保護할 對策이 없다.

㉡ 福祉施設 및 生活上의 當面問題

福祉施設面

ㄱ. 住居環境: 食事關係, 衾寢 關係, 衛生施設關係의 不備에 對한 不滿

ㄴ. 作業環境不備

ㄷ. 醫務室, 相談室, 도서관, 敎養室, 休息室(오락실)等 不備가 問題点이며

生活當面問題로서는 가장 높은 教育熱에 對한 對策이 不足하고 家庭問題, 一身上의 고민에 對한 相談者(Counselor)가 不足하다.

<表 12>

女子經濟活動人口

(單位：1,000名)

(全 國)

	經濟活動人口	就業者	失業者	非經濟活動人口	經濟活動參加率(%)	就業率(%)	失業率(%)	14才以上人口	18時間未満 失業者(%)
1963	2,881	2,674	207	5,051	36.3	92.8	7.2	7,932	363
1965	3,051	2,884	167	5,300	36.5	94.5	5.5	8,351	320
1970	3,683	3,578	105	5,895	38.5	97.1	2.9	9,578	280
1971	3,819	3,695	124	6,100	38.5	96.8	3.2	9,919	279
1972	3,994	3,894	100	6,269	38.9	97.5	2.5	10,263	303
1973	4,314	4,216	98	6,267	40.8	97.7	2.3	10,581	241
1974	4,428	4,311	117	6,486	40.6	97.4	2.6	10,914	
1975	4,456	4,341	115	6,801	39.0	97.4	2.6	11,257	
1976.6	5,933	5,856	77	5,654	51.2	98.7	1.3	11,587	
1975	2,079	1,984	95	非農家 4,593	31.2	95.4	4.6		
1976.6	2,525	2,456	69	4,471 農村	36.1	97.3	2.7		
1975	2,377	2,357	20	2,208	51.8	99.2	0.8		
1976.6	3,408	3,400	8	1,183	74.2	99.8	0.2		

資料：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韓國統計月報 1976.10

<表 13>

70 - 75 女子 勤 労 者 数

姓 別 年 度 別	男	女	男子勤労者数の 70 年対比指数	女子勤労者の 70 年対比指数
70	676,384	363,228	100	100
71	748,413	397,466	110.6	109.4
72	756,600	434,690	111.9	119.7
73	846,379	547,914	125.1	150.8
74	909,774	584,240	134.5	160.8
75	951,735	586,808	140.7	161.6

労働廳

<表 14>

産 業 別 就 業 者 (女 子)

単位：1,000 名

	総 数	農 林 水 産 業	鉱 工 業	社会間接資本및 其他 서비스業
1963	2,674(100.0)	1,837 (68.7)	186 (7.5)	651 (24.3)
64	2,717 "	1,832 (67.4)	204 (7.5)	681 (25.1)
65	2,884 "	1,843 (63.9)	238 (8.3)	803 (27.8)
66	2,941 "	1,894 (64.4)	269 (9.1)	778 (26.5)
67	3,062 "	1,890 (61.7)	343 (11.2)	829 (27.1)
68	3,300 "	1,931 (58.5)	407 (12.3)	962 (29.2)
69	3,326 "	1,882 (56.6)	441 (13.3)	1,003 (30.1)
70	3,578 "	2,046 (57.2)	435 (12.2)	1,097 (30.6)
71	3,695 "	2,039 (55.2)	477 (12.9)	1,179 (31.9)
72	3,894 "	2,296 (59.0)	496 (12.7)	1,102 (28.3)
73	4,216 "	2,346 (55.7)	688 (16.3)	1,182 (28.0)
74	3,015 "	792 (26.3)	881 (29.2)	1,342 (44.5)

韓国労働統計年鑑 1975. 労働庁

＜表 15＞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女子)

単位：1,000名

	계	자영업주	가족종사자	상용고	임시고	일 Daily Workers
1968	3,300	631	1,774	382	191	322
69	3,326	597	1,748	480	192	309
70	3,578	753 (21.0)	1,800 (50.3)	499	203	323 (28.7)
71	3,695	768 (20.7)	1,867 (50.5)	498	215	347
72	3,894	811	2,009	504	259	311
73	4,216	951	2,090	489	365	321
74	4,311	964	2,113	551	384	299
75	4,341	970	2,084	590	404	293
76.6	5,856 (100.0)	1,092 (18.6%)	3,012 (51.4)	729 (12.6)	452	571

經 済 企 劃 院

<表 16>

年 齡 階 層 別 就 業 者 (女 子)

(單位 : 千 名)

	總 數	14 歲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才以上
1963	2,674	40	378	397	332	330	279	298	235	183	108	94
65	2,884	45	453	393	330	318	349	325	259	183	133	96
70	3,578	65	619	485	332	415	417	383	326	224	164	148
71	3,695	54	578	511	305	435	466	393	339	252	181	181
72	3,894	93	653	474	326	443	474	421	366	281	184	179
73	4,216	106	720	522	341	451	514	448	394	302	199	219
74	3,015	59	593	510	247	271	354	319	274	195	103	90
74 (農 家)	1,175	25	185	148	76	95	153	142	133	111	57	50
74 (非 農 家)	1,840	34	408	362	171	176	201	177	141	84	46	40

資料 : 經濟企劃院

<表17>

産業別 規模別 女子勤労者数

(単位：名)

	総数	10～15	16～29	30～49	50～99	100～199	200～499	500～999	1,000 이상
総計	555,436 (100.0)	39,622 (7.1)	28,891 (5.2)	33,617 (6.1)	59,143 (10.6)	69,027 (12.4)	113,685 (20.5)	70,121 (12.6)	141,330 (25.4)
農林水産業	3,870 (0.7)	430	212	801	124	83	258	-	1,962
鉱業 및 採鉱業	1,934 (0.3)	155	67	84	154	275	406	213	580
製造業	459,609 (82.7)	27,024	19,685	21,696	44,718	53,638	92,681	62,596	137,571
電気, 가스, 水道事業	532	9	27	11	126	126	153	80	-
建設業	3,828 (0.7)	528	272	229	512	413	443	21	1,410
都小売飲食宿泊業	18,531 (3.3)	7,472	3,290	2,163	2,211	1,203	930	1,262	-
運輸, 倉庫, 通信業	27,264 (4.9)	372	452	1,272	2,378	6,541	13,602	2,478	164
金融, 保険, 不動産 및 役業	22,233 (4.0)	1,133	2,789	4,737	5,272	3,539	1,582	1,621	1,560
社会 및 個人 서비스 業	19,606 (3.5)	2,499	2,097	2,624	3,648	3,204	3,630	1,850	54

資料；労働部事業体労働実態調査報告書(1973)

< 表 18 > 産業別 技能程度別 女性勤勞者 現況 (10 人 以上 全国)

(1973 年 4 月 現在)

産 業 別	기 능 정 도 별 計	技 術 者	技 術 工	공 인 기 능	熟 練 工	半 熟 練 工	見 習 工	事務其他	일용근로자	부급가족종사자
總 計	557,407 (100.0%)	434 (0.1%)	2,483 (0.4%)	1,735 (0.3%)	132,826 (23.8%)	136,902 (24.6%)	138,854 (24.9%)	122,897 (22.1%)	20,074 (3.6%)	1,202 (0.2%)
농업, 임업, 수림업 및 수산업	3,870	-	-	-	68	5	85	924	2,780	8
광업 및 채석업	1,934	-	6	10	69	172	84	970	606	17
제 조 업	459,609	345	2,268	1,686	131,201	135,485	136,597	38,366	12,882	77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32	-	4	2	19	-	5	457	44	1
전 설 업	3,828	-	-	3	-	5	154	1,514	2,148	4
도,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18,531	-	7	7	237	365	180	16,670	770	295
운수창고업 및 통신업	27,264	12	18	2	518	529	1,251	24,587	335	12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	22,233	-	15	12	296	25	339	21,245	290	1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609	77	165	13	418	316	159	18,164	219	75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1973. 노동청

(表 20) 직종별 여성근로자 임금

職 種 別 / 年 度 別	7 4	7 5
전 작 종	20,790	25,465
전문기술관련직	39,200	63,137
행정 및 관련직	44,429	81,866
사무관련직	29,184	38,257
판매직	24,553	27,942
서어바즈직	17,728	22,359
농·축산임업수렵업	14,882	20,311
생산직	18,213	22,171

(表 19) 산업별 여성근로자 임금

職 種 別 / 年 度 別	7 4	7 5
전 산 업	20,790	25,465
농업 임업 수렵업 수산업	16,268	17,206
광업 및 채석업	22,641	30,171
제조업	19,010	23,17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7,577	47,821
건설업	23,941	33,668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22,746	31,429
운수창고 및 통신업	22,888	25,894
금융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35,938	51,761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37,966	48,339

(表 21-①) 賃金階層別 勤勞者数 (女 3)

年度 賃金階層	71	72	73	74	75
總 数	309,005(100.0)	400,501(100.0)	495,266(100.0)	534,166(100.0)	548,558(100.0)
20,000 圓未満	277,174(89.7)	334,260(88.4)	401,440(81.0)	304,424(57.0)	220,726(40.2)
20,000 - 29,999	20,444(6.6)	31,312(7.8)	60,898(12.3)	162,641(30.4)	190,616(34.8)
30,000 - 39,999	7,619(2.5)	8,397(2.1)	19,248(3.9)	37,647(7.0)	82,961(15.1)
40,000 - 49,999	2,112(0.7)	3,385(0.9)	8,235(1.7)	16,861(3.2)	22,407(4.1)
50,000 - 69,999	1,003(0.3)	2,208(0.6)	4,016(0.8)	8,881(1.6)	19,319(3.5)
70,000 圓以上	653(0.2)	939(0.2)	1,629(0.3)	4,012(0.8)	12,529(2.3)

資 料 ; 労働廳

(表 21-②) 年齢階層別 賃金階層別女子勤勞者数 (1974.4.)

(単位 ; 名)

規 模 別 賃金階層別	總数	13 歳 未 満	14-17	18-19	20-29	30-39	40-49	50 歳 以 上
總 数	175,171	1,502	12,608	46,855	99,538	9,441	4,596	630
0 - 9,999	15,831	102	3,723	6,410	4,441	744	393	18
10,000 - 19,999	92,594	788	7,564	30,715	46,256	4,753	2,219	299
20,000 - 29,999	46,137	612	1,242	8,347	33,135	1,744	943	114
30,000 - 39,999	12,318	-	79	1,275	9,962	665	314	23
40,000 - 49,999	4,314	-	-	74	3,623	473	118	26
50,000 - 59,999	2,038	-	-	29	1,450	426	109	24
60,000 - 69,999	792	-	-	-	378	289	104	15
70,000 - 100,000	783	-	-	-	233	261	238	51
100,000 - 以上	364	-	-	-	60	86	158	60

資料 ; 労働廳 韓國労働統計年鑑 1975

나. 勤勞靑少女

① 靑少年의 特徵

Landis는 靑少年을 12~16歲까지를 思春期로 17~24歲까지를 靑春期로 区分하였으며^{註 36)} L.S.Hollingworth는 心理的 離乳現象 (Psychological Weaning) 을 보이는 時期라고 하고 있어 대체로 靑少年은 兒童과 成人의 中間으로써 過渡期 (Transitionage) 激動期 또는 第二의 不定期 (Negative Phase), 第二의 誕生 (Second Naissance) 이라고 할 수 있어 G.S.Hall은 이 時期를 疾風怒濤의 時期 (Storm and Stress Peried) 라고指摘하고 不安, 恐怖, 虛無感, 反抗, 挫折感, 權威에의 排戰 既存秩序에의 抵抗等이 나타나며 孤獨, 白日夢, 獨白等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한다.^{註 37)}

L.Cole은 靑少年의 発達課業을 家庭으로 부터 獨立, 身體的 成長, 異性에 對한 興味의 確立, 社會的인 成熟, 知的, 情緒的成熟, 經濟的 獨立의 始作, 人生觀의 確立이라고^{註 38)}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靑少年은 身體的, 生理的變化를 일으키며 好奇心이 왕성하고 否定的 態度를 가지며 自我를 確立코저 하며 情緒的으로 不安하고 社會的認識에 對한 欲求가 생기는 時期的인 特徵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 特徵은 社會不適応狀態에서 心理的 葛藤을 일으키며 이의 解消를 爲해서는 基本的 欲求가 充足되어야 한다.

註 36) 文善, 金承國, 靑年発達, 서울; 載東文化社 1970. PP-13-20

37) 金龍來, 教育心理 서울; 教育評論社 1973. PP40-41

38) L.Col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Rinhart 1958. PP52-73

② 青少年期の 女性勤勞者の 特徴

㉑ 家庭的, 經濟的 与件未備로 教育機會를 喪失하여 教育的 成就感이 強하다.

㉒ 家庭經濟의 過重한 責任負擔으로 經濟的 強迫感에 쌓여있다.

㉓ 過重한 勞動時間, 厚生施設, 福祉施設 未備로 自我確立의 欲求가 挫折당 하고 있다.

㉔ 勤勞條件不當性, 人間關係欠乏, 人格無視, 收入不足, 教育不足 등으로 因해 心理的으로 억압되고 있다.

㉕ 現實否定, 生에 對한 懷疑感, 自己否定으로 社會問題要因을 지니고 있다.

③ 年少女性勤勞者實態

㉑ 規模, 1974年現在 65萬2千名으로 全体 女性勤勞者の 21.6%나 되고 있다. 註 39)

㉒ 一般的特性

a. 年令分布는 13歲 3.8%, 14歲 5.6%, 15歲 22.0%
16歲 39.3%, 17歲 29.3%로 16~17歲 多數이나
15歲未滿이 31.4%되고 있어 注目된다.

b. 出生地 및 成長地는 大都市 18.2%, 中少都市 33.6%,
農漁村 46.4%, 無回答 1.8%로 農漁村에서 無作定家出

註 39) 서울特別市와 城南市에 所在한 16人以上 雇傭하는 業体中에서 21個製造業体를 任意로 標集選定하고 그곳에 勤務하는 13歲~18歲未滿의 勤勞青少年(男483名, 女532名)을 對象으로 1975.10.1~10.15統計處理한 研究資料「勤勞青少年의 意識構造에 關한 研究」鄭潤植, 에 依拠하여 女性回答 중심으로 參考함.

하거나 生活難으로 父母許諾을 얻어 上京, 혼자서 都市
生活을 하고있다.

- c. 家族背景으로 父母의 生存与否는 父母生存 74.6 %, 父死
亡 15.9 %, 母死亡 4.6 %, 父母死亡 4.9 %로써 母子家庭
의 子가 家出率이 높다. 父母職業은 農業이 41.6 %,
품팔이, 行商이 17.3 %順位이다.

家族數는 平均 6~7 名으로 保社部 統計年報 1974 보다
1~2 名 더 많다.

- d. 學歷은 國卒이 38.1 %, 中學卒 35.6, 中中退 12.0 %
로써 生活苦로 就學不可能하여 職場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 e. 就業始作年令은 15歲 35.1 %, 16歲 24.6 %, 14歲
19.9 %, 13歲 14.6 %의 順이다. 動機는 家族生計費
補助爲해 50.4 %, 学校教育 및 技術배우기 爲해 26.5 %, 自立爲해
16.5 %, 집안일싫증, 家庭不和로 家出해서 3.3%
順位이다.

就業年數는 1年未滿 41.2 %, 1~3年 53.7 %, 3年以上
4.2 %이다.

- f. 住居形態는 自家 56.2 %, 寄宿舍 22.9 %, 자취 13.9 %
下宿 0.4 %, 親戚親旧 6.4 %로 家庭保護를 받지 못하는
靑少年期가 問題이다.

- g. 勤勞條件은 時間外 作業 가끔한다 49.8 %, 자주한다 25.7 %나 되고 夜間作業 가끔한다 27.1 %, 자주한다 8.6 %나 되고 있어 勤勞基準法 § 55, § 56 는 現實的으로 實効를 얻지 못하고 있다.
- 1日 勤務時間은 11時間以上 16.8 %, 11時間 10.7 %, 10時間 25.6 %, 9時間 20.6 %, 8時間 21.4 로써 過勞하고 있으며 定期休日없다 2.6 %, 月 1回 2.4 %, 10日 1回 2.4 %, 2週 1回 28.9 %, 週 1回 62.6이다.
- h. 現在生活에서의 問題点 (女子는 向学 男子는 名譽心에 比率이 높다.)

(表 22 - ①) 勤勞靑少年 現在生活에서의 問題点

	男	女
生 計 維 持	7.1	4.5
教 育 問 題	16.7	25.3
健 康	10.3	13.5
家 庭 問 題	14.9	22.0
將 來 問 題	34.8	22.0
異 性 問 題	1.1	1.9
職 場 問 題	5.9	4.7

1. 所 願

表 22 - ② 勤勞青少年 現在所願

	男	女
보람있는일 (名譽)	40.5	25.7
充分한 教育機會	15.3	29.2
國家社會에 對한 奉仕	10.1	10.7
잘 모르겠다.	7.8	2.3
金錢이나 地位	11.0	6.6

j. 作業環境 나쁜편 24.7 %, 그저그렇다 48.2 %, 아주나쁘다 10.5 %, 좋은편이다 14.4 %, 아주좋다 0.9 %

健康狀態는 나빠졌다 33.8 %, 그저그렇다 32.8 %, 많이 나빠졌다 8.3 %.

k. 職場에 對한 滿足度 不滿 36.9 %, 아주不滿 4.9 %

不滿理由 低賃金 26.5 %, 勞動時間 24.7 %, 人間關係 11.2 %, 作業環境 12.6 %, 作業量 7.6 %, 福祉施設 4.9 %

1. 企業主觀 (一般勤勞者와 對比) (表 22 - ③)

	自己利益도勤勞者 利益도 取한다.	勤勞者為하는 좋은사람	自己利益만生覺 하는 나쁜사람	모르겠다
男	47.8	17.8	8.2	26.2
女	46.2	16.7	7.1	30.0
一般勤勞者 註 40)	68.47	6.84	21.30	3.40

註 40) 一般成人勤勞者 意識調查報告書 高大勞動問題研究所 1972.
P151

m. 性關心度는 異性問題 苦悶있다. 18.5 %

異性交際 經驗있다. 16 %, 하고있다. 10.1 %, 異性交際者의 住居形態는 자취 34.7 %, 寄宿舍 26.9 %, 親旧, 親戚집 11.4 %, 下宿 8.5 %, 自家 19.5 %로 되어있다.

婚前性關係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性經驗있다.

8.8 %, 性經驗相對者로 10.6 %가 工場管理 및 監督者임이 注目된다.

④ 問題点

㉑ 年少勞動力

身體的 發育時期이며 (17才) 人格形成의 時期일뿐 아니라 中等過程履修時期인 年少女性就業 過多는 經濟發展의 勞動力活用面이나 女性人力의 活用面에 問題가 있으며 未來의 健康한 國民育成에 더욱 큰 問題가 있다.

㉒ 社會問題要因에 對한 責任

a. 農村出身으로 都市生活을 家族과 別居하는 數가 大部分이라 이들의 自由放任의 生活環境, 家族과의 紐帶貧困, 精神的 孤獨感 靑少年期 家庭教育 缺乏으로 非行少女 및 年少未婚母가 될 수 있는 問題因子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對한 社會人의 關心度가 低潮하다.

㉓ 特別保護面

年少女의 零細企業從事率이 높아 零細企業의 作業環境不備로 健康惡化되고 있으며 特別保護法의 惠沢을 받지 못하고 있다.

作業環境改善, 福祉施設, 厚生施設完備, 定期的 健康診断実施, 災害, 疾病, 失職時 給食, 宿所提供等 福祉制度가 実施되고 있지 못하다.

底賃金, 労働時間限界가 없어 過重労働에 從事하고 있으나 勤勞監督이 철저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勤勞基準法이 履行되지 않고 있다.

보다 높은 向學熱에 對한 教育欲求充足을 爲한 事業場內 教育施設完備(一般 및 技術教育) 公共職業訓練所 設置等이 되고 있지 못하다.

4) 社會問題 背出可能 集團 要保護女性實態 및 問題點

가) 工業團地 勤勞女性

① 工團地域別 實態現況(表 23 - ①②)

全國 12 個 工團 762 業체에 從事하는 女性勤勞者는 年少女性勤勞者 1 萬 940 名을 合해 9 萬 5,642 名이 있고 寄宿舍施設事業場數 254 個이며 診療所設置數 7 個이다. 全 女性就業者의 0.01%이며 工團內 女性勤勞者에 對한 年少層의 比率은 0.1%이다.

② 工團女性勤勞者 實態^{註 41)}

㉑ 一般의 特性

a. 年令分布는 18 ~ 23 才 73.1%나 되고 年少層이 14.1%, 27 才 以上은 겨우 3.7%로 製造業從事者 中은 年令幅을 보여준다.

就業年令은 16 ~ 19 才이고 3 ~ 5 年間 勤勞하다 熟練

註 41) 勞動部, 女性勤勞者態調查報告書 1974.

· 工의 軌道에 올랐을 때 結婚하므로 25才 以上이 減少된다.

配偶關係는 未婚이 93.7 %로 既婚者들에 就業의 門 좁다.

b. 業種에 따라 教育水準이 다르다. 電氣製品 55.5 % 高卒以上, 纖維製造 76.8 % 中卒 以下이다. 거의가 單純勞務從事者들이라 最頻的으로 나타나는 水準은 中卒이고 구미공단은 未婚 50 %以上 高卒이 特徵이다. 工団外 地域보다 教育水準이 높다.

c. 工団地域別 出身成長地 分布는 구미공단이 全体の 55.3 %가 農漁村出身이고, 九老工団이 그 다음으로 農漁村出身이 51 %나 된다.

d. 家族的 背景으로 父母있는 正常家庭 72 %, 偏母 17.8 %, 偏父 2.3 % 父死亡 2.3 %로 家族의 生計를 爲해 職業戰線에 나왔음을 알 수 있고 家業은 出身成長地와 같다 農民, 無職 零細 商人이 大部分이다. 兄弟數는 本人을 包含 5名以上 兄弟 76 % 程度로 家族紋가 많은 家庭에서 工団에 從事者가 많은 셈이다.

e. 住居形態는 寄宿舍 27 %, 自炊 23 %, 親戚 10 %, 自家 40 %, 約 60 % 未婚女性이 父母를 떠나 있는 셈이다.

富平, 九老工団地는 寄宿舍 53.6 %, 49 %이다.

f. 就業期間이 짧은 理由는 職業觀이 定立되어 있지 못해

短期的이고 一時的인 性格을 띄는 同時에 流動性도 높다. 勤続期間도 短期的이며 長期勤続者는 纖維製造業이 18%로 나타나고 있다.

- g. 就業動機가 經濟的 理由 70% (家族生計돕기 30.8%, 社会經驗 22.6%, 技術習得 15.8%) 都市憧憬 0.4%, 家事 싫증 1.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勤勞女性들의 健全性을 보여 준다. 教育程度別就業動機는 教育程度가 낮을 수록 家族生計覺補助가 많고 教育水準이 높아 질 수록 社会經驗 쌓기 爲함이 많다. (中卒以下 家族生計補助 36.1%, 高卒以上 社会經驗 48.7%) 各級學校의 卒業者보다는 中退者들에서 向學熱이 높다. (中退 24.1%, 中卒 14.4% 高退 26.1%, 高卒 5.7%)

㉞ 勤勞條件

- a. 勤勞條件 認知度는 教育水準과 比例한다.
- b. 賃金水準은 平均値가 18,637 원 (1973.5 平均賃金 13,333 원 으로 年間上昇率 39.8%) 으로 ^{註42)} 74.年 3月 現在 女子製造業體從事者 平均賃金 16,240 원을 100 으로 하면 14.8% 높으며 全 産業 女子勤勞者 平均賃金인 17,840 원을 100 으로 하였을때. 4.5% 높은 賃金이다.

또한 1974 年 1/4 分期 都市勤勞者家口當 (家口當 人員

註 42) 勞動廳 每月 勞動統計調査 報告書

1974.3. 女子製造業體從事勤勞者 (10人以上) 의 平均賃金

5.26人, 家口当 就業人員 1.29人) 月平均消費 支出總額이 45,480원 이므로 平均賃金 18,637 원은 都市 勤勞者 5.2人 家族中에서 2.2人이 먹고 살 수 있는 程度의 金額이다.

工団地域別로 平均賃金 差를 보면 馬山, 龜尾, 富平, 九老工団順位이고, 業種別로 보면 假髮製造業, 電子製品 높고 纖維製造業이 낮다.

規模別로 보면 50~100人 未滿 業체가 높고 50人 未滿業체 낮다.

年令別로 보면 正比例關係에 있어 年令높을 수록 賃金額 많아지고 있다. 30才 以上에서 다시 下落(再就業 경우일 것임) 하고 있다. 教育程度別 學歷과 賃金도 正比例關係, 中退者는 卒業者에 비해 낮다.

就業年數別로 正比例하고 現工場 勤続年數別로 正比例한다.

c. 賃金支払形態

日給制 56.1%, 月給制 28.8%, 都給制 7.5%, 賃金支払形態中 가장 바람직한 月給制가 要望된다.

d. 月收入利用은 生計補助 38.5%, 貯蓄 35.6%, 生活費 19.9%.

e. 勤勞時間은 8時間 40%, 10時間以上 22.6%, 8~10時間未滿 10.9%, 法定基準勤勞時間 超過者 33.5%.

f. 休暇는 週 1 回 80 %, 月 3 回 5.6 %, 月 2 回 10.6 %, 月 1 回
가 1.2 % 法上의 週休制 잘 지켜지고 있다.

(㉔) 労働移動

賃金關係理由로 移動率 높다.

就業經路가 學校推薦 10.4 %, 職業案内所 8 %, 募集廣告 7.9 %, 親戚
및 親旧紹介 65.4 %가 注目된다.

(㉕) 法的保護實施態認知程度

(表 24.) 具體的인 保護規定에 對한 認知度

保 護 規 定	條 項	안 다		모 든 다	
		実 數	%	実 數	%
解 雇 豫 告	第 27 條 2	238	49.1	245	50.9
退 職 金 制 度	第 28 條	332	68.7	151	31.3
休 憩 時 間	第 44 條	284	58.8	199	41.2
有 給 休 日 (週 當)	第 45 條	371	76.8	112	23.2
時間外 夜間, 休日勤勞에 對한 通常賃金의 50 % 加算支給	第 46 條	355	73.5	128	26.5
年 次 有 給 休 暇	第 48 條	256	53.0	227	47.0
年 少 者 証 明 書 備 置	第 52 條	330	68.3	153	31.7
16 才 未 滿 者 의 勤 勞 時 間	第 55 條	188	38.9	295	61.1
18 才 以 上 女 子 의 時 間 外 勤 務	第 57 條	180	37.3	303	62.7
有 給 生 理 休 暇	第 59 條	330	68.3	153	31.7
產 前 產 後 休 暇	第 60 條	194	40.0	339	60.0
常時 30 人 以 上 의 18 才 未 滿 者 에 對 한 教 育 施 設	第 63 條	108	22.4	375	77.6

勤勞基準法上에 明示되어 있는 諸規定中 女性勤勞者들이 一般的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어진 權利 즉 具體的인 保險規定 12個項目을 項目別로 그에 對한 認知度를 表 24에 依하여 살펴보면,

調査對象者들의 女子와 少年勤勞者(18歲未滿)를 爲한 特別保護規定에 對한 認知度가 一般保護條項에 對한 認知度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注目된다.

女性勤勞者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保護規定은 勤勞基準法 第四章 第四十五條 週休制에 關한 事項으로 全体回答者의 76.8%가 알고 있었으며 다음이 第四十六條인 時間外・夜間 및 休日勤勞에 對한 通常賃金の 50/100以上 加算支給으로 73.5%가 알고 있다고 回答, 가장 낮은 것은 63條의 77.6% 모른다는 것이다.

㉠ 意識構造

a. 職場満足度는 23.4% 満足, 24.6% 不滿, 賃金關係不滿

41.2%, 人間關係不滿 26.1%, 勤勞時間不滿 11.8%,

福祉厚生施設不滿 3.4%.

b. 希望職場에서 26.3%가 職場安定性, 人格尊重 25.8%,

높은報酬 8.9%, 適性 및 能力發揮 26.3%.

c. 管理者 및 企業主에 對해 満足 26.7%, 不滿 16.6%,

그저그렇다 56.3%.

d. 政府가 勤勞者의 生活向上을 爲해 最善을 다하고 있다는

肯定的反應 81.2%, 否定 10.6%.

e. 生活態度가 健全하다. 熱心히 努力 60.2%. 適當히 즐기

고 努力 20.3 %, 現在를 즐긴다 9.9 %, 運命에 맡긴다 8.7 %.

f. 將來希望

賢母良妻 46.6 %, 女性指導者 14.1 %, 돈을 모아 自立 13 %,

國家에 도움 12.2 %, 工夫繼續 7.0 %.

㉑ 福祉施設 및 生活上의 當面問題

a. 寄宿舍生活 滿足 31.5 %, 不滿 19.2 %, 不滿理由 食事 44 %,

침실 20 %, 衛生施設不備 23 %, 規律嚴해 不自由 順.

b. 工場의 作業環境은 나쁘다 30 %, 좋다 26.9 %, 그저 그렇다

42.4 %, 福祉施設希望은 教育施設 37.7 %, 更衣室 및

세면 욕목시설 15.9 %, 圖書室 9.1 %, 寄宿舍 8 %, 休憩室

및 娛樂運動器具 8 %, 作業場環境改善 8 %.

e. 生活上 當面問題로 苦悶있다 76.2 %.

苦悶種類로 教育問題 34.5 %, 家庭問題 25.5 %, 自身の 將

來問題 15.8 %, 自身の 生計維持問題 8.7 %.

나) 問題點

① 集團構造面

㉒ 靑少女 및 結婚適令期 未婚女性의 過多集中에 따른 教養, 風紀善導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㉓ 相互感染하기 쉬운 意識構造의 不健全性의 是正案과 餘暇善用을 爲한 制度의 講究가 되어야 한다.

㉔ 團地內의 競争心에서 오는 過度한 消費風潮를 抑制하고 貯蓄獎勵를 爲한 特殊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勞動力의 能率面

賃金 및 会社処遇에 따른 理由와 勤勞女性 自身の 職業觀이 定立되어 있지 못한 理由로 勞動力이 短期的이고 一時的性格을 띄워 流動性이 높다.

그러므로 熟練工養成과 能率的인 生産性提高에 遜跌을 가져오므로 同一 園地內에 勞動力 定着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福祉面

㉔ 寄宿舍, 舍宅等 住居環境 및 作業環境의 不良으로 母性이 될 女性들의 保健衛生과 疾病對策이 未洽하다.

㉕ 教育施設, 圖書室, 休憩室, 更衣室, 娛樂室等의 福祉施設이 設置되어야 한다.

④ 教育面

勞動力의 專門化를 위한 職業訓練教育施設이 要求되고 人格形成, 社會適應等의 一般敎養 教育이 必要함으로 講義 또는 文化映画等의 敎育施設과 그 適切한 施行이 要請된다고 보겠다.

工 団 地 域 別 実 態 現 況

<表 23 - ①>

工 団 名	工 団 面 積 坪	入 住 事 業 體 数	勤 勞 者 数						寄 宿 舍 施 設 事 業 場 数	勤 勞 者	棟 数	坪 数	収 容 可 能 人 員	現 収 容 人 員	街 路 燈 設 置 数	防 犯 隊 員 配 置 数	診 療 所 設 置 数	通 勤 車 輛 数		通 行 車 道 路 線	備 考
			計	男	女	年 少 者		車 輛 保 有 事 業 體 数										保 有 数			
						男	女														
1 大邱工団	331,000	72	5,542	2,623	2,728	66	125	1	112	1	150	40	45	47	4	4	7	7	4	6 団地除外	
2 春川工団	240,499	20	33,166	981	1,727	40	413	8	2,011	9	753	633	497	128	12	・	・	・	・		
3 清州工団	224,082	27	4,042	1,697	2,345			15	9,844	17	8,561	4,474	1,805		4	・	3	5	・		
4 九老工団	595,000	186	55,277	15,401	36,692	534	2,600	103	34,407	133	17,763	18,922	16,330	44	12	3	38	68	4		
5 城南工団	483,881	75	15,139	7,808	6,855	75	191			11				34	10	・	13	17	3		
6 馬山自由 地域工団	518,599	96	22,618	5,333	15,673	67	1,545							172	28	1	2	2	・		
7 龜尾工団	3,185,000	59	12,923	3,869	4,005	307	4,742	39	8,956	45	2,131 ^{.15}	4,983	2,593	118	10	1	19	53	4		
8 全州工団	401,469	31	4,730	2,022	2,482	38	188	16	3,676	16	3,320 ^{.15}	1,546	832	132	6	・	2	4	1		
9 大田工団	145,000	37	3,666	2,105	1,394	55	112	3	1,020	3	370	370	309	42	2	・	2	2			
10 光州工団	435,000	32	2,061	1,367	595	75	24	10	481	12	252	256	156	45	6	・	・	・	3		
11 富平工団	411,600	120	28,675	8,576	19,326	29	744	44	19,266	55 3	3,043	11,074	8,127	124	13	2	20	26	4		
12 裡里工団	431,000	7	2,579	701	1,810	9	59	3	821		253	204	146	235	10	・	6	6	6		
1 総 計	7,402,109	762	68,418	58,483		1,345	10,943	254	69,841	769	1,279	44,077	323,230	1,191	117	7	112	190	29		

表 23 - ②

工 団 名	施設 및 團體 名	所 在 地	建 物 坪 数	프 로 그 램 및 施設 内 容	備 考
구 로 공 단	공 설 운 동 장	영 등 포 구 가 리 봉 동 3 단 지 내	4,000 坪		
	출 장	"	1,800 坪		
마 산 자 유 지 역 공 단	여 성 회 관	마 산 시 산 호 동 1 가 99-1	480 坪	기숙사, 婦女相談所, 양재, 편물, 교양강좌	
	적 십 자 봉 사 단	마 산 시 양 덕 동 410-23	70 坪	婦女相談所, 교양강좌 (꽃꽂이, 도서대여등), 도서실, 오락시설 (재봉, 바둑등)	
		마 산 시 수 성 동 5-2	50 坪	相談所, 양재, 도서실, 中等學校과정 (3年間) 을 거쳐 고등검정고시 자격을 치루게 함.	
	카 토 립 여 성 회 관	마 산 시 석 전 동 224-7	477 坪	相談所, 강당시설 (예식장, 강연회등), 도서실, 가사실, 가사실습실, 의무실, 교양강좌, 오락실 (탁구대, 바둑, 실등)	의무실에서는 응급처리와 直接診察을 받을 수 있 게 施設道具가 準備되어 있음.
	새 마 을 도 장	마 산 시 양 덕 동 975	538 坪	강당시설, 교양강좌, 강연회 (영화관람등)	
	사 단 법 인 청 주 공 장 단 지 협 의 회	청 주 시 북 대 동 108	236 坪	회의실, 휴게소, 다방, 식당, 은행	

나) 버 - ㅅ案內員의 實態 및 問題點

① 實態 註43)

〈対象規模〉 2萬3千169名 註44)

㉔ 一般의 特性

- ㄱ. 出身地와 就業地가 同一한 比率은 28.6%, 大多數가 相異한 困難을 감수하고 있고 50%程度는 農村出身이다. 註45)
- ㄴ. 年令分布는 18才未滿이 11.5%이고 18才~24才未滿 33.4%이며 結婚關係는 未婚이 97.1%이다.
- ㄷ. 教育程度는 國卒 33.8%, 中中退 33.8%, 中卒 25.9%로 中卒 以下가 93.5%이다.

(表 25) 버 - ㅅ案內員賃金 現況

76.6.30. 現在

基準內賃金	基準外賃金		週法定 基準勤勞時間	月勤勞日數	日平均 實勤勞時間
	초과급여	特別給与			
24,944	6,007	1,503	48	21.89	12.7

韓國勞動組合總聯盟 1976 事業報告

- ㄹ. 就業年數는 1年~3年未滿 42.4%로 가장 많고 5年未滿이 87%로 5年以上 就業者는 거의 없다.
- 勤續年數는 6個月未滿이 30.2% 가장 많고 2年未滿이

註 43) 勞動廳 女性勤勞者實態調查報告書 (製造, 運輸業體中心). 1973.

44) 韓國勞動組合總聯盟 1976 事業報告 76.6.30 現在.

45) 勤勞女性의 勞動力保存 및 活用に 關한 研究 P 11 參照.

서울大學校行定大學園附設 行政調查研究所 1972.

71.2 %다.

□. 就業經路는 工場에 다니는 親旧召介 32.4 %, 親旧, 親知 召介 33.1 %로 緣故主義 採用이나 20.1 %가 公採制度를 通해 就業한 것이 注目된다.

㉔ 勤勞條件

ㄱ. 賃金水準은 1萬2千원~2萬원未滿이 66.2 %로 가장 많고 2萬원 以上이 20.9 %로 低賃金이다. (表 26) 賃金 使用方法是 家族의 生計에 보탠다. 33.8 %, 貯蓄 27.0 %, 나혼자 生計費에 쓰인다 11.4 %이며 受領方法은 72.7 %가 月給制이며 16.5 %가 日給制이다.

賃金滯払되지 않고 제날짜에 支払되고 있음이 94.0 %.

(表 26) 運輸業体従事者 賃金分布

8,000 원 未滿	8,000 以上 12,000 未滿	12,000 以上 20,000 未滿	20,000 이상	無応答
1.4	10.8	66.2	20.9	0.7

労働廳 女性勤勞者 実態調査報告書 1973.

ㄴ. 勤勞時間은 15時間 以上 41.6 %로 가장 많고, 11~15 時間이 64.7 %나 되는 長時間勤勞者다.

2日勤務 1日休務制, 隔日勤務制 勤務에 따른 外出關係는 外出 못하는 理由가 피곤, 充分한 睡眠 30.8%, 빨래등 밀린일 41.8 %, 寄宿舍 또는 車主집에 寄居하는 자의 5 %가

事業主의 監督때문에 外出못한다고 한다.

ㄷ. 正當한 理由없이 解雇當했다가 51%나 된다.

㉔ 福祉施設

ㄱ. 住居形態는 勤勞時間과 業務의 特殊性等으로 寄宿舍, 車主
집等 集團住居形態가 61%이며 自家 16%, 親戚집, 自炊
等 個別 住居形態가 合해 30%이며, 市外버스 勤勞者는 終
着駅旅館, 特定宿所를 利用한다.

ㄴ. 福祉施設의 要求는 娛樂室 15%, 圖書室 13%, 相談室 13%
목욕실 10%, 寄宿舍 9%.

ㄷ. 病院施設도 婦人科 33.8%, 皮膚科 5.8%, X선과 7.2%,
내과 15.8% 長時間 승차에 依한 진痛으로 子宮 위치
異狀, 月經不順 訴率 높다.

運輸業體勤勞者는 ^{註46)}就業後의 月經週期, 月經量, 月經痛에
있어서 他業種 從事者보다 變化가 심하고 變化期間도
달라 1~2年사이에 나타난다. 또한 CMI (Cornell
Medical Index) 項目에 女子 비뇨기, 생식기 계통항목을
添附한 質問紙에 의한 調査에서도 運輸業體勤勞者中 비뇨
기, 생식기 계통에 對한 訴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ㄹ. 敎育講座는 28才未滿까지가 希望 88%, 16才未滿 100%,
28才以上 65%, 內容은 禮法, 生理 19%, 料理 13%, 뜨게
질 10%, 그 外 手芸, 꽃꽂이, 學校課程等인데 性敎育과

註 46) 勤勞女性의 産業保健管理 實態에 關한 調査研究報告書 1972.
高大勞動問題研究所 P 48 ~ P 53, P 59.

人口教育을 通해 勤勞者 個人의 欲求에 充足하고 政府는 81 年代의 G.N.P 達成의 志向 目標을 成功시켜 二重 效果를 거두어야 겠다. 註 47)

㉔ 生活上의 隘路點

ㄱ. 生計維持 14.3 %, 健康問題 13.3 %, 勞動條件改善 20.1 %, 教育問題 17.2 %.

ㄴ. 異性交際關係는 97 %가 未婚이고, 18 ~ 24 才 83.4 %인 特徵은 異性交際 經驗있다가 48 %이며 異性交際에 關한 相談必要를 바라는 者가 36.4 %이다.

㉕ 問題點

㉖ 集團構造面

ㄱ. 24 才 未滿의 中卒以下 未婚女性의 過多合宿에 따라 相互感染하기 쉬운 意識構造의 不健全性 是正策과 餘暇 善用을 위한 制度의 講究가 있어야 하겠으며 教養, 風紀, 善導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ㄴ. 젊은 未婚女性들의 '競爭心에서 오는 消費風潮에 對한 抑制方案과 貯蓄將勵를 위한 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㉗ 健康管理面

低賃金과 過重한 勤勞時間은 이年令時期가 가지고 있는 營養攝取欲求, 休息, 睡眠의 欲求를 充足하지 못해 心理的 갈등을 解消하지 못해 情緒적으로 不安해지며 未來의

註 47) 都市貧民家族問題 및 家族計劃에 關한 研究, 渠大女性 資源開發研究所 1972. P99-P100.

어머니가 될 母體에 對한 保健衛生, 疾病對策이 未洽하다.

㉔ 勤勞條件改善 및 監督官의 善導方案

低賃金(月給明細書 없음)과 長時間乘車하는 勤勞條件을 改善하고 現金取扱으로 因한 監督官의 檢身行爲 撤廢 및 人權尊重을 通한 愛情있는 善導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寄宿舍나 車主집에 寄寓하고 있어 使用者 및 舍監(車主에 雇傭되어 있는 舍監)과의 隸屬關係에 묶여 勤勞時間過多, 私生活의 干涉等이 심한데 對한 車主와 舍監에 對한 教育이 未備하다.

㉕ 福祉面

寄宿舍等 宿所 온돌裝置, 惡臭, 벌레, 쥐, 除去 및 세면실, 욕목실, 醫務室, 食堂, 凶害室, 娛樂室 不備.

다) 遊興樂所就業女性

① 美態

㉖ 우리나라 女子서어비스業 從事者는 (表 27) 1976年 12月現在 48萬 8千名으로 全女子就業者 311萬 2千名에 對한 15.7%이다. 70年에 서어비스業 從事者에 比하면 5.5% 增加하였다. 서어비스業 從事者의 增大는 바람직한 雇傭增大方向이 아니다. 女性의 서어비스業 從事는 減少現象이 健全한 生活 營爲를 爲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㉗ 中央日報가 調査한^{註 48)} 서울, 釜山, 大邱, 光州, 大田, 全國

註 48) 中央日報. 1976.11.18.

表 27. 職業別就業者 (女子)

(單位 ; 千名)

	全職別	專門的技 術的行政 管理的職 業從事者	事 務 從事者	販 売 從事者	서비스 從事者	農林, 漁 業, 狩獵 유사종사자	어업 및 수산업 從事者	其 他 從事者
1970	3,578	85	78	512	367	1,991	84	461
71	3,695	96	114	530	451	2,015	24	465
72	3,894	64	114	517	401	2,234	66	498
73	4,216	73	120	566	440	2,255	90	627
74.3	4,160	71	132	593	438	2,172	86	668
6	5,362	75	144	609	437	3,438	38	621
9	4,707	81	141	602	460	2,705	49	668
12	3,015	79	163	626	492	733	59	863
75	3,112	89	166	646	488	772	71	880
76.6	5,856	88	203	621	502	1,556	31	855

資料 ; 經濟企劃院

五大都市 遊興接客業所 女性就業 現況을 보면,

遊興接客業所 4萬39個所에 從事員數 32萬5千여명인데
이중 女子從業員數는 25萬여명으로 2/3에 該當된다.

거의가 10~30才로 家計를 運營해가는 家長의 役割을
하고 있으며 10代에 다과점, 음식점에 就業한 少女는→
다방→술집으로 나가게 된다. 서울의 경우 맥주홀, 요정,
BAR, 댄스홀 女子從業員 5千餘名, 대포집 2萬5千, 茶房
2萬4千, 内外國人 Call girl 1千5百餘名으로 推算되고
있다.

食品遊興業所 新規許可規制로 業所數는 變動없으나 女子
從業員數는 增加하고 있다.

② 問題點

㉠ 集團構造面

遊興業所가 都市에 集中되어 있는 特殊性은 都市의 社會
惡에 感染되기 쉬워 不健全한 意識構造가 蔓延되게 하는
媒介體가 될 것이고 淪落의 可能性이 가장 짙은 集團으로
부각되는 問題集團에 就業하고 있는 女性의 敎養 風紀
善導方案이 講究되어 져야 할 것이다.

㉡ 職業意識面

特定地域淪落女性은 아닐지라도 主로 男性을 相對로 卍비
스하는 遊興業所에 從事하는 女性들을 生産的인 業種에
從事할 수 있도록 國家的 次元의 誘導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道德的 基準設定으로 職業意識을 啓導하여야 한다.

(㉔) 健康面

遊興業所의 분위기의 頹廢性和 酒類, 담배取扱에 따라 從事女性들의 吸煙, 飲酒, 麻藥中毒에 빠지기 쉬워 精神的, 身體的健康에 對한 問題 解消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

5) 零細自營業家庭 要保護女性 実態 및 問題點

가) 零細自營業家庭 範圍

低所得層中에서 生活保護法에 根拠하여 公的扶助를 通한 保護를 받지 못하고 있는 零細한 農村家庭女性和 都市零細商人(行商) 등을 保護範圍로 한다.

나) 問題點

① 生保対象者和 同一한 貧困水準에 있으면서 生活維持能力이 缺如되어 있는 社会脆弱者の 保護와 福祉増進을 爲한 方案이 보다 時急히 講究되어야 한다.

② 実態調査를 通한 問題點 發掘과 対策이 講究되므로 全國民의 生活最低水準이 保障되게 한다.

③ 農村의 農閑期에 있어서의 婦女子 福祉向上 方案과 農繁期 女性들에 附隨된 託兒問題의 対策 不足하다.

④ 都市零細한 露店女性들의 生計維持를 위한 効率的 保護方案이 不足하다.

第4章 最近 諸外國의 安保及女性 福祉事業의 動向

第一節 概 說

1) 오늘날 各國은 自國의 水準에 따른 各種社會保障制度를 採用하여 國民生活의 安定을 爲한 措置를 國家의 次元에서 講究하고 있다. 그러므로 要保證女性福祉를 爲한 制度가 별도로 없고 女性 또한 國民의 한 사람으로써 더욱 重要한 母性으로써 國家의 社會保障制度의 한 部門에 屬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社會保障은 疾病, 負傷, 出產, 老令, 廢疾, 死亡, 業務災害, 失業, 多子, 貧困에 있어서 一定한 保障을 行하고 있으며 그 保障의 種類, 水準, 實施方法等은 國家에 따라 다르다.

2) 各國이 行하고 있는 社會保障의 範圍와 實施方式을 ILO의 「社會保障의 最低基準에 關한 條約」(52年)에서 要約해보면 社會保障을 醫療(現物給付), 疾病給付(現金給付), 失業給付, 老令給付, 業務災害給付, 家族給付, 出產給付, 廢疾給付 및 遺族給付의 9部門으로 分類하고 實施方式은 公的서비스, 強制的社會保險, 任意的社會保險 公的扶助方式으로 分類하고 있는데 各國에서는 이러한 모든 給付部門 또는 몇 가지 給付部門의 組合된 方式으로 行해지고 있다. 몇 個國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英 国 医療과 国民保健서비스 (公的서비스)

家族給付와 家族手当制度 (公的서비스)

그外 諸給付와 国民保險및 国民 (産業災害) 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貧困者에 對한 老令給付等 補足給付制度 (公的扶助)

나. 프랑스

医療, 疾病給付

出産給付

老令給付

廢疾給付및 遺族給付

疾病保險및 老令保險

(強制的社会保險)

業務災害給付와 勞災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家族給付와 家族手当制度 (" ")

다. 西 獨

医療, 疾病給付및 出産給付와 疾病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家族給付와 兒童手当制度 (公的서비스)

그外 諸給付와 年金保險, 災害保險및 失業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貧困者에 對한 諸給付와 社会扶助 (公的扶助)

라. 스웨덴

医療는 公的医療서비스 (公的서비스), 健康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疾病給付및 出産給付와 健康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老令給付, 廢疾給付 및 遺族給付와 年金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失業給付와 失業保險 (任意的 社会保險)

業務災害給付와 勞災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家族給付 와 兒童手当制度 (公的서비스)

母子等 要保護者에 對한 諸給付 와 社会福祉制度 (公的서비스)

貧困者에 對한 諸給付는 (公的扶助)

마. 日 本 医療 와 医療保險 (強制的 社会保險)

家族給付 와 兒童手当制度 (公的서비스)

그外諸給付 와 年金保險

勞働者災害補償保險 및 失業保險

} (強制的 社会保險)

貧困者에 對한 諸給付와 生活保護 (公的扶助)

3) 이와같은 各國間의 差異는 그나라의 社会經濟體制가 다르고 歷史的 背景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制度面과 費用面의 國際比較는 容異한 것이 아니다.

制度面의 比較는 美國保健教育福祉省社会保障總의 「世界各國의 社会保障制度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로서 社会保障制度를 「老令, 殘疾, 遺族給付」 「疾病, 出產給付」 「業務災害給付」 「失業給付」 및 「家族給付」의 5 部門으로 나누어 根拠法, 対象者, 財源, 受給要件, 給付率, 期間 및 管理機關에 對해 比較를 하고 있다. 몇 개국의 類型을 보면 表28와 같다. 49)

註 49) 社会保障年鑑, 1976, 東洋經濟新報社.

(1)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2)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3)

(4)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5)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6)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7)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8)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9)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0)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1)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2)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3)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4)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5)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6)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7)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8)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19)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20) 在 100 毫升 10% 的硝酸中，加入 1 克

(21)

< 表 28 >

諸外國의 社會保障制度의 類型

國 名	老令, 廢疾, 遺族給付	疾 病, 出 産 給 付	勞 動, 災 害 給 付	失 業 給 付	家 族 手 當
英 國	社會保險方式	社會保險, 國民保健事業의 複合方式	社 會 保 險	強 制 保 險	總 合 方 式
西 獨	社會保險方式	社會保險 (現金 및 醫療給付)	準民間保險과의 強制契約方式	強 制 保 險	包括的 公的方式
프 랑 스	社會保險方式, 私的年金委託方式	社會保險 (現金 및 醫療給付)	社 會 保 險	強制保險과 扶助의複合方式	雇 傭 關 聯 方式
이 태 리	社會保險方式	社會保險方式 (現金 및 醫療 給付)	社 會 保 險	強 制 保 險	雇 傭 關 聯 方式
스 웨 덴	包括年金 및 社會保險複合 方式	社會保險方式 (現金 및 醫療 給付)	公的 또는 民間保險과 의 強制保險方式	補助給付任意保險方式	包 括 方 式
카 나 다	包括年金 및 社會保險複合 方式	病院 및 醫療保險方式 (聯邦 州制度)	公營強制保險方式 (州 制度)	強 制 保 險	包 括 方 式
美 國	社會保險方式	社會保險方式	公營 또는 民間保險과 의 強制 또는 撰 択 保 險方式	強 制 保 險	被扶養兒童이 있는 生活困窮家族에 對한 聯邦・州援給制度 (現 金支給 및 社會事業)
오스트랄리아	社會扶助方式	現金給付 - 疾病, 社會扶助方式 出産包括方式 醫療給付 - 公的扶助 및 任意 保險에의 補助金의 二元方 式	公營 또는 民間保險과 의 強制保險方式	失業扶助方式	包 括 方 式

資料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Research
and Statistic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3.

第二節 各國社會保障制度的 要保證女性分野

(未亡人과 그子女, 出產給付, 寡族給付를 中心으로)

1) 英 國

가) 英國의 社會保障制度는 1948年 7月 5日부터 全面的으로 實施를 보게된 6개의 法律로써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列挙하면⁵⁰⁾

家族手当法 (Family Allowance Act), 1945年 制定

國民産業災害保險法 (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1946年 制定

國民保險法 (National Insurance Act), 1946年 制定

國民保健事業法 (National Health Services Act) 1946年 制定

國民扶助法 (National Assistance Act) 1946年 制定

兒童法 (Children's Act), 1948年 制定

英國에서는 広義의 社會保障을 意味하는 概念으로써⁵¹⁾ 社會서비스 (Social Services) 라는 말을 使用하고 있다.

社會서비스에는 社會保障, 福祉서비스, 住宅서비스, 教育서비스, 國民保健서비스 등이 包含되고 있으며 이중에 社會保障 (Social security) 이라는 것을 現金의 給付를 通하여 國民의 所得의 維持를 圖謀하는 部門을 말한다. 이중에서 女性福祉와 關聯된 部門을 살펴보면

註 50) 社會福祉論 具滋憲 p.320.

51) 社會保障年鑑, 東洋經濟新報社, 1976. p.213.

① 国民保險制度中에서 (National Insurance)

被保險者는 被傭者 (2318 万人), 自營業者 (168 万人), 無業者 (19 万人) 의 3階級으로 分類하고 學生, 囚人, 国民保險給付受給者等을 除한 既婚의 婦人은 拋出하고 스스로 給付받는 수도 있으며 夫의 保險金으로 出產一時金, 退職年金 (低額), 寡婦給付, 死亡一時金을 받고 있다.

㉞ 出產手當 : 스스로 保險拋出金을 내고 있는 被傭者나 自營業者가 出產하는 경우에 出產前 11 週부터 出產後 18 週間에 걸쳐 支給된다.

㉟ 寡婦手當 : 寡婦가 된 때부터 26 週間에 限하여 支給되며 그後에는 兒童이 있는 母親에게는 母子手當金 50 歲以上 寡婦에게는 寡婦年金, 40~50 歲 寡婦에게는 減額된 寡婦年金이 支払된다. 그외에 被保險者本人 또는 그家族이 出產, 死亡한 때에는 出產一時金, 死亡一時金을 支払한다.

㊱ 家族手當은 無拋出로 되어 있으며 一定한 年令 (義務教育修了年令 16 歲, 修學中の 兒童 또는 徒弟는 19 歲) 未滿의 兒童 2 人以上있는 世帯는 家族手當金을 支払한다. 全費用은 國庫가 負擔한다.

㊲ 世帯補足給付 : 이制度의 最初는 1948 年 英國社會保障體系를 構成하는 一聯의 法律制度의 受給資格이 없거나 받고 있는 給付가 最低의 生活을 維持하는데 充分하지 못한 사람에게 給付하

기 爲한 國民扶助法에 依한 것으로 英國에
居住하는 16 歲 以上の 生活窶乏者 (16 歲 以
下는 兒童手当, 家族手当, 保護者手当, 兒童手当
等 対象이 가 때문에) 에게 支給된다. 이 給付
를 받는者는 國民保健서비스 部門의 当事者가
負擔하는 自体負擔을 免除받는다.
全 費用은 政府가 負擔한다.

나) 英國은 各種의 保險制度和 國民扶助制度를 採択하여 國民은
搖籃에서 墓地에 이르기까지 모든 種類의 生活의 危險으로
부터 保障되며 恒時 그의 生活을 爲한 物質的 必要의 適當한 最少
量만은 確保되고 있는 것이다. 그社會保障의 實際은^{50-①}

① 出生: 한 市民의 出生에 除하여 國民保險制度는 그 市民
의 生命의 始發點을 窮乏때문에 差等있게 만들지 않기 爲한 保障
을 준다. 産兒給与가 産母에게 支給되고 또 産母가 國民保健制度
또는 其他 公費에 依하여 無料 또는 補助또는 補助받아서 入院하
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自家出産給与를 또한 支給받을수 있다.

正常的으로 職場에 出勤하고 또 一定한 保險料를 納付하는 婦人에
對하여는 週給産兒扶助를 18 週間 添加給与할 수 있게 되어있다.

② 兒童期: 週給家族手當이 第一子와 獨子兒童 以外の 各兒童別
로 兩親에게 支給된다. 父母가 疾病, 失職等 事由로 保險給付를
받고 있는 期間中 兒童數에 따라 給付增額을 받는다. 未亡人은

註 50-① 社會福祉論, 具茲憲, PP. 324 ~ 326.

兒童數에 따른 未亡母手當 받은後 13 週間 未亡人手當을 兒童數에 따라 增額받고 兩親을 잃은 兒童을 養育하는 家庭에 後見手當이 支給된다.

(3) 稼働期: 雇傭勤勞者가 失職後 30 週間이 넘으면 妻, 其他 成人扶養者 및 子女數에 對한 失業手當增額 받을 수 있다. 既婚婦人은 만약 夫가 自立不能하여 自身이 全的으로 夫를 扶養해야 하는 境遇와 夫와 獨立하여 生計를 維持하고 夫로부터 財政的援助를 받을 수 없는 境遇에는 独身女性과 同一率의 保險給付를 받는다.

雇傭이나 自營을 不問하고 勞動하는 男性이나 女性이 罹病하면 그가 完全히 有資格인 境遇에 일할 수 없는 期間中 自身과 扶養者를 爲한 疾病給付 받을 수 있고 男便의 財政的 援助를 받는 既婚婦人에 對해서는 多額의 減額이 있고 夫를 扶養할 경우 全額이 支給된다.

産業事故로 死亡한 夫의 未亡人은 平生 또는 再婚時까지 支給되는 年金을 받을 수 있다. 死亡者의 子女를 養育하고 있는 婦人에게 兒童數에 따라 給付增額이 있다.

産業事故 以外의 모든 未亡人도 週給未亡人手當(兒童數에 增額하여)을 13 週間 支給받는다. 그 後로 子女의 養育, 不健康, 結婚中 長期間 就業으로 부터 떠나있던 關係, 또는 高令等의 理由로 就業할 수 없다고 正當하게 認定되는 경우에 未亡母手當, 또는 未亡人 年金을 支給받을 수 있다.

(4) 老年期: 職業으로부터 退職하는 60 歲 以上の 女性(男性 65 歲) 女性에게 退職年金 支給된다.

退職年令以上 勤務하고 退職하는 경우에는 다 高率의 年金을 받을 수 있다.

死亡: 葬禮費를 補助하기 爲한 死亡給与가 支給된다.

表 30

社 会 保 障 給 付 週 額

(单位 : 파운드)

	74 年 7 月	75 年 4 月		74 年 7 月	75 年 4 月
国 民 保 險					
失業 單 夫	8.60	9.80	第 2 子 加 算	4.00	4.15
身 婦	13.90	15.90	第 3 子 以 降	3.90	4.15
第 1 子 加 算	2.70	3.10	死 亡 一 時 金	30.00	30.00
第 2 子 加 算	1.80	1.60	退職年金 喪 廢疾給付		
第 3 子 以 降	1.70	1.60	單 身 婦	10.00	11.60
出 產 給 付			夫	16.00	18.50
出 產 一 時 金	25.00	25.00	第 1 子 加 算	4.90	5.65
出 產 手 當 金	8.60	9.80	第 2 子 加 算	4.00	4.15
寡 婦 給 付			第 3 子 以 降	3.90	4.15
寡 婦 手 當 金	14.00	16.20	80 歲 以 上 加 算	0.25	0.25
寡 婦 年 金	10.00	11.60	老 人 年 金		
母 子 手 當 金	10.00	11.60	單 身 婦	6.00	6.90
母 1 親			夫	9.70	11.20
第 1 子 加 算	4.90	5.65	保 護 者 手 當 金	4.90	5.65
国 民 保 險 (勞 災)			付 添 手 當 金	8.00	9.20
傷 害 給 付			寡 族 手 當 子		
單 夫	11.35	12.55	第 2 子 以 降	0.90	1.50
第 1 子 加 算	16.65	18.65	第 3 子 以 降	1.00	1.50
第 2 子 加 算	2.70	3.10	補 足 給 付 期		
第 3 子 以 降	1.80	1.60	短 單 身 婦	8.40	9.60
廢疾給付 (100%廢疾)	1.70	1.60	夫 長 單 身 婦	13.65	15.65
死 亡 給 付	16.40	19.00	期 身 婦		
寡 婦 年 金			單 夫 負	10.40	12.00
最 初 的 26 週	14.00	16.20	世 帶 所 得 補 足	16.35	18.85
工 以 降	10.55	12.15	家 夫 負 額		
第 1 子 加 算	4.90	5.65	第 2 子 以 降 加 算	25.00	25.00
第 2 子 加 算	4.00	4.15		3.00	3.00
第 3 子 以 降	3.90	4.15			

資料 : Annual Report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1974.

Britair, An Official Handbook, 1975.

表 29 國民保險，勞災保險 및 國民保健 서비스 保險料遇額 (單位：와운드)

	74 年 8 月實施 (定額拠出分)				75 年 4 月實施		
	被 傭 者 (18 歲以上男子)		自營業者	無業者	被傭者 (男子)	自 營 業 者	
	比例年金 適用者	比例年金 適用除外者				均一部分	所得比例 部分
被保險者	0.75	0.87	2.41	1.90	% 5.5	2.41	8.0
雇 主	1.657	1.777	-	-	8.5	-	-
合 計	2.407	2.647	2.41	1.90	14.0	2.41	8.0
							1.90

資料：Annual Report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1974.
Britain An Official Handbook, 1975.

表 31

階 級 別 給 付 状 況

階級第 1 (被傭者)	階級第 2 (自營業者)	階級第 3 無業者
실업급부	—	—
질병급부	질병급부	—
출산수당	출산수당	—
출산일시금	출산일시금	출산일시금
과부수당	과부수당	과부수당
과부모친수당	과부모친수당	과부모친수당
과부연금	과부연금	과부연금
보호자수당	보호자수당	보호자수당
아동특별수당	아동특별수당	아동특별수당
퇴직년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다) 英國의 國民保險法은 全國民을 階級 1, 2, 3 으로 分類하여 階級에 따라 拋出金額과 一定의 給付를 定하는 制度를 쓰고 있다. 表 29 表 31 라) 社會保障給付週額은 表 30 와 같다.

2) 프랑스

가) 프랑스 社会保障의 一般制度는 社会保険, 労災保險, 家族手当의 三部門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各種의 医療給付 및 金錢給付를 提供한다.

① 社会保險給付

社会保險部門은 疾病, 出産, 死亡, 廢疾 및 老令의 保險事故에 對해 医療給付와 金錢給付를 提供한다.

㉠ 出産給付 : 收入의 90%, 14 週間 (産前 6 週間, 産後 8 週間) 支給한다. 最高限度額은 1 日當 54.9 프랑

㉡ 哺育給付 : 哺育手当 또는 밀크쿠폰을 4 個月間 支給한다.

㉢ 遺族給付 : <寡婦年金> 既制定年金額 또는 被保險者에게 支給되는 年金額의 50%를 支給

<兒童加給> 3 人의 兒童을 養育中인 未亡人에게 對해서 年金額의 10% 加給

<死亡一時金> 死亡者收入의 90 日分 支給

② 労災保險給付

労災保險은 業務上의 負傷, 職業病, 그러한 結果로 因한 廢疾, 死亡에 關한 短期, 長期의 金錢給付를 行하는 것이다.

遺族年金 : 死亡한 被傭者의 賃金年額의 30%, 遺兒 1 人 15%,

相當額 支給 :

③ 家族給付

家族給付部門은 子를 養育하는 家族의 負擔을 社会的으로

輕減시켜 줄것을 目的으로 하여 家族手当, 單一賃金手当 (또는 主婦手当), 産前手当, 母親手当, 住宅手当, 心身障害児教育特別手当, 入学児童手当等으로 家族給付를 支給한다.

이러한 各種家族給付는 他社會保障部門의 給付가 被保險者의 報酬 또는 所得의 總額을 基準으로하는 所得比例制를 採択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㉔ 家族手当 : 現行 (75 年 4 月 1 日 現在) 基礎賃金 592 프랑의 第 2 人의 子 22 %, 3 人의 子 59 % 4 人의 子 96 %, 그 이상 子 1 人에 33 %

㉕ 産前手当 : 産前 9 個月間 算定基準의 22 %를 月額 支給한다.

㉖ 母親手当 : 算定基準의 260 %를 出産時 $\frac{1}{2}$, 6 個月後 $\frac{1}{2}$ 支給

㉗ 心身障害児教育特別手当 : 障害児 1 人에 對한 算定基準의 50 %를 月額으로 1 年間 支給

㉘ 住宅手当 : 子女數와 所得이 占하는 家賃에 따라 定한 額 支給

㉙ 入学児手当 : 74 年에 新設한 것으로 入学児 1 人에 對해 算定基準의 20 %를 支給

㉚ 單一賃金手当 (主婦手当) : 世帯收入이 1 人의 賃金인 世帯의 子를 養育하는데 도움을 주기 爲해 家族手当에 付加하여 支給된다. 家庭에서 子를 養育하는 모든 主婦에게 支給되었으나 72.7.1 부터 所得收入이 兒童數에 따라 定하여진 上限額이 넘는 高所得世帯에는

支給되지 않는다.

그 收入上限額은 74.7.1~75.6.30 子女1人 年間 28,800 프랑,
2人 34,560 프랑, 3人 40,320 프랑, 手当額은 2歲미만 子 가 있는
家族에 限해서 일률적으로 算定 基準의 50%를 支給하고, 2歲미만
子 가 없는 家族에 限해서 1人에 對해 算定 基準의 20%를 支給
하고 2人에 對해 算定 基準의 40%를 支給하고 3人以上아이
算定 基準의 50% 支給.

나) 프랑스 社會保障制度를 運營해 나가는 財政的인 뒷받침은
原則的으로 使用者와 保險에 加入한 者가 保險料로 充當하며 國家
가 負擔하는 것은 별로 없다. 75年 1月1日 現在, 所得上限 年額
33,000 프랑을 基準으로 使用者가 負擔하는 保險料率은 社會保險
(19.70%), 勞災保險(4%), 家族手当(9.00%)의 3部分을 合해
서 32.7%, 被保險者가 負擔하는 保險料率은 6.5%이다.

3) 西 獨

가) 西獨의 社會保障制度는 年金保險, 疾病保險, 災害保險, 失業保
險, 失業扶助, 雇傭促進, 職業訓練, 兒童手当, 母性保護, 戰爭犠牲者 援
護・保護, 社會扶助, 靑少年扶助, 負擔調整, 公衆保健, 恩給 등이 있다.

西獨의 社會保障은 社會政策(Sozialpolitik)의 一環으로써의
役割을 하고 있다.

① 兒 童 手 當

兒童手当은 75年부터 公務員과 戰爭犠牲者(從來에 이런者
는 兒童手当과 同等히 兒童給付를 받고 있었던) 포함, 18歲未滿
(在學中 또는 職業訓練中인 者는 25歲까지)의 子를 가진 者에

限해서 所得額과 關係없이 支給한다.

手当額(月額)은 75.1.1부터 第一子 50마르크, 第二子 70마르크, 第三子以外 120마르크다.

74年8月5日 「所得稅改革法」으로 因해서 所得稅의 兒童控除, 公務員, 戰爭犠牲者에 對한 兒童給付가 廢止되었고 그대신 ① 公務員과 戰爭犠牲者에게도 같은 兒童手當을 支給함 ②父母의 所得額에 는 關係없이 第一子부터 兒童手當을 支給함 ③ 兒童手當額을 大幅 引上하기로 措置가 取해졌다. 이 措置는 兒童手當制度로서는 大幅의 改正이다. 支給對象兒童數는 74年에 있어서 535萬이다. 兒童手當의 財源은 全額이 國庫負擔金이다. 또 이 制度의 運營은 聯邦勞動事務所가 行한다.

② 社會扶助

社會扶助는 生活困窮者에 對한 生計扶助및 特別扶助를 行하고 扶助의 基準은 地域, 年令等에 依해 다르다. 社會扶助의 費用은 聯邦州 및 市郡이 負擔하나 74年에 있어서 여러가지 負擔比率이 0.9%, 19.5% 및 77.9%이다.

나) 最近의 動向

75年에 있어서 重要한 動向은 ① 75年1月1일부터 兒童手當이 大幅 改正되었다는 點이고 ② 75年7月1일부터 「障害者 社會保險에 關한 法律」의 施行으로 從來 全障害者에 對한 保障이 되지 않았으나 疾病保險및 年金保險에 強制加入시켜 障害者의 社會保障의 改善을 圖模했다. (이로 因한 聯邦및 州가 負擔한 費用은

75년에 있어서 約 27 億 마르크이다) ③ 75年 9 月 1 日부터 「学生
疾病保險에 關한 法律」의 施行으로 就業하고 있지 않는 一般学生
을 疾病保險에 強制加入시켜 疾病保險의 強制加入者의 範圍를 擴大
했다고 본다.

74年の 社会豫算 (Sozialbudget 1974 에 있어서 国民總生産에
對한 社会保障給付費의 比率은 73年 27.1%, 74年 28.5%, 78年
29.1% (豫測)로 되어있다. 社会保障給付費의 伸張率은 68~73 年에 있
어서는 年平均 12.3% 73~78 年에 있어서는 年平均 11.3% (豫測)로
되어있다.

4) 스칸디나비아諸国

노웨이, 덴마크, 핀란드等 소위 스칸디나비아諸国 (Scandinavian
Countries) 은 社会保障制度가 相互類似한 點이 많다. 女性에
關聯된 分野를 보면

家族手当 (Family Allowances), 出産給付 (Maternity Benefi-
ts), 遺族給付 (Survivors Benefits), 未亡人年金 (Widows' Pen-
sions), 「離婚한 未亡人 (Divorced Widows), 未亡人의 再婚 (Rem-
arrage of Widows) 홀아비年金 (Widowers' Pensions), 未婚母를
위한 国民保險給付 (National Insurance Benefits for unmarried
Mothers), 補充保險給付 (Supplementary Insurance benefits)
社会扶助 (Social Assistance) 등으로써 그中 몇가지를 보면 ^{註 52)}

註 52)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Year XXVIII.
No. 1. Geneva, 1975. p.23-24.

가) 未婚母를 爲한 國民保險給付 (National Insurance Benefits for unmarried Mothers)

「놀웨이」의 特有한 制度로써 婚姻經歷이 있는 女人에게는 適用되지 않으며 未婚母가 所得源을 가질때 까지 扶養費를 支給하는 制度이다.

適用對象者는 놀웨이에 居住하며 3年以上 國民保險에 加入되어 있어야 한다. 17歲以上者만이 保險에 加入할 수 있으므로 實際적으로는 20歲以上者에 適用되며 養育費, 教育手當 및 扶養費의 給与는 未亡人保險의 경우와 같다. 出產以前에도 一部 支給이 可能하다.

正常的으로는 어린이가 2~3歲될 때 까지만 養育費가 支給되어야 할 것이나 未婚母가 勤勞에 從事하기를 거절한다면 10歲에 이를 때 까지도 支給된다. 이 保險의 問題點은 그 未婚母가 子女의 實夫와 同居生活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1969年의 判例로는 그 경우도 支給되어야 하게 되어있으며 그에 對한 關聯法 規定의 改正 努力이 있었으나 1972年 現在 實現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未婚母는 期待所得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실지 給与額이 約 1/5程度로 經減된다.

「오슬로」市의 경우

오슬로 市에서는 國民保險과 別도의 社會保險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곳에서의 「어머니保險」에 의하면 未婚母는 國民保險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保險金을 받는다. 그러나 未婚母를 包含하여 離婚女, 別居中人 婦人, 남편으로 부터 버림받은 女人等에 對하여 勞動을

通한 적절한 所得을 얻지 못하여도 18歲까지는 子女扶養의 義務가 있으며 子女에 對한 추가보조금이 따르게 된다.

나) 家族手当 (Family allowance)

家族手当制度는 家族中 子女數가 支給額에 매우 重要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諸國에서는 家族中 全 子女에 對하여 手当이 支給된다. 노웨이에서는 16歲以下の 다섯째 子女까지 등급을 定하여 無課稅手当을 支給하며 덴마크와 스웨덴도 16歲 및 18歲에 이르기까지의 子女에게 각각 無課稅手当을 支給한다. 이와 같은 制度를 採択하고 있는 네델란드에서는 16歲까지 無課稅手当을 支給하며 子女가 學生이거나 無能力일때는 27歲까지 支給하고 있으며 西獨에서는 둘째 子女에서부터 數가 增加함에 따라 增額하여 통상 18歲까지 支給한다.

다) 出產給付 (maternity Benefits)

(出產補助金 maternity grants) :

덴마크 및 스웨덴의 경우 保險條件없이 全 子女에게 所得與否와 上 關없이 出產補助金을 支給한다. 子女에 出產以前에 一部를 先支給한다.

노웨이의 경우 年間「2,775크로네」의 特別 出產補助金을 未婚母에 支給한다. 또한 病院이나 自宅이 아닌 곳에서 出產할 경우「350크로네」를 追加 支給한다.

(出產手当 ; maternity allowances) ; 勤勞女性에게 所得機會喪失에 對하여 出產手当을 支給하며 健康保險에 加入되어 있는 것을 條件으로

解産期間에 對하여 적용된다.

라) 遺族補償 (Survivor's Benefits)

扶養子女가 있는 未亡人은 비록 경우에 따라 一定한 條件이
불지만 未亡人 年金의 請求權利를 갖고있다.

(未亡人年金) ; 年金規模는 놀웨이 경우 未亡人의 所得에 關聯
이 있고 덴마크의 경우 45歲以上, 두子女 以上
扶養하는 未亡人에게만 적용된다.

마) 스웨덴의 社會保障制度는 社會保險을 中心으로 公立의 医療機關
關과 医療官으로써 행하는 公的 醫療서비스, 広範한 公的 社會福祉
및 社會保險을 中心으로 構成되어 있다.

社會保險의 中心은 健康保險과 年金保險을 統合한 國民保險制度
이다.

① 健康保險

16歲 以上の 모든 스웨덴 居住者는 強制的으로 健康保險에
加入하여 保險料를 支払하고 各 地方의 公的 保險組合에 登錄한다.

給付는 醫療給付, 現金疾病給付, 兩親의 給付 (從來 出産給付) 區
分되어 實施된다.

出産時에는 出産前後의 醫療分娩 서비스 및 出産一時金과 勞動不
能에 對한 現金給付가 支給되며 勞動不能의 現金給付는 年收 4,500
크로네 以上の 被保險者에 支給, 給付日額은 所得에 따라 다르나

給付가 最高 180日間까지 支払된다.

出産後에 母가 就業하는 경우 父가 育兒를 担当할 경우 父에게 休暇를 認定하고 本人自身の 收入에 맞는 現金給付가 父에게 支給된다. 第2子 以後의 出産부터는 育兒를 担当하는 父에게 休暇와 現金給付를 준다.

10歲未満의 子가 病으로 있을때 兩親中 누구든 休暇를 주며 現金給付가 認定된다.

(2) 年金保險 : 年金保險은 基本年金과 補足年金의 兩制度로 構成되어 있다.

老令年金受給者の 配偶者가 60歲以上으로써 老令年金을 受給하지 못할경우 主婦補足給付가 支給된다. 寡婦年金은 16歲未満의 子女를 養育하는 寡婦 또는 婚姻 5年以上이 지난 一定年令에 達한 寡婦에게 支給된다.

遺兒年金은 16歲以上の 遺兒는 支給된다.

75年9月現在 基本年金에 依한 各給付의 受給者는 表 3.2 와같다.

年金保險의 受給者와 給付費

(75年9月現在)

(單位 ; 人, 1000)
크로네

表 32

給 付	受 給 者	
	基 本 年 金	補 足 年 金
老 齡 年 金	1,076,596	446,097
廢 疾 年 金	242,545	145,521
一 時的 廢 疾 年 金	38,667	27,163

給 付	受 給 者	
	基 本 年 金	補 足 年 金
主 婦 手 当	65,842	-
寡 婦 年 金	104,123	144,730
廢 疾 手 当	4,451	-
兒 童 의 廢 疾 手 当	9,006	-
遺 兒 年 金	42,852	39,076
受給者 合 計	1,584,082	802,587
自 治 体 住 宅 手 当	747,426	-
廢 疾 補 足 給 付	13,778	-
兒 童 補 足 給 付	16,019	-
給 付 費 合 計	1,339,725	430,132

(資料) 全國社會保障委員會 (Stockholm) 月報

5) 스 위 스

스 위스의 社會保障 制度는 各 國에서 볼수있는 保險種類와 스 위스 特有의 保險制度를 包含 하고 있다.

老令 및 遺族保險, 廢疾保險, 健康保險 (出產補助金 包含), 傷害保險, 家族扶養手當, 失業保險, 軍復務中의 所得損失補償保險, 軍人保險 等 이다.

가) 老齡및 遺族保險

(1) 单独老齡年金 : 男女막론하고 独身이거나 또는 婦人이 60 歲
以下거나 夫가 廢疾 (50 %) 이거나, 65 歲以下
인 妻를위한 年金 男 65 歲 女 62 歲, 受領資格

(2) 婦女를 爲한 老齡年金 : 夫가 65 歲 妻가 60 歲以上이거나
50 % 以上 廢疾인 경우

(3) 未亡人年金 : 夫死亡時 1 名以上 親子女, 養子女가 있는 未亡
人, 夫死亡時 40 歲以上 未亡人으로 結婚한지
5 年以上 經過된者 .

(4) 遺子女年金 : 偏父, 偏母; 兩父母잃은 孤아에 對 支給, 孤아는
연금액의 2 배 18 歲까지

(5) 近親을 爲한 補充年金 < 妻를 爲한 制度 > :

(가) 单独老齡年金받는 夫는 妻가 45 歲以上이 되면 補充年金
받을 資格있다 .

(나) 단독노령연금 받기 직전까지 妻가 45 歲未滿이었다면 그
妻를 爲하여 補充年金, 補充廢疾年金 請求할 수 있다 .

(다) 離婚한 女子라도 子女들에 對한 養育負擔을 남자쪽보다
많이지고 있고 自身은 老令, 폐질연금 탈 資格 없을때는 結婚한 女子
로 認定 적용한다 .

나) 健康保險 (出產 手當)

(1) 出產保險金 : 解產時点으로 보아 保險에 加入한지 270 日以
上이 되고 3 個月以上 中斷이 없는 女性에 對하여 妊娠中이거나

解産中일때 他疾病과 같은 保險金 支給한다. 집에서 解産하는 경우는 산파비를 의사가 치료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대하여 지급한다. 病院에서 解産 할때에도 별도 산파를 쓰면 그費用을 지급하여야 한다. 産母가 病院에 있는동안 新生兒의 病院비용 치료비로 지급하여야 하고 10週以內에 入院이 必要하면 入院시킬수 있다. 또 産母에 대하여 임신중 4회이내의 檢診과 産後 10週以內 1回以內의 檢診에 必要한 費用도 負擔하여야 한다. 被保險者인 出産婦는 집에서나 病院에서 解産할수 있다. 애기를 産母가 養育하면 母乳은 아니든 50 프랑의 看護手当을 받게된다. 出産保險의 期間은 10週이며 出産後는 적어도 6週以上을 適用할수 있다. 一般保險金の 支給期間에는 加算되지 아니한다.

다) 災 害 保 險

廢疾年金 : 未亡人 - 評價年間所得額의 30% 遺子女(偏父母)

라) 家族手当

6) 美 国

가) 美國의 現行社會保障制度는 老齡, 遺族, 障害, 健康保險(OAS-DHI), 失業保險, 勞働者災害補償, 鐵道從業員및 聯邦公務員, 退役軍人의 補償및 諸年金, 公的扶助(補足的保障所得 - SSI 프로그램), 母子保健, 兒童福祉 및 公衆衛生等の 制度가 聯邦社會保障法(Social Security Act)에 規定되어 있다.

① OASDHI

老齡, 遺族, 障害, 健康保險 (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 制度는 全國民을 對象으로하는 最大規模를 가지고 있는 公的社會保障制度로써 聯邦政府가 直接 運營하고 있다. 同制度는 退職勞働者 障害勞働者 및 그扶養家族, 따라서 被保險者의 遺族에 對해 每月 現金給付를 提供한다. (表 33)

表 33 OASDHI 受給者 1 人當 平均支給月額 (單位 ; 달러)

受 給 者		74 年 6 月	75 年 6 月
退職勞働者와 扶養家族	退職勞働者	186.47	205.16
	妻 夫	95.16	104.43
	子 女	68.70	76.56
遺 族	子 女	124.97	137.88
	寡婦로된 母親	131.35	144.94
	寡婦 · 鰥 夫	175.34	191.68
	兩 親	156.84	170.90
廢疾勞働者와 扶養家族	廢疾勞働者	204.57	224.11
	妻 夫	61.65	67.29
	子 女	56.07	61.76
72 歲以上의 特殊한 老齡者		63.54	68.69

(資料) U.S. Dept. of H. E. & W., Social Security Bulletin, Vol. 38, No. 10, 1975.

○ 老齡 및 遺族保險 (Old-age Survivors Insurance)

㉞ 老齡年金 : 65 歲以上の 被 雇者로써 完全被保險者

㉟ 遺族年金 : 受給要件을 갖춘자는 다음과 같다.

ㄱ. 18 歲未滿의 未婚의 子

就學中の 18 歲~22 歲 未婚의 子

18 歲達하고 前부터 繼續하여 障害가 있는 未婚의 子

18 歲未滿의 子 또는 受給資格이 있는 障害가 있는

子를 養育하는 寡婦

ㄴ. 夫의 死亡후 7 年以内, 또는 子를 養育終了한때 障害者

가 된 50~60 歲 寡婦

ㄷ. 62 歲以上の 扶養家族이 있는 兩親

ㄹ. 一定한 條件이 있어 生存中 離婚을 한 妻

㉠ 子女年金 : 老齡年金 受給者에 依하여 扶養되고 있는 18 歲未滿의 子女에 對해 老齡年金의 半額

㉡ 遺兒年金 : 完全被保險者의 遺族또는 一般의 被保險者의 遺族으로 16 歲未滿의 未婚子女에게 支給된다.

㉢ 未亡人年金, 寡아비年金 : 65 歲以上の 被保險者의 未亡人 또는 寡아비에게 老齡年金의 75 %를 支給

㉣ 未亡人母親手當 : 完全被保險者 또는 一時的被保險者의 未亡人 또는 前妻가 死亡한 夫의 子女를 養育하거나 또는 未亡人年金이나 老齡年金을 받고 있지 않을 때에는 扶養子女가 있는 동안 그 年齡을 불문하고 支給되며 金額은 老齡年金의 半이다.

㉤ 兩親年金 : 完全被保險者와 未亡人도 子女도없이 死亡한 경

우 그 사람의 扶養을 받고있던 65歲以上の 父母에게 支給되는 것으로 給付額은 老齡年金의 75 %

② 公的扶助와 兒童福祉事業 (Public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Service)

美國의 公的扶助는 네가지 Category로 나누어서 實施하고 있다. 卽 老齡者扶助 (Old-age assistance), 盲人扶助 (aid to the blind), 心身障礙者扶助 (aid to the permanently & totally disabled), 兒童扶助 (aid to dependent children) 等이다.

이외에 一般扶助 (general assistance) 라고 해서 聯邦政府의 支援없이 단지 該當州政府和 地方政府的 財源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써 앞의 네가지 Category 該當하지 않는 要保護者를 對象으로 해서 實施하는 公的扶助의 한프로그램이다. 52-1)

㉑ 公的扶助프로그램은 다른 低所得世帯에 對한 無料 또는 低額의 食糧分配에 依한 食糧스탬프 프로그램 (food stamp program), 住宅扶助, 醫療扶助等 많은 防貧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公的扶助는 社會保障法에 根據를 두고 實施하는 制度다. 實施主体는 補足的保障所得프로그램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에 따라 聯邦政府, 他的 公的扶助에 따라 各州에 있다. 所要費用의 一部는 各州에서 補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註 52-1) Walter 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pp.229~256.

第 34 表 SSI 의 受給者數 및 支出狀況

	受 給 者 數		連邦給付十州補 足額 (單位1,000 鎊拉)	平均給付月額 (뉴욕州) (單位 鎊拉)
	74年 6 月	75年 6 月		
總 計	3,583,894	4,188,502	457,053	141.83
老 齡	2,093,301	2,326,330	202,895	104.66
盲 人	72,883	73,849	10,183	165.40
障 害	1,417,710	1,788,323	243,976	172.95

(資料) 表 33 과 同

第35表 公的扶助의 受給者數 및 1人當 平均給付月額

	要扶養兒童이 있는 家庭에의 扶助 (A F D C)			一般扶助 (GA)		緊急扶助
	世 帶	全受給者	兒 童	Case	受給者	

受 給 者 數

(單位 : 1,000 人)

74年 4 月	3,212	10,897	7,850	511	752	28.6
75年 4 月	3,478	11,367	8,114	671	995	41.4

平 均 給 付 月 額

(單位 : 鎊拉)

74年 4 月	197.35	58.17	...	124.96	84.82	160.73
75年 4 月	214.16	65.52	...	139.63	94.26	166.33

(資料) 表 33 과 同

㉞ 이중에 聯邦이 關与하는것은 要扶養兒童이 있는 家庭의 扶助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이고 一般 扶助 (General Assistance, GA)는 다른 州및 地方이 独自の 負擔으로 責任있게 實施하고 있다.

㉟ SSI는 72年の 公法律 92-603号에 의해서 創設되고 74年 1月에 實施한 制度이다. 対象은 生活困窮狀態에 있는 老人, 盲人및 障害者이다. 表 34

㊱ AFDC는 配偶者와 離・死別한 者 또는 障害等에 依해 勞動不能의 配偶者를 扶養하는 者가 兒童을 養育하고있는 世帯및 父親이 失業中으로 養育을 要하는 兒童이 있는 世帯에 對한 扶助이다. 受給資格 要件은 各州가 規定하고 있다.

③ 未亡人 年金法 (Widow's pension Law) 53)

㊲ 美國에 있어 不우한 家庭에서 자라난 子의 地位를 처음으로 法으로 認定하고 國庫金으로 充當시키도록 1911년에 通過를 본 法이었다.

이 法令은 公金을 一般家庭에 直接支給하므로서 母가 계속 傭에 머물면서 子女를 養育하도록 한것이다. 이 原測은 1935年 社會保障法內에 扶養兒童을 爲한 扶助 (Aid to Dependent, children)로 擴大를 이루게 되었다. 이 法令下에 美聯邦政府는 子가 “父母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保護와 뒷받침을 缺乏 당했을때 ” 補助를

註53) Encyclopedia of Social work p.140

할 수 있는 法的根拠를 制定하게 되었다.

④ 扶養兒童扶助 (Aid to Dependent children) - 州에 補助金 支給

16 歲未滿 (通學中이면 18 歲未滿) 의 子女로써 兩親中 하나以上이 死亡 또는 長期不在 또는 肉體의 情神의 不具로 因해 扶養을 받지 못하고 一家親族 (父母, 祖父母, 兄弟姊妹, 伯家父母) 과 同居扶養中인 者에 對하여 國家가 州와 分担支給 (3:1) 한다. (表 35)

1959 年 以前에는 全扶助對象 家庭의 42%가 父親의 死亡에 依한 경우였으나 지금은 破綻과 未婚母 家庭이 많다.

④ 兒童福祉事業 (child welfare services)

母子保健施設 - 保健醫, 保健齒科醫, 保健婦에 依한 妊産婦, 幼兒의 保健指導, 分娩相談, 學校診療, 家庭에의 保健婦派遣, 保健教育等 事業을 担当한다.

不具兒童施設, 兒童福祉施設

以上 事業에 對하여 聯邦政府에 補助金을 支給 하고 있다.

7)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1954 年 4 月 1 日에 國民保險法案이 發効하면서 本格的인 社會保障制度가 確立되었다.⁵⁴⁾

國民保險 (National Insurance) 은 各部門別 保險制度를 두고 있으며 失業保險이 後에 追加되었고 同機構에서 상이군인 및 戰爭

註 54)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year XXVII. Nos. 2-3 Geneva 1974, pp. 241-279 (social security in ISRAEL).

犠生者에 對한 補償支給問題도 處理한다. 이 國民保險은 滿 18 歲부터 年金該當年齡까지 自動적으로 付保하게 되며 그被保險者도 最近 200 萬餘名에 달한다.

가) Old-age Insurance (老齡保險)

절대적인 老齡(耄老)保險年金 該當年齡은 男子 70, 女子 65 才이다. 그러나 勞動의 收入이 一定額을 미치지 못 할경우에는 男 65 歲, 女 60 歲 該당시키는 경우가 있다.

受惠適格要件은 ① 年金受惠對象 年齡 10 年以前에 5 年間 계속 付保한 者 ② 보험료계속 納入없이 144 個月間 付保된다. ③ 이스라엘에 60 個月以上 居住期間의 $\frac{1}{2}$ 以上 付保된자 ④ 長期이שראל 居住者도 特別惠沢者(特別年金制度)는 World Zionest organization = 세계 유대인조직체의 資金後援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이 老齡保險은 따로 疾病保險에 加入않더라도 醫療診斷및 療養補償이 追加支給된다.

나) Survivors' Insurance (死亡遺族補償保險)

① 未亡人과 遺子女補償年金 ; 年齡과 遺子女有無 또는 그數에 따라

(Pensions for widows and orphans)

差等支給된다. 젊은 未亡人이 再婚할 경우는 年金支給은 中斷되고 遺子女는 滿 18 歲까지 一定額이支給된다.

② 葬祭費補償은 敝祭委員會 또는 장의사에게 直接支給되고 이

(Burial grant)

경우 보험에 加入되지 않는 경우라도 장제비는 보통 보상처리 된다.

다) **maternity Insurance (妊産保險 = 出産保險)**

① **Birth grant (出生手当)**은 모든 이스라엘 여성과 또는 非 이스라엘 여성이라도 自身이나 夫를 通해 付保한다면 病院에서 出産했을 경우 모두 出生手당을 支給받는다. 이 出生手당의 支給의 制度的 目的은 妊産婦로 하여금 現代医療施設인 病院에서 出産하는 경우 모든 病院費用으로 産母를 保護하자는데 있다. 그리고 이 手당은 바로 病院에 支給된다.

② **maternity benefits (妊産手当)**은 被雇傭인이 出産하기 爲하여 또는 妊産期間(最後 5 個月 ~ 10 個月 정도) 동안 勤務하지 못한 동안 平素 自己平均賃金の 75%를 支給하는 一種의 妊産雇傭인의 特別手当이다.

最高 月 1,500 파운드에서 12 週間に 達하는 手당을 받을수 있다. 이 手당은 새로 移民온 外国子女라도 적어도 出産 16 個月前에 雇傭된 경우라면 6 週間の 妊産手当惠沢을 받는다.

라) **Large-Family Allowances (大家族手当制度)**

이制度는 1959 年 9 月 1 日 實施된 것으로 14 歲未滿의 아이가 4 名이상인 경우 그들 家族生計를 補助하는 手当이다. 1965 年 다시 18 歲未滿의 아동 4 名以上 家族으로 擴大되었고 精神的 肉體的 障礙者에게는 25 歲까지 延長 保護되었다. 子女數가 많을수록 手当給與額이 증액된다.

마) **Employees Children's Allowance (被傭人子女手当)**

子女가 18 歲에 이룰때까지 (障礙兒 25 歲) 고용주가 費用에

게 지급하고 보험기구가 보장한다.

大家族手当制度와 혼합하여 自營業勤勞者子女를 包含한 全子女가 獨立할 때까지 支給하려는 計劃이 進行되고 있다.

바) Employment Injury Insurance (雇傭中 業務上 상해보험)
業務上障害時 療養費用 및 扶養家族手当 포함된다. 障害정도에 따라 障害年金對象이 된다.

사) Unemployment Insurance (失業保險)

(1973.1.1改正: 國家保險法)

이스라엘거주의 모든 근로자는 強制的으로 이制度에 加入되며 18歲부터 은퇴時(男65, 女60)까지 적용된다. 家族기도일, 군복무기간, 직업훈련기간도 근로기간으로 간주된다. 첫 두자녀까지는 被雇傭人子女手当도 支給된다.

45歲以上 失業者 또는 3名의 扶養家族을 가진者에게는 年間 175일을 한도로 보상 其他는 138日 한도, 失業이 全國的 規模일때는 이 한도가 증가될 수 있다.

아) Disability Insurance (不具 廢疾障害保險)

疾病, 傷害로 不具가되어 自身을 扶養할수 없거나 50%以上 소득이 상실된 자에게 支給하고 婦人도 包含된다.

자) Alimony Law (別居手当法)

남편으로부터 放棄(abandonment)된 婦女子 또는 父母로부터 放棄된 未成年者를 補助하기 爲하여 1972년에 制定된 법이다.

8) 日 本

가) 日本의 社会保障制度⁵⁵⁾

① 社会保険分野에서

㉠ 医療保險部門에 健康保險, 日雇勞動者健康保險, 般員保險, 國家公務員共濟組合, 地方公務員共濟組合, 私立學校職員共濟組合, 國民健康保險이 있으며

㉡ 年金保險部門에 厚生年金保險, 般員保險, 國家公務員共濟組合, 地方公務員共濟組合, 公共企業체職員等 共濟組合, 私立學校教職員共濟組合, 農林漁業団体職員共濟組合, 國民年金農業者年金

㉢ 失業保險部門에서 雇傭保險, 般員保險

㉣ 災害補償部門에서 勞動者災害補償保險, 般員保險, 國家 및 地方公務員災害補償

② 公的扶助와 社会福祉分野에서

㉠ 生活保護

㉡ 兒童福祉와 母子福祉

㉢ 老齡者福祉

㉣ 障害者福祉

㉤ 社会福祉事業

③ 公衆衛生과 医療

④ 環境政策等을 다루고 있다.

註 55) 社会保障年金。 1976.

나) 社会 保險

① 国民年金制度 : 老齡給付, 廢疾給付, 遺族給付

㉞ 拋出制 年金制度

㉟ 老齡年金 : 65 歲부터 支給

㊱ 母子年金 : 一定保險料納付要件完了되고 夫가 死亡한 妻가 18 歲未滿의 子女와 生計를 같이 하고 있을경우 支給한다.

年金額은 33 萬 9600 円 (月 2 萬 8300 円) 인데 子女가 2 人以上일때 第二子 4800 円

㊲ 準母子年金 : 一家의 生計中心者인 男子 (夫, 子, 父, 祖父) 와 死別하고 18 歲未滿 孫, 弟妹와 生活하고 있는 女子에게 支給

㊳ 遺兒年金 : 父母死亡으로 孤兒가된 18 歲未滿子에 支給한다.

㊴ 寡婦年金 : 老齡年金支給받을 夫가 死亡한 경우 10 年以上 婚姻生活을 한 妻에 對해 60 歲 ~ 65 歲期間에 支給

㊵ 死亡一時金 : 保險料를 3 年以上 納付한 者로써 年金을 받지않고 死亡한 者의 遺族에게 支給

㉟ 福祉 年金制度

㊶ 母子福祉年金 : 夫와 死別한 妻가 義務教育修了前의 子女와 生計를 같이하고 있는데 拋出制 母子年金을 받지 않는者로써 一定한 支給要件을 갖춘 者에게 支給

㊷ 準母子年金 : 一家生計中心者와 死別한 女子가 義務教育修了前의 孫 또는 弟妹와 同居하는 女子로써 拋出制準母子年金을 받지

못하나 一定한 支給要件 갖춘 者에게 支給

(㉔) 農業者年金基金制度

이 制度는 70年10月 発足하고 71年1.1부터 始作되었
다. 이 基金制度는 農業者年金事業, 農地의 売買, 農地取得資金의 融
資, 年金의 対象이 되지 않는者에 對한 離農給付金의 支給等의 義
務를 行하는데 있어서 農業者의 老後の 生活安定과 農業經營의 近
代化를 図模하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있다.

① 經營移讓年金

② 農業者老齡年金

③ 脱退一時金, 死亡一時金

(2) 國民健康保險

農漁村住民과 都市의 商工業自營者等 被傭者以外의 一般國民
을 被保險者로써 疾病, 負傷, 出産, 死亡에 關해 医療其他의 保險給
付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制度이다. 保險給付는 法定給付
로써 療養의 給付, 助産費의 支給(助産의 給付), 葬祭費의 支給이
있고 任意給付로써 傷病手当金, 育兒手当金, 出産手当金等이 있다.

75年10月부터 法定給付로 國會에서 改正되어 健康保險과같이
國民健康保險에 對해서는 高額療養費를 支給하게 되었다(近年의 医
療의 高度化에 따른 医療費의 増加로 高額の 自己負擔을 支援하기 위
한 高額療養費支給制度)

(3) 健康保險制度

이 制度는 各種事業所 雇傭勞動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医療保

險制度로써 被保險者의 業務外의 傷疾 死亡, 分娩에 對해서도 保險 給付를 行하고 그扶養家族의 이러한 事故에 關해서도 保險 給付를 行한다.

㉓ 被保險者에 對한 給付

㉓ 療養의 給付 및 療養費 (나) 傷病手當金 (다) 理葬費

㉓ 分娩費 (바) 出產手當金 (베) 育兒手當金

㉔ 被扶養者에 關한 給付

㉔ 家族療養費 (나) 高額療養費 (다) 家族理葬料

㉔ 配偶者分娩費 (나) 育兒手當金

㉕ 資格喪失後의 給付

㉕ 療養의 給付 및 家族療養費

㉕ 傷病手當金 및 出產手當金 (다) 理葬費

㉕ 分娩에 關한 給付

㉖ 付加給付

保險施設 및 福祉施設

다) 公的扶助

① 母子福祉

日本만이 1945年 第二次大戰 終結을 轉機로 公的扶助를 必要로하는 母子家族數의 急增에 따라 「母子福祉資金의 貸付等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保護하여 오다가 1964.7 「母子福祉法」으로 制定되어 母子家庭의 經濟的 自立과 生活安定을 爲한 綜合

的인 施策을 展開하고 있다.

5) 73年8月 調査한 母親의 20歲未滿子로 構成된 日本의 母子家庭의 數는 全國 62萬6200世帶로 推計되고 있다. 母子世帶가 된 原因은 死別 61.9%로, 病死比率이 增加하고 있고 離別比率은 26.4%로 높다 母의 年間所得은 68.5%가 60萬圓未滿(72年 國民生活實態調査에서 一般世帶 60萬圓未滿이 11.1%)으로 低所得層이 많아 生活이 困難한 實態다.

母子家庭에 對한 福祉對策은 經濟的自立的 造成을 爲해 母子福祉資金貸付, 母子相談員의 生活相談, 母子福祉施設(母子福祉센터, 母子休養홈)의 整備等 施策을 中心으로하여 母子福祉年金, 兒童扶養手當의 支給,

生活扶助費의 母子加算制度, 母子療의 入所措置에 關聯한 諸施策을 綜合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母子家庭의 母親(寡婦)의 自立促進策으로 72年度에는 家族奉仕員을 希望하는 者가 必要한 技能習得을 爲한 講習會를 開催할 予算指置를 하였으며

73年度에는 交通事故의 補償等 法律相談, 事業經營相談 等에 對해서 專門家에 依해 特別相談事業을 하였다.

75年度에 乳勸兒가 있는 母子를 돌보는 介護人을 派遣하는 事業을 實施하였다.

母子福祉資金의 貸付狀況은 53年~73年사이에 延約116萬人에 對한 約390億圓 貸付되었다.

74 年末 財政은 國庫支出金 約 100 億圓, 都遂府縣支出金 約 57 億圓
合計 157 億圓이 되어있다.

그런데 從來 配偶者가 없는 女子가 扶養하는 아이가 20 歲에 달
한경우 및 配偶者와 離死別한 女子로써 扶養하는 아이가 없을 경
우 母子福祉法의 対象外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부는 아이가 成人이 된 後에도 變動이 심한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社會的 經濟的 不安定한 狀態에 있다. 그래
서 69 年度부터 母子福祉資金에 準해서 寡婦福祉資金 貸付制度가
發足했다.

② 生活保護

生活保險은 各種의 援護가 必要한 老齡, 母子, 傷病, 傷害者
世帯에 對해 生活, 教育, 住宅, 医療, 出産, 生業 및 葬祭의 扶助를
行하며 生活保護法에 根拠한다. (表 3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表 36＞ 最低生活保障水準の 具體的事例（ 75 年度 ）

＜単位；円＞

	標準 4 人 世 帯				母子 3 人世帯			
	35 歳 男（日雇） 9 歳 男（小 3） 30 歳 女（無職） 4 才女				30 歳 女（無職） 9 歳 男（小 3） 4 才女			
	7 4 年度（当初）		7 5 年度		7 4 年度（当初）		7 5 年度	
	1 級 地	4 級 地	1 級 地	4 級 地	1 級 地	4 級 地	1 級 地	4 級 地
生 活 扶 助	60,690	44,296	74,952	54,715	45,047	32,864	55,630	40,598
第 1 類	47,320	34,530	58,440	42,650	93,037	24,100	40,790	29,770
第 2 類	13,370	9,766	16,512	12,065	12,017	8,764	14,840	10,828
加 算	-	-	-	-	7,300	7,300	10,600	10,600
基 礎 控 除	9,730	8,750	12,020	10,810	-	-	-	-
小 世帯当	70,420	53,046	86,972	65,525	52,347	40,164	66,230	51,198
計 1 人当	17,605	13,262	21,743	16,381	17,449	13,388	22,077	17,066
教 育 扶 助	810	810	1,040	1,040	810	810	1,040	1,040
住 宅 扶 助	5,500	2,300	5,500	2,300	5,500	2,300	5,500	2,300
合 世帯当	76,730	56,156	93,512	68,865	58,657	43,274	72,770	54,538
計 1 人当	19,183	14,039	23,378	17,216	19,552	14,425	24,257	18,179

資料：厚生省社会局調べ

第 5 章 우리나라에 保護女性의 福祉向上政策 樹立을 爲한 接近方案

第一節 要 保護女性 福祉向上政策方向

現代 韓國社會가 지니고 있는 諸問題 가운데 要 保護 女性福祉政策의 擴大強化問題가 國家的 立場에서 그 時急性과 緊要性이 점차 提高되고 있으며 그를 위한 보다 積極的인 福祉政策의 補充이 要請되고 있다.

- 1) 治療的, 事後措置의 서비스에서 預防과 治療를 同時에 이룩하는 方式으로 轉換시키되 預防的 事前計劃의 서비스를 始發點으로 한다.
- 2) 施設中心의 福祉事業에서 家庭中心의 福祉事業으로 轉換한다.
- 3) 政府와 民間團體의 相互補完的인 協同으로 家庭福祉事業 財源造成策을 講究하고 財源動員과 配分, 事業運營, 職員의 專門性增進等 側面에서 他領域의 (人的, 技術的) 資源을 相互活用, 共同研究한다.
- 4) 一部 固定的 Program에서 發展의 欲求에 따르는 多樣한 Program을 開發한다.
- 5) 自立意欲을 鼓吹하여 自身の 自覺과 努力으로 成功하도록 事前 相談事業을 強化하고 個性에 適合하며 個別化된 自立策을 講究한다.
- 6) 地域社會의 保護속에서 自立할 수 있도록 社會的認識을 促求한다.
- 7) 福祉서비스의 能率化와 專門化를 위한 各種福祉施設의 多樣한

運營模索

- 8) 要保護女性福祉事業을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補完을 促求

第二節 要保護女性の 福祉向上施策

1) 家庭福祉實踐基金造成

外援減縮 및 政府予算面の 福祉事業費不足에 對한 方案模索

가) 26歲以上女性(888萬3535名) 10원拋出 募金運動展開

나) 海外同胞 母國 家庭福祉센터設立基金運動展開

다) 民間団体聯合募金活動(바자等)

라) 宗教人(基督教, 敎), 地域家庭福祉센터設立基金獻金

2) 家庭福祉센터設立運營의 能率化

가) 設立面은 既히 設立되어 있는 市道單位 女性會館 및 새마을會館, 어머니會館等을 活用토록하고 不足한 數: 補充

나) 運營方針은 人件費節約과 全女性參與運動展開로 能率을 期하게 하고 ㉠ 法律, 職業, 生活相談 및 家出女性相談, ㉡ 託兒, 就學前 어린이保護 ㉢ 家庭婦, 派出婦訓練等業務를 担当할 女性 volunteer 群을 構成하여 時間的 經濟的, 知的能力 구비한 女性의 參與를 促求.

다) Community Care(社會福祉專門資源不足의 補充)

Community는 行政區域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住民相互

의 Communication 이 成立하는 生活圈이다. 地域은 점차로 機能的으로 社會化가 되는 것이지만 地域에 生活하는 住民의 主体的인 Energy를 福祉的 實現의 方向을 目標해서 組織化 하는것이 Community 이다. 즉 운동의 要素를 포함한다.

Community Organization Care를 통해 対象者가 갖는

Handicap에 專門的 機能的 治療를 加하므로써 更生의 可能性을 發見하고 「함께 生存한다」는 福祉의 實踐課題를 追求하여 対象者가 施設에 隔離되어 住民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에서가 아니고 같은 地域社會의 日常生活속에서 物質과 知識을 再分配하도록하여 相扶相助하는 健全한 社會構成을 指向한다.

具體的 서비스活動으로는 女性 Volunteer에 의한 地域서비스, 母子家庭과의 結緣事業促進 職業訓練習得한 技術活用の 模索, 福祉센터奉仕 Community leader養成 等

職業輔導

- 가) 職業輔導對象에 맞는 職種選定 및 適合한 輔導所에 配置
- 나) 國家技能人力需給計劃에 依拠한 地域 需給計劃을 充分히 檢討한 輔導施設職種을 調整(過多한 職種數止揚하고 수요도가 높고 低廉한 費用으로 实效性 있게 訓練시킬 수 있는 職種 엄선)
- 다) 制度的 訓練의 實施로 質的向上

(國家公認資格證書 등으로 待遇面에 우대)

- 라) 就業後 保護指導對策을 講究하여 孤獨, 愛憎欠乏, 慾求不滿과 思春期 等으로 脫線하기 쉬운 對象들에게 豊富한 人間性을

函養시켜 正常的 社會人으로 活動하도록 相談指導한다.

마) 國家의 次元에서 職業訓練機關(例 正修職業訓練院)을 各地域에 設置하도록 하여 技能人力化에 寄與한다.

4) 母子家庭의 末亡人과 그 家族을 保護함에 있어 居住保護를 原則으로 삼되 生計保護對象者는 公的扶助로 保護토록 할것이다.
扶養子女에 對한 經濟的 支援問題
母의 職業問題, 家族의 健康問題等を 地域內 資源을 動員하여 하도록 한다.

母子院은 具體的으로 自活이 不可能할 婦人아니라 生計補助를 받아도 獨立的으로 나날의 生活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末亡人과 그 家族을 保護하는 施設로 活用한다.

5) 要保護女性의 自立促求

가) 社會的 認識

나) 技能人力化

다) 淪落女性等 防止法 再檢討

라) 自立 資金 融資를 爲한 基金造成

6) 社會風潮淨化

가) 物質主義 支配를 抑制하고 人間價值 구현적극 추진

나) 性道義確立

7) 國民保健面

가) 母性保護를 爲한 諸對策

나) 貧困層 要保護妊産婦에 對한 分娩介助서비스와 醫療費支給

参 考 文 献

- o William J. Goode, The Famil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64.
- o Esther. L. Brown. Social Work as A Profession, 1935.
- o Werner W. Boehm, Objectives for the Social Work Curriculum of the futur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New York, 1959.
- o Encyclopedia of S.W.op, cit., 1
- o Henrietta, L Gordon Casework Services for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56)
- o L. Cole, Psychology of Adolescence. New York: Rinhart 1958.
- o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 of Research and Statistic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73.
- o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Year XXVII, Nos. 2 ~ 3 .
Geneva: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ISSA, 1974.
- o Walter, A. Friedlander,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ew York, Prentice-Hall Inc. 1955
- o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Year XXVIII, No 1. Geneva. 1975.

- 現代婦人問題講座 1, 婦人政策, 婦人運動, 田中寿美子
- 家族と社会, 小山陸
- 一番ヶ淵康子, 「社会統計にみる女の一生」 「現代の婦人問題」
昭和 40 年
- 松下一圭, 戦後民主主義の展望 昭和 40 年
- 一番ヶ淵康子, 現代の婦人問題
- 両口俊子, 現代日本の社会問題 第三卷 昭和 41 年
- 美安政法令 第 107 号 婦人局設置令 第二条
- 우리나라의 社会保障, 保社部社会保障審議委
- 南北 鎮, 国家發展과 婦女福祉問題效果的 方向摸索세미나, 婦女
保護事業聯合会
- 河相洛, 婦女福祉問題세미나報告書, 婦女保護事業全国聯合会, 1973
- 解放二十年史, 希望出版社, 1965.
- 美軍政庁, 保健厚生部婦女局 새살림 1948, 3, 4 月号
- 大韓年鑑 1957.
- 金英子, 保健社会部婦女局 새살림 제 21 号 1962
- 母子家庭의 実態에 関한 調査研究, 1971, 婦女保護事業 全国
聯合会
- 母子保護施設에 収容된 母子世帯実態調査 1971, 婦女保護事業
全国聯合会
- 時急히 要請되는 母子福祉事業의 法制化 1972, 婦女保護事業
全国聯合会

- 金德俊外 4人共著, 新社会事業概論
- 姜萬春, 福祉研究(8月号), 韓國福祉研究所 1971.
- 鄭潤植, 勤勞青少年의 意識構造에 關한 研究
- 勞働庁, 女性勤勞者実態調査報告書, 1973.
- " " 1974.
- 保健社会部, 保健社会行政의 実績과 展望, 1971.
- 韓國勞働組合總聯盟 事業報告, 1976.
- 文善, 金承国, 青年發達, 1970.
- 金龍來, 教育心理, 1973
- 高大勞働問題研究所, 一般成人勤勞者意識調査報告書, 1972
- 勞働庁, 毎月勞働統計調査報告書
- 社会保障年鑑, 1976, 東洋經濟新報社
- 具滋憲, 社会福祉論
- 李効再 家族과 社会
- 高永復 現代社会学
- 장인협, 婦女問題의 現代의性格과 그 福祉活動을 爲한 基本的戰略 婦女福祉세미나, 1970.
- 안창수: 우리나라 社会保障公的扶助制度에 關한 研究, 1975.
- 都市貧民家族問題 및 家族計劃에 關한 研究
梨大女性資源研究所 1972.
- 日本型福祉国家の構想, 坂本二郎

